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1000-000233-01


S/W중심 농촌산업정책의 성과관리방안 연구

연구기관
한국농촌공사 농촌활력사업본부

농림수산식품자료실



0017154

 농림수산식품부

제 출 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SW중심 농촌산업정책의 성과관리방안**” 연구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8년 12월

연구기관명 : 한국농촌공사 농촌활력사업본부

연구책임자 : 이 석 주

연 구 원 : 황 태 규

연 구 원 : 김 용 자

공동연구원 : 변 재 연 (한국교육개발원)

공동연구원 : 하 석 건 (지역아카데미)

공동연구원 : 김 봉 원 (지역경제연구원)

공동연구원 : 손 은 일 (한국국제대학교)

목 차

I.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3. 연구추진일정	5
II. 신활력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 문제점	6
1. 신활력사업의 의의	6
1.1 신활력사업의 추진배경	6
1.2 신활력사업의 의의	7
2. 신활력사업의 전략과 추진방법	9
2.1 신활력사업의 계획 수립	9
2.2 신활력사업에 대한 지원	10
3. 신활력사업에 대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11
3.1 신활력사업 평가의 기본방향	11
3.2 신활력사업의 선정	13
4. 신활력사업의 추진실태	14
4.1 1년차 신활력사업의 추진실적 및 평가	14
4.2 2년차 신활력사업의 추진실적 및 평가	16
4.3 3년차 신활력사업의 추진실적 및 평가	18
5. 제 1기 신활력사업 추진성과 및 제 2기 추진계획	19
5.1 제 1기 신활력사업 추진성과 및 보완과제	19
5.2 제 2기 신활력사업 추진전략	23
5.3 향후 발전과제	26

III. 우수·부진시군의 추진체계, 성과 및 문제점 비교분석	28
1. 신활력사업 추진 우수사례	28
1.1 평창군 : HAPPY700 브랜드 강화사업	28
1.2 장수군 : 장수한우 Brand Power 클러스터 구축사업	31
1.3 산청군 : 친환경 한방약초산업육성사업	34
2. 신활력사업 추진 부진사례	39
3. 신활력사업 추진 사례의 시사점	41
4. 신활력사업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45
IV. 신활력사업 정책의 차별화 등 발전방안	51
1. 신활력사업 유형구분 기준	51
1.1 신활력사업의 유형구분 기준	51
1.2 신활력사업의 산업발전단계별 유형화	55
V. 외국의 정책평가 및 성과관리 사례 연구	56
1. 일본 농림수산성 정책평가	56
2. 유럽연합의 농촌개발정책 평가체계	60
3. 미국 성과관리정책	100
4. 영국 성과관리정책	104
VI. 신활력사업 성과관리체계 모형 구축	107
1. 성과관리의 개요	107
1.1 성과관리의 목적	107
1.2 성과관리의 성격	107
1.3 성과관리의 내용	107
2. 신활력사업 성과관리체계 ROADMAP	111
3. 신활력사업의 정책목표	113
4. 성과관리 PROCESS	115
4.1 MODEL-1 : 목표체계 수립(Performance System)	115
4.2 MODEL-2 : 성과지표 개발(Performance Indicator)	115
4.3 MODEL-3 : 성과관리운영계획 수립	115

VII. 향후 농촌정책 변화에 따른 성과관리 모형 방향	145
1. 농어촌정책의 변화 방향	145
2. 농산업사업의 정책목표의 모형	147
2.1 EU농촌개발정책의 변화과정 및 시사점	148
3. 농어촌사업의 성과관리 방향	154
3.1 정책목표 서열	154
3.2 지표의 서열화	155
3.3 농어촌정책의 적용	157
4. 농어촌사업의 성과관리 PROCESS	158
4.1 목표체계 수립	158
4.2 성과지표 개발	160
4.3 모니터링과 지속평가	161
4.4 평가작업 절차	162
5. 농어촌산업정책 성과관리모델	169
5.1 핵심목표 및 하위목표	169
5.2 산출지표(Output Indicators)	179
5.3 결과지표(Results Indicators)	180
5.4 성과/영향지표(Impact Indicators)	180
5.5 목표와 관련된 기초지표(Base Lines Indicators)	181
5.6 여건과 관련된 기초지표(BaseLines Indicators)	181
5.7 정책수단별 코드화된 목록사례(Measures Fiches)	182
VIII. 맺 음 말	183
【참고】	185
■ 참고문헌	209

표 목 차

<표Ⅱ-1> ASP 모델로 재구성한 신활력사업의 기본 요소들	7
<표Ⅱ-2> 신활력사업계획의 추진체계도	0
<표Ⅱ-3> 신활력사업 투자계획(2005-2007)	1
<표Ⅱ-4> 신활력사업계획의 평가표	2
<표Ⅱ-5> 신활력사업의 선정지표 내용	3
<표Ⅱ-6> 신활력사업 대상지역의 지정현황	3
<표Ⅱ-7> 신활력사업 시군별 대표사업의 유형별 분류	4
<표Ⅱ-8> 1년차 신활력사업 우수 선정지역	5
<표Ⅱ-9> 2년차 신활력사업 우수 선정지역	7
<표Ⅱ-10> 3년차 우수시군 선정지역	8
<표Ⅲ-1> 평창군 HAPPY700 브랜드 강화사업 내역별 추진실태	9
<표Ⅲ-2> 평창군 HAPPY700 브랜드강화사업 집행실태	13
<표Ⅲ-3> 평창군 HAPPY700 브랜드강화사업 인센티브	13
<표Ⅲ-4> 장수한우 Brand Power 클러스터구축 사업 내역별 추진실태	23
<표Ⅲ-5> 장수한우 Brand Power 클러스터 구축사업 집행실태	43
<표Ⅲ-6> 장수한우 Brand Power 클러스터구축사업 인센티브	43
<표Ⅲ-7> 친환경 한방약초산업 육성사업 집행실태	53
<표Ⅲ-8> 친환경 한방약초산업 육성사업 내역별 실태	63
<표Ⅲ-9> 친환경 약초산업 육성사업 집행실태	83
<표Ⅲ-10> 친환경 한방약초산업 육성사업 인센티브	83
<표Ⅲ-11> 신활력사업 우수사례지역의 사업대상 비교	44
<표Ⅲ-12> 신활력지역의 지적재산권 확보실태	74
<표Ⅲ-13> 신활력사업 기간 중 인구증가가 있었던 지역	84
<표Ⅲ-14> 신활력지역의 고용 및 매출액 증가사례	94
<표Ⅲ-15> 신활력지역 축제의 파급효과	05
<표Ⅳ-1> 투입단계별 유형화	5
<표Ⅳ-2> 주도산업별 유형화	25
<표Ⅳ-3> 자원활용별 유형화	35

<표Ⅳ-4> 사업추진주체별 유형화	45
<표Ⅵ-1> 성과지표의 SMART 요건	1
<표Ⅵ-2> 전략목표 1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2
<표Ⅵ-3> 성과목표 1-1 : 교육사업의 성과지표	2
<표Ⅵ-4> 성과목표 1-1 : 교육사업의 수행지표	3
<표Ⅵ-5> 성과목표 1-2 : 네트워크 사업의 성과지표	4
<표Ⅵ-6> 성과목표 1-1 : 네트워크사업의 수행지표	4
<표Ⅵ-7> 성과목표 1-3 : 연수사업의 성과지표	5
<표Ⅵ-8> 성과목표 1-3 : 연수사업의 수행지표	5
<표Ⅵ-9> 전략목표 2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7
<표Ⅵ-10> 성과목표 2-1 : 추진체계구축사업의 성과지표	7
<표Ⅵ-11> 성과목표 2-1 : 추진체계구축사업의 수행지표	8
<표Ⅵ-12> 성과목표 2-2 : 추진체계활성화 사업의 성과지표	8
<표Ⅵ-13> 성과목표 2-2 : 추진체계활성화 사업의 수행지표	9
<표Ⅵ-14> 전략목표 3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10
<표Ⅵ-15> 성과목표 2-1 : 지연사업육성사업의 성과지표	11
<표Ⅵ-16> 성과목표 3-1 : 지연사업육성사업의 수행지표	11
<표Ⅵ-17> 성과목표 3-2 : 지연사업브랜드사업의 성과지표	21
<표Ⅵ-18> 성과목표 3-2 : 지연사업 브랜드사업의 수행지표	31
<표Ⅵ-19> 성과목표 2-3 : 지연사업의 융복합화사업의 성과지표	41
<표Ⅵ-20> 성과목표 3-3 : 지연사업의 융복합화사업의 수행지표	41

그림 목차

<그림Ⅳ-1> 신활력사업의 성장단계	5
<그림Ⅴ-1> 일본의 정책평가 PDCA사이클 모형	65
<그림Ⅴ-2> 일본의 농림수산성의 사명	8
<그림Ⅴ-3> EU농촌개발정책의 모니터링과 평가체계	76
<그림Ⅴ-4> 정책목표와 평가지표의 서열화 체계	8
<그림Ⅴ-5> 모니터링과 평가기간	7
<그림Ⅵ-1> 신활력사업 성과관리체계 로드맵	13
<그림Ⅵ-2> 신활력사업의 정책목표 모형	14
<그림Ⅶ-1> 농어촌사업의 정책목표 모형	12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WTO DDA협상, FTA의 진전으로 농업분야도 본격적인 개방체제로 전환되고 있고,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농업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농업 및 농촌의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음.
- 이러한 시장개방 확대 등 농어촌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농어촌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농촌산업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이 요구되고 있음.
- 2005년부터 시작된 신활력사업은 지역이 주체가 되어 혁신역량을 키우고 강점을 발굴, 특화상품으로 개발하여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낙후지역개발사업이며 3년간 지원하고 3년마다 대상지를 재선정하여 최대 9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임.
- 신활력사업의 대부분이 지역농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향토자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추진체계의 정비란 측면에서 2007년부터 농림부로 이관하고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신활력사업은 기존의 농촌지원정책과는 달리 H/W 중심에서 S/W 중심의 사업추진방식을 강조하고 있으며, ASP모델을 축으로 지역혁신역량강화, 1,2,3차 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6차 산업창출, 도·농간활발한 교류추구 등의 체계적인 정책관리 전략을 제시하여 낙후된 농어촌지역 활성화에 나름대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신활력사업을 중심으로 정책성과 및 미흡한 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S/W 중심 정책의 성과관리 모형 및 모델 정립 필요하며, 광역경제권 등 새 정부의 지역정책기조에 맞추어 신활력사업에 목표관리방식 강화, 평가 및

피드백 강화 등 정책개선과제 도출이 필요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활력사업의 성과를 종합적·객관적으로 평가·관리할 수 있는 표준화되고 체계적인 평가체계 및 운영방안을 중장기적인 시점에서 제시는 물론 향후 “농산업정책”에 대한 성과관리모형을 구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연구의 내용

□ 신활력사업의 추진성과와 문제점 분석

○ ASP모델에 근거한 성과 및 문제점 분석

– 지역혁신리더(Actor), 지역혁신추진체계(System), 사업내용(Project)

○ ‘1·2·3차 융복합’에 대한 성과 및 문제점 분석

○ ‘도농교류 협력’에 대한 성과 및 문제점 분석과 농어촌산업에 대한 개념정리

□ 신활력 시군의 추진성과와 문제점 분석

○ 우수시군의 핵심성공요인 도출

– 추진체계, 사업테마 및 단위사업 구성, 내부 성과평가체계 등

○ 부진·탈락시군의 시행 미흡요인 도출

– 추진체계, 사업테마 및 단위사업 구성, 내부 성과평가체계 등

○ 우수·부진·중간 시군의 핵심성공요인과 미흡요인 등 분석을 통해 향후 제2기 사업평가에 있어서의 성과지표의 틀 마련

□ S/W중심 농어촌산업육성정책의 종합적 성과관리 모델 정립방안

○ S/W 중심의 계획수립 제고 및 성과지표 개발

- S/W 중심의 사업인 만큼 원칙적으로 산출·과정(output)지표로 하되, 불가능할 경우에만 결과지표(outcome) 활용방안 등 모색

○ 사업 시행 추진체계 개편

- 신활력사업의 추진체계의 3대요소인 ‘지역혁신협의회-사업추진단-지역협력단’ 등의 기능 제고 및 연계활성화 방안 마련

○ 평가체제 개편

- 현재의 체크리스트 방식에 의한 단순 평가에서 벗어나, 추진성과·추진체계·제도개선방안 등을 종합분석하는 심층평가를 도입

○ 환류(Feed-back) 시스템 연동

- 평가결과를 중앙의 정책형성 및 예산과 연동하는 방안을 비롯하여, 현재 중앙-지방의 추진체계와 연동방안 마련농어촌 관련 국내 법제 현황의 종합적 분석

○ 향후 농촌정책 변화에 따른 성과관리모형 방향

- 향후 농어촌정책의 변화에 대한 흐름과 이에 따른 농산업육성정책의 성과관리모형에 대한 방향설정

나. 연구의 방법

○ 문헌연구

- 신활력사업 관련 정책자료 및 연구자료, 언론보도자료 등을 바탕으로 신활력사업 추진상의 성과와 향후 과제 도출 : 신활력사업 추진체계, 성과와 문제점 비교 분석

○ 사례조사

■ 국내 신활력지역 조사

- 목적 : 신활력사업의 사례조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과관리체계 구축의 관점에서 기존 추진체계와 실태를 분석
- 대상 : 제1기·제2기 신활력지역
- 내용 : 신활력시군의 추진체계,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한 심층 현장 조사를 통해 추진체계 및 성과관리체계 개편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개선안 마련

■ 해외 정책사례 조사

- 목적 : 해외의 낙후지역 활성화 사업 추진체계 및 성과관리체계를 고찰함으로써 국내 신활력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 도출
- 대상 : EU의 농촌개발정책 성과관리체계와 일본 등 관련정책 사례
- 내용 : 계획수립 및 사업집행체계, 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특성, 관리·운영의 차별성 등

○ 세미나(자문위원회) 개최

- 목적 : 관련전문가,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바람직한 성과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연구성과의 공론화 유도
- 대상 : 신활력사업 자문위원 등 농촌활성화 관련 전문가
- 내용 : 신활력사업의 바람직한 추진체계 및 성과관리체계 개편방안 등

3. 연구추진일정

구 분		월 별 추 진 일 정										비 고	
연구 내용		1월차		2월차		3월차		4월차		5월차			
착수 보고와 Kick off 미팅		●											
신활력사업의 추진성과와 문제점 분석	신활력사업 현황 및 추진경위	●	●										
	신활력지역 선정지표 별 성과 및 문제점 분석	●	●	●	●								
	신활력사업 성과목표 별 성과 및 문제점 분석	●	●	●	●								
신활력 시군의 추진성과와 문제점 분석	신활력지역 현황 및 추진경위		●	●	●	●							
	신활력사업 총괄 및 세부사업별 성과 및 문제점 분석		●	●	●	●							
	S/W 중심 사업의 유 형별 우수추진모델 제시				●	●	●	●					
농어촌 산업정책의 차별화 등 발전방안	신활력지역의 산업발 전단계별 유형화		●	●	●	●	●	●	●	●			
	유형화에 따른 평 가·지원내용별 차별 화 방안				●	●	●	●	●	●			
S/W 중심 종합 적 성과관리 모델 정립방안	PDCA 사이클별 신활 력사업 추진체계 현 황 및 문제점				●	●	●	●	●	●	●	●	●
	선진 해외제도 사례 검토 분석	●	●	●	●	●	●	●	●	●	●	●	
	신활력사업 성과관리 개선모델 정립								●	●	●	●	●
	향후 농촌정책변화에 따른 성과관리방향									●	●	●	●
중간보고								●					
신활력사업 성과평가 매뉴얼 작성							●	●	●	●	●	●	●
최종 보고를 겸한 워크숍												●	
보고서 수정·보완												●	●
추진 진도(%)		8	18	25	35	42	60	75	90	95	100		

II. 신활력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 문제점

1. 신활력사업의 의의

1.1 신활력사업의 추진배경

- 그 동안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되어 온 농촌지역은 급격한 인구유출과 고령화로 인해 주된 소득기반인 농림어업의 경쟁력이 쇠퇴하고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지 못하는 등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음.
- 인적·재정적·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낙후지역의 경우 스스로 역량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어렵기 때문에 낙후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발전기회를 국가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었음.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지역별로는 특성화, 지역간에는 연계발전을 도모하여 다핵형·창신형 균형발전 사회를 이루는 국가균형발전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음.
- 2004년 7월 15일 발표한 “신활력지역 발전구상”에서 정의한 신활력지역의 개념은 산업쇠퇴, 인구감소 등으로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이 지역혁신을 통하여 새롭게 활력을 회복하는 곳임.
- 이는 국민통합 및 국가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에서 출발한 개념으로 구체적으로 낙후지역을 신활력지역으로 변화시켜 ‘전 국토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소득 2만불 시대 달성과 국민통합의 이중효과를 도모한다’ 라는 점을 밝히고 있음. 여기서 낙후지역이 곧 신활력지역이 아니라 낙후지역이 혁신하여 새로운 활력을 갖게 된 것이 신활력지역임을 알 수 있음.

1.2 신활력사업의 의의

- 신활력사업이 예산과 지침만 가지고 수행하던 기존의 낙후지역개발정책과 다른 점은 농·산·어촌형 지역혁신체계 구축이라는 정책목표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책관리전략을 가지고 있음.

가.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

- 혁신정책의 틀에서 낙후지역의 우선적인 과제는 도로, 생활기반시설 등 물리적 인프라 공급이 아니라 소득과 일자리 창출 등의 생업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이는 혁신주체(Actor)들이 체계(System)적으로 비교우위를 갖는 선도산업(Project or Program)을 수행한다는 전략의 첫 글자를 따서 ASP모델이라고 부름. 혁신주체들을 키우고 이들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조직을 구성하는 과정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여 여기에는 어떤 사업이라도 이러한 혁신적 환경의 토대 위에서 수행하여야 지속가능하다는 확신을 바탕으로 깔고 있음.

<표Ⅱ-1> ASP 모델로 재구성한 신활력사업의 기본 요소들

핵심요소	목적	기본내용
Actor Innovat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혁신리더의 발굴 및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혁신리더 발굴 및 육성교육 학습프로그램 지역혁신 네트워크 구축
System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혁신체계 구축과 조직 및 제도의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활력사업 추진조직 지역혁신협의회
Program•Proje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혁신주도 프로그램 기획 자원발굴, 지역혁신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산업 육성 지역 브랜드 제고 장소마케팅, 지역문화 개발

자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7)

나. 영역기반적 지역개발

- 도심지와 떨어져 있는 낙후지역으로서는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그 지역만의 고유한 지역자원을 발굴, 상품화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영역기반적 전략이 어려움.
- 낙후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생산(1차)과 가공(2차), 그리고 유통 및 체험관광(3차)이 잘 융합하여 고부가가치 6차 산업을 창출하여 소득기반을 조성하는 전략에 집중하여야 함.
- 이는 지역적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품목을 선정하고 생산 확대, 가공공장 및 유통센터의 설립 등이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사실을 뜻함.

다. 자율과 협력의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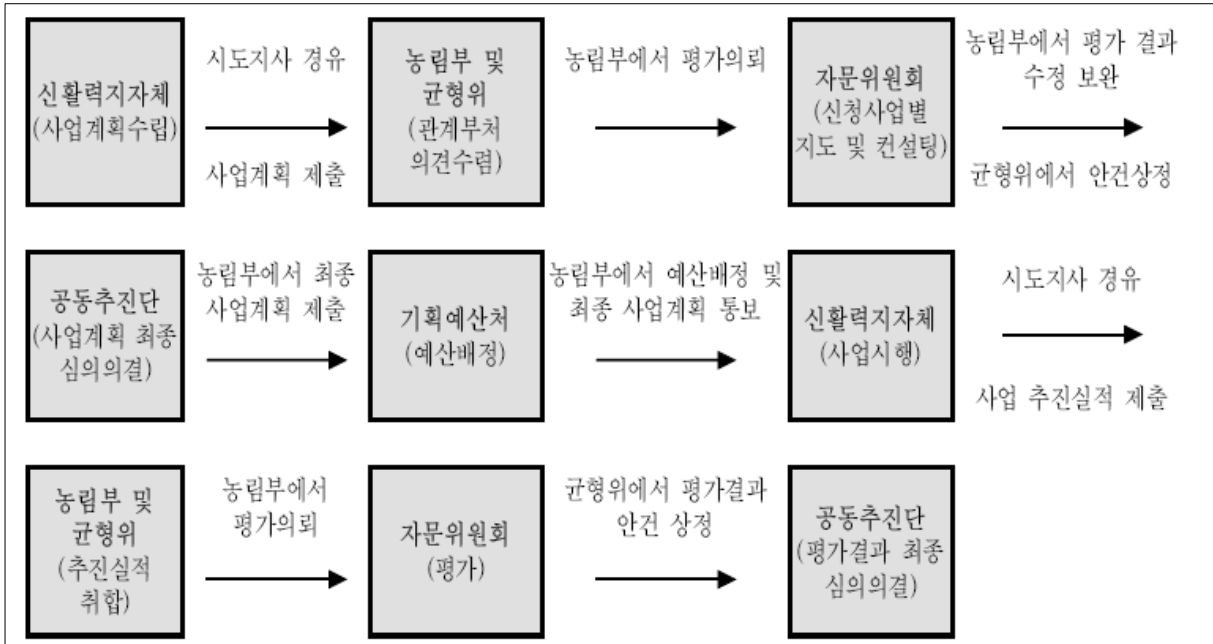
- 혁신창출을 위해 무엇보다 지방에서 자율성은 부여하되 대신 추진주체 간의 협력이 필수적임. 신활력사업은 지방의 자율적인 계획수립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창의를 유도하고 있으며, 중앙정보, 지방정부, 전문가집단 및 지역의 혁신주체 간 상호협력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조직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음.
- 또한 도·농간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하여 도시의 휴양, 은퇴 수요를 농산어촌으로 끌어들이고, 농산업촌은 친환경, 웰빙, 농촌체험의 거점을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임.

2. 신활력사업의 전략과 추진방법

2.1 신활력사업의 계획 수립

- 신활력지역으로 선정된 시, 군은 신활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혁신주체와 일반주민이 함께 사업아이템을 발굴한 다음 지역발전을 위한 3년 단위 중장기 신활력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함.
- 중기계획 및 연차별 사업계획의 수립절차는 먼저 신활력사업 대상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 도지사를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농림부 및 균형발전위원회를 사업계획을 기존 부처별 지역개발 사업과 중복지원 여부, 우선순위 등에 대하여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자문위원회에 사업계획을 제출함.
- 지역개발전문가인 민간위원과 시,도 지역혁신위원회 위원 및 신활력사업 관계부처의 과장급 공무원을 포함하여 30-4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자문위원회는 신활력사업의 구체성, 계획기간 내 실현 가능성, 예산규모의 타당성, 지역발전 기여도, 투자의 우선순위 적정성,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 기존 지역개발사업과의 중복여부, 인접 시군과의 사업연계 가능성 등을 검토함.
- 아래의 표와 같이 자문위원회가 평가한 결과를 종합하고, 농림부가 이를 수정 및 보완하여 균형발전위원회에 안건을 산정한다. 농림부 장관은 자문 및 평가를 반영하여 수정 및 보완된 최종 신활력사업계획을 종합하여 공동추진단에 제출하여 공동추진단의 심의가 이루어지면 확정된 사업계획을 기획예산처에게 제출하여 예산을 신청한 후 신활력사업을 시행하게 됨.

<표 II -2> 신활력사업계획의 추진체계도



자료 : 농림부 농촌정책국, 신활력사업의 이해(2006)

2.2 신활력사업에 대한 지원

- 중앙정부는 신활력지역에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경제적 발전역량을 축적하기 위해서 특별한 재정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2005년부터 매년 약 2,000억원 정도를 지원하되, 1차 지정된 신활력지역에 대해서 3년간 3차에 걸쳐 최대 9년까지 지원하게 됨.
- 신활력지역은 3년마다 평가하여 대상지역을 재선정하되, 단계적으로 대상지역을 축소할 계획이며, 지역별 지원규모는 기본 사업비를 배정하고 사업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낙후도를 감안하여 인센티브 시스템을 병행하고 있음.
- 2006년의 경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총 2,77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체 지원액 중에서 1,732억원은 신활력 시군의 낙후도에 따라 20-30억원을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기본배정임.

<표 II-3> 신활력사업 투자계획(2005-2007)

년도	사업비(억원)			
	계	국비	지방비	민자 등
2005-2007	8,183	5,782	1,305	1,096
2005	2,675	2,000	375	296
2006	2,770	1,900	451	419
2007	2,738	1,882	475	381

자료 : 농림부 농촌정책국, 신활력사업의 이해(2006)

3. 신활력사업에 대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3.1 신활력사업 평가의 기본방향

- 신활력사업에 대한 평가는 “신활력사업추진공동지침” 제 15조를 바탕으로 매년 사업추진의 적절성 및 예산활용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방식의 수정 및 보완 여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함.
- 선도지역의 발굴, 육성을 위해 차등적으로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 추진방식의 개선과 기존 사업 추진의 오류를 보완하는 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함.
- 신활력사업의 평가는 시도가 주관이 되어 산하 시군차제 평가를 실시하고, 농림부에 추천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추진된 시군에 대해 3개 권역별로 집합 평가를 실시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함.
- 3개 팀 간 종합 조정 및 심의 후 우수 정도에 따라 4개 등급(A,B,C,D)으로 군하고 신활력사업 자문위원회, 중앙관계부처 공동추진단을 통해 우수 시군을 최종 결정함.

<표 II - 4> 신활력사업계획의 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항목	세부 평가기준	배점	평가
		총 계	100	
사업추진 체계	소 계		30	
	①지역혁신 협의 회구성·운영 (8점)	- 협의회 구성여부 및 위원 선정의 적합성 정도 (공무원·직능대표 위주가 아닌 지역의 대표성·전문성·혁신성을 가진 인사 위주 선정)	3	
		- 협의회 운영의 활성화 정도(회의·워크숍 개최 횟수, 계획수립 참여 여부 등)	5	
	②지자체의 사업 추진(12점)	- 기관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추진 의지	2	
		- 별도 T/F 구성·운영 여부	2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토론회개최, 벤치마킹 여부	2	
		- 관계 전문가 자문·컨설팅 활용 정도	2	
- 관계기관 및 자문위원회의 사업계획 수정·보완 이행여부		4		
③지역주민 의사 수렴(10점)	- 간담회·공청회·사업설명회 개최여부 및 횟수	5		
	- 언론매체, 공보 등을 통한 사업 아이디어 공모 여부	5		
		소 계	30	
대상 사업의 적정성	④신활력지역 발 적 전구상과의 합성(10점)	- S/W사업 위주 여부(향토자원 육성, 5도2촌, 인제육성 등 혁신역량 강화, 지역 이미지 제고,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사업 등)	10	
		- SWOT 분석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업선정 여부	3	
	⑤지역특성과의 부합성(10점)	- 사업의 독창성 및 창의성	5	
		- 다른 지역의 비교 대상사업 대비 우위성	2	
⑥사업시행 효과 극대성(10점)	-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사업수의 최소화 정도	5		
	- 사업시행으로 지역 전반에 미치는 영향 정도	5		
		소 계	30	
사업계획 내용의 충실성	⑦구체성 및 타당성(15점)	- 사업목표 제시의 현실성	6	
		- 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가능성	6	
		- 중기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과의 연계성	3	
	⑧재원 투자 계획의 적정성 및 추가재원 확보(10점)	- 사업물량 대비 예산액의 적정성	5	
		- 기존 유사사업 투자계획(국고보조사업 등)과의 중복성	3	
- 신활력사업비(국비)의 지방비·민자 등 추가 재원확보	2			
⑨사업간 연계 를 통한 시너지 효과(5점)	- 연결 시·군 사업과의 연계성	3		
	- 기존 지역개발사업과의 연계성	2		
		소 계	10	
사업의 파급 및 기대효과	⑩지역경제 파급 효과(7점)	- 인구증가 유발, 일자리 창출, 소득·세입 효과 정도	3	
		- 사업효과의 구체성 및 적정성 정도	4	
	⑪홍보효과(3점)	- 관광객 유치 및 지역이미지 제고 효과 정도	3	
종합 평가의견				

3.2 신활력사업의 선정

- 신활력사업의 선정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 2조에 의거 농림부 장관에 의해 매년 3년마다 선정 및 고시한다. 대상지역에는 산업쇠퇴, 인구감소 등으로 소외되고 경제기반이 부족하여 활력이 없을 뿐 아니라 재정이 취약하여 발전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낙후지역 기초자치단체가 포함됨.
- 대상지역의 선정기준은 인구적 측면, 산업 및 경제적 측면, 재정적 측면 3개 분야와 인구변화율, 인구밀도, 소득세할주민세, 재정력 지수 등 4개 지표를 적용함.

<표 II-5> 신활력사업의 선정지표 내용

분야	지표	적용자료
인구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변화율('70-'00) • 인구밀도('03년말 기준 주민등록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 30년간 인구변화율 분석자료 • '03년말 주민등록인구현황 (행정자치부)
산업 및 경제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할주민세('00-'02년간 평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연감 ('01-'03, 행정자치부)
재정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력지수('00-'02년간의 평균) (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02-'04, 행정자치부)

자료 : 농림부 농촌정책국, 신활력사업의 이해(2006).

<표 II-6> 신활력사업 대상지역의 지정현황

지역	해당 지역 명칭	시군의 수
인천	강화군, 옹진군	2
강원	고성군,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12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증평군	5
충남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3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9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17
경북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영덕군, 영양군, 예천군, 울릉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13
경남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9
합계	시: 6개, 군: 64개	70

- 지역대표 선도지역은 지역향토자원 등을 위주로 선정되었으며, 시군별 대표 사업은 향토사업, 지역문화관광, 지역이미지 마케팅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77%)

<표 II-7> 신활력사업 시군별 대표사업의 유형별 분류

유 형	시·군	대 표 사 업(예시)
향토자원 지역별 특성화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효천국 순창조성(순창군) • 청도반시 산업화(청도군) • 임실치즈밸리 육성(임실군)
지역문화관광자원 개발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유기농 그린투어리즘(화진군) • 박물관고을 육성(영월군) • 모험레포츠 클러스터 육성(인제군)
지역이미지 마케팅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건강산촌 지역마케팅(진안군) • HAPPY 700 브랜드 강화(평창군) • 땅끝 황토나라 개발사업(해남군)
교육·인재육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어교육 특구조성(창녕군)
생명·건강상품 개발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삼 약초 오감체험형 특화사업(금산군) • 생약초 특화지역 조성(정선군)
해양·수산자원 활용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 생물산업 경쟁력 강화(완도군)

4. 신활력사업의 추진실태

4.1 1년차 신활력사업의 추진실적 및 평가

- 2005년 신활력사업은 292개 단위사업에 총 2,67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746억원(65.3%)을 집행하였음. 70개 신활력지역에서 당초 67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민자사업비 2억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실제 확보액은 673억원이었음.
- 신활력사업 추진지침에 의거 사업계획 확정(2005.4. 30)이후 10월 31일까지의 사업추진 전반(5개 부문 16개 항목)에 대해 2005년 11월 행자부, 균형위

가 공동으로 3개반(중부, 호남, 영남권) 9명으로 평가반을 편성, 10일간 평가를 실시하였음.

- 평가결과 3개 권역별 상중하 그룹 우수 시군 20개를 선정하였으며, 신활력사업 추진실적 평가결과 우수지역으로 선정된 22개 시군에 대해 상위 등위 42억원, 중위 32억원, 하위 21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음.

<표Ⅱ-8> 1년차 신활력사업 우수 선정지역

구분	상위(7)	중위(8)	하위(7)
중부권(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산군 • 강화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선군 • 평창군 • 청양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제군 • 보은군
호남권(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수군 • 진안군 • 영암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원시 • 부안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평군 • 담양군 • 고창군
영남권(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화군 • 하동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도군 • 영양군 • 산청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천군 • 고령군

자료 : 행정자치부, '05년도 신활력사업 추진 실적 평가결과(2006)

- 사업추진 결과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활력사업이 참여정부의 핵심 과제인 국가균형발전정책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심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음.
- 또한 중앙의 지속적, 집중적인 지도점검으로 인해 사업이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관련기구의 신설 또는 T/F구성, 인력보강, 패밀리 닥터 및 자문단 구성,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으로 사업 추진태세를 갖추었다고 평가됨.
- 또한 시군정지, 반상회보, 팜플렛 등을 통해 홍보활동도 이루어지고 지역에 따라서 방송,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음.

-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단체장의 추진의지 미흡과 담당공무원의 역량부족 등으로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도 있었음. 이 밖에 세부단위 사업별 실행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목표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며, 사업내용도 H/W 위주이고, 기존 낙후지역개발사업과 차별성 부족 등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곳도 있었음.
- 또한 지역의 내생적, 자립적 발전역량을 강화하고 성장동력을 창출하려는 사업취지와는 달리 사업의 발굴 및 추진에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아울러 미시행사업에 대해서는 조기 추진 독려와 지속적인 지원 및 지도를 통한 집중관리와 추진이 부진한 시군에 대해서는 자문위원, FD 관계 전문가와 공동으로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자문컨설팅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지원하기로 하였음.

4.2 2년차 신활력사업의 추진실적 및 평가

- 2006년은 신활력사업 추진 2년차로 총 예산 4,460억원 중 2,237억원(76%)을 사업비로 집행하였음. 엄정한 사업관리를 위해 사업이 부진한 6개 시군에 대해 국비지원액을 삭감 및 불용 처리하였고, 2005년 이월사업비 1,533억원 중 1,225억원을 이월하여 집행하였음.
- 추진실적은 시도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1) 사업추진태세, 2) 사업추진 실적, 3) 사업성과 및 효과, 4) 홍보실적, 5) 모범사례 및 시도 활동 등 5개 부문 11개 세부항목에 의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자치부, 농림부와 공동으로 현지 평가를 실시하고, 자문위원회 및 공동추진단의 심의 및 의결로 평가결과를 확정하였음.

- 평가결과 70개 시군 중 26개 우수 시군을 선정 발표하였고, 선정된 우수 시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재정인센티브를 지원하였음. 재정인센티브 규모는 A등급 9억원, B등급 6억원, C등급 3억원이 각각 주어졌음.
- 평가결과 2년차에는 신활력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응 및 인식 제고 등으로 1년차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련부서, 전문가, 주민이 참여하는 전담사업단 구성 등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사업추진기반이 마련되었고, 지역혁신협의회 활성화, 지역주민의 적극적, 자발적 참여하에 다양한 인적역량강화사업 등 지속력있는 혁신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음.
- 사업배분에서도 단순 시설위주의 H/W사업에서 탈피, 인재육성, 연구, 기술개발, 브랜드화, 마케팅 등 S/W사업을 발굴 및 추진하는 곳이 많이 나타남.
- 그러나 일부 시군에서는 지역의 내생적, 장기적 발전역량을 강화하고 활력화하는데 있어, 성과 창출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농림부에서는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시군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의 필요성 제기됨.

<표Ⅱ-9> 2년차 신활력사업 우수 선정지역

구분	A등급(8)	B등급(8)	C등급(10)
중부권(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창군 ● 증평군 ● 청양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천군 ● 양양군 ● 부여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선군 ● 보은군
호남권(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수군 ● 무안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실군 ● 부안군 ● 영암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창군 ● 곡성군 ● 장흥군 ● 진도군
영남권(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도군 ● 하동군 ● 산청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군 ● 성주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경시 ● 봉화군 ● 거창군 ● 합천군

자료 : 행정자치부, '05년도 신활력사업 추진 실적 평가결과(2006)

4.3 3년차 신활력사업의 추진실적 및 평가

- 신활력사업 추진 3년째를 맞이하여 체계적인 사업추진기반 구축, 지역특화자원 산업화 등을 통해 선도지역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음
- 지역혁신협의회 활성화, 지역주민의 적극적·자발적 참여하에 다양한 인적역량 강화사업 등 지속력가능한 혁신체계 구축함.
- 인구증가, 고용증대, 매출액 증가 및 기업체 유치 등 사업추진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음
- 그러나, 목표 불명확, 관련사업 및 인접지역과의 연계부족 등 성과창출에 대한 노력이 미흡함.
- 중장기 사업목표가 불명확하고, 성과지표의 미흡으로 성과측정이 어려움
- 유사한 지역개발사업과의 연계성이 미흡하고, 유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군 간 협조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성과지표 제시, 사업간 연계 추진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개선함.
-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성과지표에 대한 적절성, 달성여부 검증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함.

<표Ⅱ-10> 3년차 우수시군 선정지역

사·도	최우수 (7)	우 수 (7)	장 려 (8)	보 통 (16)
강원	화천군	양양군, 정선군	평창군	양구군, 인제군
인천 충청	청양군	증평군, 부여군	-	보은군, 강화군 영동군
전북	고창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전남	합평군	무안군	진도군, 보성군 담양군	곡성군, 장흥군 강진군, 고흥군
경북	봉화군	문경시	청도군 상주시	고령군, 성주군 의성군
경남	산청군, 하동군	-	거창군	합천군, 함양군

5. 제 1기 신활력사업 추진성과 및 제 2기 추진계획

5.1 제 1기 신활력사업 추진성과 및 보완과제

- 지역혁신리더 양성, 지역특화자원의 산업화 등을 통해 일부 시·군의 인구와 고용이 증가하는 등 성과가 가시화
- 사업 성과목표 부재, 신활력사업과 유사 지역개발사업간 연계 미흡 등 보완이 필요한 과제도 도출

가. 추진성과

1) 지역혁신역량 강화 및 협력적 사업추진 시스템 구축

□ 주민참여 활성화, 지역혁신리더 양성 등 지역혁신역량 강화

- 다양한 학습활동 등을 통해 지역혁신리더의 양성을 촉진하였고, 지역 혁신주체들간 네트워크도 구축

< 인제군 지역혁신리더 양성사례 >

- ◆ 마을리더 교육 : '05~'07기간 중 105인의 마을리더 교육
 - 월1회 합숙워크숍, 국내외 우수사례 견학 등 현장교육
 - 마을발전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농촌경영자로 육성
 - ◆ 분야별 연구회 활동 : 공동학습 및 선도사업 추진주체로 활동
 - 모험레포츨, 황태산업, 목공예, 산림자원 등 분야별 연구회 결성
 - 공무원, 주민, 외부전문가간 협력 네트워크 역할 수행
- [유사 사례] 화천군(지역리더 아카데미), 영동군(감고을 영동아카데미)

- 주민, 전문가, 기업체, 공무원 등 지역혁신 주체간의 상호협력을 통한 지역협력적 사업추진체계 구축

< 청도군 반시사업 추진사례 >

- ◆ 신활력센터 중심, 농가·농협·대학·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조
→ 감와인, 아이스홍시 등 신제품 개발, 매출 증대('04 : 97억원 → '06 : 175)



[유사 사례] 보성군(녹차클러스터), 증평군(인삼클러스터)

2) 지역선도사업의 활성화로 지역의 활력이 증진

- 일부 지역에서 인구와 고용이 증가되는 등 가시적 성과 실현
- 울릉, 영덕, 순창, 강화, 고령, 용진, 인제 등 7개 사군의 인구가 증가
 - * 울릉군(블루투어리즘) : ('04) 9,201명 → ('06) 10,254(증 1,053)
 - * 영덕군(웰빙 특산물) : ('04) 45,959명 → ('06) 46,670(증 711)
- 문경, 순창, 고흥, 임실, 무안, 등은 지역특화자원의 산업화로 관련 산업의 고용과 매출액이 크게 증대
 - * 문경오미자(고용/매출액) : ('04) 8명/25억원 → ('06) 155/80(증 147/55)
 - * 순창장류(고용/매출액) : ('04) 610명/2,200억원 → ('06) 675/2,700(증 80/800)

□ 1:2:3차 산업을 융·복합화하여 지역특화자원을 고부가가치화

〈 하동군 명품녹차 육성사례 〉

* 차 시배지로서 품질은 우수하나, 재배농가 영세성 등으로 인지도 미흡

◆ 기업가적 마케팅·그린투어리즘을 연계, 세계적 명차(名茶)로 육성

- 야생녹차 차별화 : 품질개선, 공동브랜드, 포장규격화
- 적극적 마케팅 : 포털사이트를 통한 홍보강화, 녹차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 생산·고용의 획기적 증대 등 자립적 발전 전기 마련

	<u>'04년</u>	<u>'06년</u>
- 농업소득효과 :	130억원	225억원
- 고용효과 :	97명	165명
- 관광객유치 :	284천명	401천명

[유사 사례] 고창군(복분자클러스터사업), 임실군(치즈밸리육성사업)

□ 지역이미지를 활용하여 새로운 지역대표산업을 육성

〈 산청군 친환경 한방·약초산업 육성사례 〉

* 약초재배지로서 인지도는 있으나, 약초의 산업화는 미진

◆ 청정 환경, 「허준」 스승의 고향 등의 이미지를 활용하고, 관련부처 사업연계 등을 통해 산업화 성공

- 관련부처 사업 연계 : 재경부(특구), 문광부(축제,한방관광지), 농림부(광역친환경단지), 복지부(우수한약재 육성), 산자부(약초산업지원센터)
- 한방 제약회사(4개소) 및 가공공장 추가유치(4개소)로 고용 증대

◆ 한방 관련산업 집중, 지역이미지 마케팅으로 고용·매출 증대

	<u>'04년</u>	<u>'06년</u>
- 한방약초 관련 고용 :	500명	1,000명
- 한방약초 매출액 :	50억원	100억원

[유사 사례] 평창군(HAPPY700), 진안(생태건강산촌만들기)

□ 신상품 개발, 유통구조 개선으로 산업화 촉진

〈 순창군 장류산업 활성화사례 〉

* 장류에 대한 인지도는 높으나, 수공업에 의존하여 산업화가 미진

◆ **기능성 장류 개발·유통구조 혁신으로 장류산업을 특화산업화**

- 계약재배로 안정적인 원료공급
- 웰빙형 신상품 개발지원(잡곡·흑두·흑미를 이용한 기능성 장류)
- 순창 장류산업 특구 지정('04. 12월)

◆ **장류산업 제품 매출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추적 역할**

	'04년	'06년
- 업 체 수 :	65개소	74개소
- 고 용 인 력 :	610명	675명
- 매 출 액 :	2,200억원	2,700억원

[유사 사례] 성주(참외 구조고도화사업), 무안(백련클러스터사업)

□ 지역축제 활성화로 **도·농교류를 촉진**하고 교육·인재육성사업으로 **지역의 활력을 제고**

○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계절적 특성 등을 활용하여 **연간 100만명 이상의 방문객을 유치**한 성공적인 지역축제도 증가

- * 화천군 산천어축제는 얼음낚시, 함평군 나비축제는 나비 날리기, 금산군 인삼축제는 인삼수확 등 다양한 소재의 체험프로그램 개발

○ 교육인재 육성사업으로 **관외학생 유입증가 등 성과 실현**

- * **곡성군은 방과 후 심화학습 운영** 등으로 '06년에 232명의 관외학생이 전입하였고

창녕군은 원어민 영어체험캠프 운영 등 외국어교육 강화로 외지로 떠나는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나. 보완과제

- 1) 1기 사업은 사전 설정된 목표 없이 달성된 실적을 가지고 평가하여 목표달성을 위한 역량집중 노력을 유인하는데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
⇒ 사업계획 수립시부터 명확한 성과목표를 제시하도록 하고, 공정한 성과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성과와 인센티브간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
- 2) 신활력사업과 유사한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간 상호연계성이 결여
⇒ 지역특성을 감안한 창의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관련사업과 연계 지원해서 시너지효과를 제고할 필요
- 3) 주민, 지자체공무원, 전문가 등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컨설팅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
⇒ 교육·훈련·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중앙단위의 전담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할 필요

5.2 제 2기 신활력사업 추진전략

- 1기 사업을 통해 구축된 지역혁신체계와 향상된 지역혁신역량을 바탕으로 성과실현에 중점을 둔 목표관리방식으로 전환
- 신활력사업과 유사 지역개발사업의 통합관리 추진

가. 목표관리 중심의 사업추진체계 구축

- 사업계획 수립시 성과목표 및 계량화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모든 자원과 역량을 목표달성에 집중토록 사업관리방식 전환
- 시·군은 사업의 참여자들과 협의하여 주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목표를 제시
 - * 성과지표 예시 : 일자리 창출, 매출액, 인구증가, 방문객수, 경제효과, 소득증대 등
- 중앙정부는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지도·자문을 강화

- 기본사업비는 축소하고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지원은 확대하여 지역간 경쟁유도를 통한 사업성과 제고를 도모
- 기본사업비는 낙후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구분, 1기보다 1억원씩 감액 지원하고, 인센티브 사업비는 확대 지원
 - 기본사업비 : ('07)1,750억원 → ('08)1,680(감 70억원)
 - * 하위 23개 시·군은 연간 29억원, 중위 24개는 24억원, 상위 23개는 19억원씩 지원
 - 인센티브사업비 : ('07) 132억원 → ('08) 202 (증 70억원)

나. 시·군 농촌활력증진계획 수립

- 지역투자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군단위 개별사업들이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계획 수립·추진
- 1단계로 '08년부터 신활력사업과 유사한 향토산업육성사업, 특화품목육성사업 등 3개 사업을 묶어 「농촌활력증진계획」('08~'10년) 수립

- 2단계로 ‘11년부터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 농촌체험·휴양관련 사업 등도 포함되도록 제도 개선

《 참 고 》

- **신 활 력 사 업** : 지역이 주체가 되어 혁신역량을 키우고 강점을 발굴, 특화·사업화하여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낙후지역개발사업
 - * 70개 신활력 시·군에 대해 3년단위로 매년 20~30억원 지원(국비 100%)
- **향토산업육성사업** : 농촌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향토자원을 발굴, 1:2:3차 산업을 융·복합화하여 지역대표산업으로 육성
 - * 매년 30개 선정, 1~3년 단위로 30억원 이내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특화품목육성사업** :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품목의 육성·발전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
 - * 1년 단위로 사업당 최소 2천만원 이상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지역농업클러스터** : 지역의 주요 농업자원을 중심으로 지역농산업 주체들의 역량을 집중토록 하여 농업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
 - * 3년단위로 20여개 지역특화자원선정, 3년간 30억원지원(국비 50, 지방비 50%)

다. 농촌활력증진 전담지원 체계 구축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평가체계 구축 지원

- 시·군이 제시한 성과목표의 적절성을 전문기관에서 확인하고, 평가위원회가 최종 평가하는 체계 구축

- 전문기관은 현장조사를 통해 검증하고 필요시, 보다 적합한 목표와 지표를

개발·보급

- 평가위원회(신활력자문위원으로 구성)는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예산 지원 또는 페널티 부과 여부를 결정

□ 주민, 공무원, 전문가 등의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지역협력추진 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한 교육 실시

○ 시·군 지역협력단 단원(700여명), 지자체 공무원(500여명), 민간 컨설턴트(100여명) 등을 대상으로 시·군 단위 발전전략, 「농촌활력증진계획」 수립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 국내·외 지역개발 성공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시책 추진

○ 신활력지역간 교류·협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정부, 대학, 연구소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기술, 인력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허브 구축운영

※ 지자체가 농촌활력증진계획을 수립·추진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주도록 중앙단위에 전담지원조직(「한국농촌공사」에 ‘농촌활력사업본부’)을 설치·운영

5.3 향후 발전과제

가. 지역사업의 투자성과를 연구·분석하여 효율적인 정책수단 개발

□ 투입(Input)에 따른 중간성과(Output) 및 최종성과(Outcome)를 분석하여 지역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 마련

○ 시·군이 제시한 성과목표와 「농촌활력증진계획」상 사업간의 상관관계를 분석, 효율성이 높은 정책을 개발·반영

- * 투입(보조, SOC, S/W 등) → 중간성과(생산면적, 연구회활동 등)
→ 최종성과(소득, 매출, 고용 등)

나. 신활력사업 방식의 일반 시·군 확대적용 가능성 검토

- 신활력사업이 정착되는 시점에서 일반 시·군에도 확대적용 추진

다. 지역산업관련 정부정책의 연계·종합화 방안

- 도 단위까지는 전략산업, 클러스터정책 등으로 체계화되어 있으나 시·군 단위는 미흡

- 중장기적으로 시·군 단위 산업정책의 종합적인 체계화 방안 강구

⇒ 신활력사업이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국가정책으로 정착되고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발전시켜 나가겠음

Ⅲ. 우수·부진시군의 추진체계, 성과 및 문제점 비교분석

1. 신활력사업 추진 우수사례

1.1 평창군 : HAPPY700 브랜드 강화사업

가. 사업개요

- 이 사업은 평창군의 고원 청정한 지리적 특성을 상징하는 “HAPPY700” 브랜드를 지역농업과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핵심자원으로 특화하여 주민 소득 증대 및 자립형 지방화로 나갈 수 있는 혁신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
- 사업기간은 2005년 8월 - 2007년 12월(3개년)동안, 사업비는 총 82억원으로 2005년 29억원, 2006년 31억원, 2007년 22억원이며 총 3개 분야 24개 사업을 대상으로 함.
- 사업내용을 보면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해 아카데미, 포럼, 교육 등 네트워크 구축 및 학습체계 구축 등 8개 사업 브랜드 명품화를 위해 생산기반 및 재배 기술 확대, 연합마케팅 및 홍보 등 7개 사업, 농촌관광활성화를 위해 체험관광기반 구축 등 9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나. 추진체계

- 평창군은 지역혁신체계 구축, 브랜드 명품화, 브랜드 체험관광의 3개 사업을 농산물 연합사업단, 연합 GT사업단, 품질인증위원회, 평창군(농정과)의 유기적 협조하에 추진하고 있음.
- 농산물 연합사업단은 단장, 전문마케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협중앙회, 회원농협, 8개 품목별 작목반이 참여하고 있음. 연합 GT사업단은 평창그린투어센터, 기획홍보팀, 농박협의회, 체험마을협의회, 레포츠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산물 연합사업단과 평창그린투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

하여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있음.

<표Ⅲ-1> 평창군 HAPPY700 브랜드 강화사업 내역별 추진실태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세 부 사 업 내 용	연도별 투자계획			
		계	2005	2006	2007
합 계	3개 분야 24개 사업	8,210	2,980	3,040	2,190
지역혁신 체계구축 (9)	소 계	1,775	575	790	410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60	20	20	20
	Happy700포럼운영	70	10	30	30
	아카데미운영	420	220	100	100
	생산지도교육	270	100	100	70
	농산물연합사업단운영	270	70	70	130
	연합GT사업단 운영	220	90	120	60
	Family Doctor운영	35	35	0	0
	HAPPY700브랜드전략수립	30	30	0	0
	브랜드마케팅	400	0	400	0
브랜드 명품화 (7)	소 계	4,410	1,670	1,580	1,160
	공동선별기자재보급	865	590	550	125
	물류비 지원	560	150	150	260
	판촉 및 홍보	500	200	200	100
	포장재개발 및 지원	720	300	300	120
	품질하자보상 및 손실보전	430	130	80	220
	재배기술개발	335	100	100	135
	브랜드 인증	600	200	200	200
브랜드 체험관광 (8)	소 계	2,025	735	670	620
	브랜드마일리지도입	300	100	100	100
	농박 브랜드화사업	300	100	100	100
	Happy700체험콘텐츠개발	100	100	0	0
	농촌관광홍보시스템구축	675	275	0	400
	농촌관광체험마케팅	250	50	250	0
	브랜드이미지강화홍보물설치	200	0	200	0
	농촌관광서비스교육	120	80	20	20
	농촌관광전략 수립	30	30	0	0

자료 : 평창군 내부자료(2007)

다. 주요성과

- 혁신리더교육 성과로 우선 한국농촌관광대학 평창캠퍼스(1년 과정) 운영실적을 들 수 있음. 1기 77명을 배출하였고, 2기 86명이 수강하였음. 이 밖에 매월 2회 200-300명 정도의 주민을 대상으로 “HAPPY700”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HAPPY700포럼’과 농촌관광서비스 교육,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도교육도 혁신역량강화사업 실적임.
- 평창군 신활력사업의 특징은 민간사업 조직을 결성하고, 철저하게 민간사업단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며, 행정은 외부전문가 연계 및 사업가이드라인 제시와 HAPPY700 브랜드 인증 및 관리에 국한하고 있음.
- 연합마케팅 농산물 연합마케팅으로 2005년 5개 품목 41억원에서 2006년 8개 품목 51억원으로 판매소득이 증가한 것을 주요성으로 들고, 연합GT사업단의 경우 2005년 회원이 80명에 불과하던 것이 2006년에는 11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온라인 회원과 웹사이트 접속횟수가 폭증한 것을 주요성으로 들고 있음.

라. 집행실태

- 2005년부터 한국농촌관광대학 평창캠퍼스 운영(지역활성화센터), HAPPY700 포럼운영(상지대) 등의 혁신역량강화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2006년에는 HAPPY700 아카데미 운영(인간개발연구원)까지 확대하여 나름대로 내실 있는 혁신리더 육성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농산물연합사업단과 평창그린투어센터의 전문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지급, 선별기(토마토, 브로콜리, 감자 등) 설치, 브로콜리아이스머신 설치 등의 일부 보조사업 외에는 철저하게 홍보 및 마케팅 활동에 투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Ⅲ-2> 평창군 HAPPY700 브랜드강화사업 집행실태

년 도	예산(백만 원)				집행액(백만 원)				집행율 (%)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2005	2,980	2,735	20	225	2,158	1,920	13	225	72.4
2006	3,900	2,500	1,060	340	3,269	1,929	1,000	340	83.8
'05이월	2,084	1,967	0	117	1,226	1,226	0	0	58.8

<표Ⅲ-3> 평창군 HAPPY700 브랜드강화사업 인센티브

(단위 : 백만원)

국고 기본지원액	2005			2006 실적평가	총계
	사업 계획평가	실적평가	소 계		
2,000	300	400	700	900	1,600

1.2 장수군 : 장수한우 Brand Power 클러스터 구축사업

가. 사업개요

- 장수한우만의 차별화된 우수혈통 보전 및 기술개발, D/B 구축을 통하여 장수한우를 개량하고 안정적인 밀소확보 및 생산이력제 실시로 소비자의 신뢰도를 향상시킴.
- 또한 한우농가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리더 양성 및 혁신체계를 구축하여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 선진국형 축산업 실현을 사업의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사업기간은 3년(2005-2007)이며, 사업비는 총 146억 7,500만원이며 사업의 일환으로 장수한우클러스터사업단 설치 및 운영, 네트워크, 장수한우유전자뱅크 구축, 생산이력관리, 친환경 순환농업모델 구축, R&D 및 유통 마케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표Ⅲ-4> 장수한우 Brand Power 클러스터구축 사업 내역별 추진실태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세부 사업내용	연도별 투자계획			
		계	'05	'06	'07
5개 분야 35개 사업		14,675	5,557	3,836	5,282
소 계		1,689	462	511	716
클러스터 사업단 구축 및 네트워킹 (8)	사업단 사무실 운영	85	45	10	30
	홈페이지 및 관리프로그램 운영	106	96		10
	혁신역량강화(FD운영) 및 RIS 구축	191	135	40	16
	지역협력단 운영	26	0	26	0
	『New-Brain 2030팀』 운영	50	0	0	50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150	50	50	50
	계약학과 개설 운영	100	0	0	100
	CEO 및 팀원 영입지원	981	136	385	460
소 계		5,117	2,018	1,722	1,377
장수한우 유전자 뱅크 구축 (7)	설계 및 토목 공사	335	130	225	0
	초지조성	79	79	0	0
	보상비	1,777	992	427	358
	건축공사비	1,527	213	620	694
	부대시설 및 장비	224	74	50	100
	실험축 도입(상사업비 포함)	800	500	300	
	운영비	355	30	100	225
소 계		2,030	866	560	604
생산이력 관리 (11)	컨설팅 및 청정화 유지지원	110	0	100	10
	기초등록우 활성화 지원	199	0	70	129
	우수축 출하 장려금	50	50	0	0
	한우 혈통 등록비 지원	116	36	40	40
	우량정액 지원	288	48	82	160
	생산이력 모니터링	35	35	0	0
	등록우 혈통 D/B구축	70	20	50	0
	한우농가 경영일지	47	16	16	15
	장수한우 로고 이표제작	36	7	14	15
	한우 구중사업	494	254	90	150
	장비 구입 및 유지	585	400	100	85
소 계		4,481	2,091	8,75	1,515
친환경 순환농업 모델구축 (5)	톱밥,왕겨 지원	1,575	400	375	800
	축분수거용 깔짚(상사업비)	500	500	0	0
	축분수거장비 구입	200	200	0	0
	유기질 비료 지원	2,000	800	500	700
	미생물 발효제 생산시설 운영	206	191	0	15
소 계		1,358	120	168	1,070
R&D 및 유통마케팅 (4)	R&D	78	40	38	0
	장수한우 홍보 및 유통전시관	900	0	0	900
	터치스크린,PDP설치	80	40	20	20
	브랜드 마케팅	300	40	110	150

자료 : 장수군 내부자료(2007)

- 한우클러스터사업단은 장수군이 행·재정지원을 담당하고 축협 육가공공장, 도축업, 유통업, 축산기자재업체, 요식업체 등 관련 산업분야에서 참여하고 있음.
- 전북대학교 외 4개교, 축산진흥연구소, 종축개량협회, 정 P&C 연구소, 다산 아티에스, 굿파트너비즈 등 R&D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장수 농축협이 생산이력관리, 농가기술보급, 유통 및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음.
- 이 밖에도 축산농가, 중부한냉, (주)홈에버, (주)신세계마트 등은 각각 생산, 가공, 판매를 담당하고 있음.

나. 주요성과

- 장수군의 한우사육은 2004년 1,605농가, 14,307두에서 2006년말 1,734농가 19,756두로 약 38%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한우농가의 소득은 2003년 133억원에서 2006년 247억원으로 성장하였음. 이밖에 한우사육에 필요한 사료비 절감을 위하여 점진적으로 총채보리 및 호밀 재배면적이 증가하였음.

다. 집행실태

- 2006년 운영실적을 보면, 한우 관련 전문교육은 상당히 많이 실시한 것으로 보고되어 향후 사업의 안정적인 실행을 위한 전문가 집단의 확보율의 속도는 높은 곳으로 보이나, 여기에 비해 장수군의 미래를 끌어갈 혁신리더 육성은 약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에 유기질비료공급(200, 국비 4억원, 자부담 4억), 수분조절제공급(2005, 국비 2억원, 자부담 2억), 한우구충제 등의 보조금 집행이 상당히 있었으며, 2006년도에는 월곡 축사 부지 매입에 약 16억원의 신활력사업비가 집행되었음.

<표Ⅲ-5> 장수한우 Brand Power 클러스터 구축사업 집행실태

년 도	예산(백만 원)				집행액(백만 원)				집행율 (%)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2005년	5,286	3,935	736	615	4,536	3,185	736	615	85.8
2006년	4,852	3,900	427	525	3,751	2,799	427	525	77.3
'05년 이월	2,233	1,316	94	823	2,231	1,314	94	823	99.9

<표Ⅲ-6> 장수한우 Brand Power 클러스터구축사업 인센티브

(단위 : 백만원)

국고 기본지원액	2005			2006 실적평가	총계
	사업 계획평가	실적평가	소 계		
3,000	300	600	900	900	1,800

1.3 산청군 : 친환경 한방약초산업육성사업

가. 사업개요

- 산청군은 지리산 청정지역으로 친환경 한방약초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친환경 한방약초산업의 육성을 통해 지속발전이 가능한 성장동력을 창출하여 여건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대응책을 마련
-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산청군 농특산품의 명품화 및 고부가가치화, 농업경영의 구조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소득 기반을 조성하고 있음.
- 또한 제 4차 국토종합계획 및 경상남도 지역혁신 5개년 계획, 한의학육성발전 5개년계획 등의 상위계획을 수용하고 산청군의 장기발전계획의 방향에

부합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신활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표Ⅲ-7> 친환경 한방약초산업 육성사업 집행실태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신활력	지방비	민자	비고
합계	52,302	9,135	17,822	25,285	
2005년	11,150	2,835	4,265	4,050	우수계획 300
2006년	28,217	2,900	10,082	15,235	'05평가 400
2007년	12,935	3,460	3,475	6,000	'06평가 900

자료 : 산청군 내부자료(2007)

나. 추진체계

- 친환경 한방약초산업육성사업에서 지역협력단, 특별자문단, 관학협력 체계 대학 생약기능성식품연구소 등의 연구기관이 연구, 기술 지도를 담당하고 산청농협, 산림조합, 약초조합 등 농업지원기관이 자금지원 및 유통망 확보를 담당하여, 약초재배농가, 초종별 작목반, 약초연구회 등 약초 생산농가가 한약재 생산과 1차 가공을 담당하고 있음.
- 공동탕제원, (주)기화제약, 생약 및 기능성식품업체 등 관련기업은 상품 생산, 판매를 담당하고, 지역언론사, 약초축제위원회, 농업경영인회 등 언론 및 사회단체는 홍보와 마케팅을 담당하며, 산청군은 교육과 묘목보급을 담당하고 있음.

다. 주요성과

- 지속적인 약초재배 기반 조성과 민간자본 투자유치의 성과를 바탕으로 산업구조를 1차산업에서 2, 3차산업으로 확장되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약초 생산기반을 구축.

<표Ⅲ-8> 친환경 한방약초산업 육성사업 내역별 실태

(단위 : 백만원)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내용	연도별 투자계획			
		계	2005	2006	2007
합 계	7개 분야 31개 사업	52,302	11,150	28,217	12,935
약초연구개발 전담팀 운영 (5)	소 계	1,218	575	263	380
	산청약초 연구개발(R&D)	550	150	200	200
	지리산약초 기초자료 조사	50	50	0	0
	약초연구발전특구 기반조성(시설리모델링)	468	375	63	30
	전략약초 D/B화 및 성분분석	50	0	0	50
	한방약초 상품의 고급화 기술개발	100	0	0	100
기술혁신역량 강화 (6)	소 계	723	178	185	360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95	45	20	30
	지리산 한방약초 명품화 포럼	20	0	0	20
	한방약초 전문가 POOL 운영	131	11	50	70
	한방약초 지역리더 육성	220	0	50	170
	선진농장 체험 벤치마킹	88	28	30	30
	고품질 약초재배 전문기술 교육	169	94	35	40
약초 재배기반 조성 (6)	소 계	7,611	1,170	4,051	2,390
	생약초 대단지 시범(10ha)	144	0	144	0
	우량 약초묘목 증식포 조성	2,455	0	2,455	0
	약초산업 지원센터 조성	1,990	900	0	1,090
	약초연구 시범포 기반조성	150	150	0	0
	약초연구단지 전시포장 조성 및 관리	70	0	0	70
	약용작물 재배단지 조성	2,802	120	1,452	1,230

- 약초재배 실태조사 결과 2004년 579호 500ha 500톤에서 '05년 985호 700ha 1,000톤, '06년에는 1,200호 1,000ha 1,200톤, '07년에는 1,500호 1,200ha 1,500톤으로 생산량이 증가하였음.
- 산청 지리산한방약초축제와 한의학 박물관 등 전통한방휴양관광단지 조성 과 연계된 외래관광객이 2004년 60만명, '05년 70만명, '06년 100만명으로증가하였음. 약초관련 매출액 또는 2004년 50억원, '05년 80억원, '06년 100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임.

- 마산대학교에서 약재개발학과를 설치('05.2.25)하고 관내 산청고등학교에 한약자원과를 설치('05.11.3)한 것은 한방약초 관련 후속세대 육성을 위한 중요한 성과임.

<표Ⅲ-8> 친환경 한방약초산업 육성사업 내역별 실태(계속)

(단위 : 백만원)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내용	연도별 투자계획			
		계	2005	2006	2007
약초체험장 조성 (4)	소 계	1,640	1,080	150	410
	지리산 약초 체험단지 조성	590	440	150	0
	왕산 산약초 및 토종약초 체험단지 조성	340	340	0	0
	도농교류 활성화및 약초체험 행사	150	0	0	150
	신활력 체험단지 조성	560	300	0	260
기능성 식품개발 및 1차 가공시설 지원, 민자유치 활성화 (5)	소 계	36,250	7,297	22,193	6,760
	산청약초 저장 및 가공시설	12,793	0	12,793	0
	한방약초 가공산업 육성	1,180	530	300	350
	한방의료클러스터 기반구축	100	0	0	100
	한방제약회사 계약생산 약초관리시설	450	0	0	450
	한방약초 우수 투자기업 유치	21,727	6,767	9,100	5,860
공동브랜드 개발 및 규격 포장재 지원 (3)	소 계	1,820	0	550	1,270
	공동브랜드 개발	100	0	100	0
	한방약초 홍보·마케팅	670	0	0	670
	한방약초 규격포장재 지원	1,050	0	450	600
명품화 홈페이지 구축 및 유통시설 확충 (3)	소 계	3,040	850	825	1,365
	1읍면 1Best 토종음식 개발 보급	200	0	0	200
	한방약초 홈페이지 구축 및 유통시설 지원	845	200	245	400
	한방약초 명품화 홈페이지 운영	350	100	80	170
한방약초축제 육성	산청 한방 약초축제 육성	1,645	550	500	595

자료 : 산청군 내부자료(2007)

라. 집행실태

- 2005년도에는 우선 한방산업단지 부지조성 편입보상비(3억 33백만원)와 지리산약초연구발전특구 부지매입비(2억 24백만원)로 신활력사업비를 집행한

점이 눈에 띈다.

- 2006년부터 편입보상금을 지방비로 지급하여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일부 해소 하였으나, 화계시장 특산물판매장설치사업 편입보상, 덕산시장 약초 및 특산 품 판매장 설치사업 편입보상, 산청시장 진입도로 및 약초시장 개설공사 편 입보상 등 다시 신활력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약초 재배 선도농가 및 가공 공장 지원, 한방약초가공산업시설 지원 등을 보조사업 형태로 집행하였음.

<표Ⅲ-9> 친환경 약초산업 육성사업 집행실태

년 도	예산(백만 원)				집행액(백만 원)				집행율 (%)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계	국비	지방비	민자등	
2005	6,154	3,235	2,195	724	5,742	2,823	2,195	724	93.3
2006	28,717	3,400	10,082	15,235	28,685	3,368	10,082	15,235	99.9
'05이월	2,225	1,679	0	546	2,225	1,679	0	546	100.0

<표Ⅲ-10> 친환경 한방약초산업 육성사업 인센티브

(단위 : 백만원)

국고 기본지원액	2005			2006 실적평가	총계
	사업 계획평가	2005년	소 계		
2,500	300	400	700	900	1,600

2. 신활력사업 추진 부진사례

2.1 중부권

- O군은 도서지역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사례이다. 2005년 사업비를 전혀 집행하지 않고 스스로 예산감액 신청을 할 정도로 사업 추진의지가 미흡했던 지역임.
- 그 여파로 여전히 사업집행이 부진하고 섬 별로 제각기 특성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선택과 집중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대상지역에서 탈락한 사례임.
- H군은 사업추진체계에서 관이 전혀 역할을 하지 않고 지역발전연구원과 특정대학에 모든 사업을 위탁하여 집행하였음. 신활력사업의 취지 중 하나인 민관협력체계가 생성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례임.
- 심지어 이와 같은 사실을 다양한 경로로 지휘부에 알려주었으나 추진방향을 수정하거나 사업 집행상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음. 뿐만 아니라 사업의 대부분을 위탁받은 대학에서 사업집행 과정에 물의를 빚어 감사원 감사를 받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
- K군 또한 협력대학의 적정치 못한 사업비 집행과 시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품목선정으로 부진지역으로 평가받는 사례임. 지역혁신체계에서 대학의 역할을 강조하는 까닭은 대학의 전문가 집단과 시설을 활용하라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로 강의실을 짓는 등 부적정한 사업비 집행내역이 파악되었음.
- 또한 과잉생산이 우려되어 모든 평가위원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 녹차 재배를 해당 군에서는 끝까지 추진하는 사례로 있었음.

2.2 호남권

- 호남권 부진지역의 경우 전년도 부진지역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무엇보다도 신활력사업의 취지를 자의로 해석하고 있음.
- “ASP모델은 고사하고 단순히 낙후지역을 잘 살게 하려는 정책이다. 그래서 이런 시설 사업이 꼭 필요하니까 추진해야 겠다”라는 인식을 아직도 갖고 있음.
- 기존의 시설투자 중심의 농업보조사업처럼 추진했을 때, 향후 관리나 운영을 할 능력이 없어 시설이 방치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던 것이 사실이지만, 해당 군에서는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함.
- M군의 경우 2006년에 파산한 일본의 유마리시를 연상시킬 정도로 테마파크 조성에 혈안이 되어 있고, W군의 경우 ‘작년 군수에게 건의하여 SW사업으로 전환하겠다’라고 약속한 시설사업을 장소만 변경한 채, 그대로 추진하고 있음. 그래서 결국 신활력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시설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음
- H군의 경우는 군수가 비리에 연루되어 구속될 정도로 관의 역량이 떨어지는 지역임. 민관 협치모델을 목표로 수립한 사업계획이 훌륭하다고 하여 계획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지만 실행단계에서 추진단 내부의 민과 관 사이에 자금결재 등의 문제로 불협화음을 일으키다 끝내 작년말 추진단을 해체하고 말았음.
- K군의 경우는 그간 전임 군수 시설에 영망으로 추진한 뒤처리 문제를 신임 군수가 온전히 뒤집어쓰고 있는 경우임. 서면평가의 내역이 지난 2년간 실적이기 때문에 호남권 내에서 꼴찌를 받았고, 그 휴유증으로 부진한 평가를 받은 지역임.

2.3 영남권

- 영남권 탈락지역의 공통점은 기본계획이나 부지확보도 안 된 상태로 과도한 시설사업을 추진하다 집행실적 부진으로 불량한 평가를 받았다는 점이다.
- C군의 경우 과일시장의 개방과 기후 온난화에 따라 향후 작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군민의 숙원사업이라는 이유로 기본계획이나 부지확보도 안된 상태로 APC 건립을 추진하다 사업비 삭감(10%)조치를 받고 집행실적 부진으로 탈락한 사례임.
- K군은 당초 사업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지역혁신협의회 위원들의 나뉘먹기신 사업선정에 따른 부작용과 산림생태체험시설 건립 등 시설사업의 집행부진으로 사업비 전액을 이월하여 사업비 삭감(70%)조치를 받고도 개선조치가 흡족하지 않아 탈락한 사례임.
- Y군은 곤충사업 육성의 취지는 공감을 받았으나 역시 산업곤충연구소 시설 확충과 곤충생태체험관 건립에 과도한 사업비를 집행하여 부진사례로 지적 받고 탈락한 사례임.
- 또 다른 K군은 역시 축산분뇨자원화시설 건립에 많은 사업비를 배정하였으나 추진실적이 부진하여 사업비 삭감(30%)조치를 받고도 개선 내역이 흡족하지 않아 탈락하였음.

3. 신활력사업 추진 사례의 시사점

- 신활력사업의 추진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소개한 우수 및 부진사례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먼저 국토공간의 비활성화지역으로써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을 위해 인센티브 형식의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과 함께 지역을 돌아보고 발전의 실마리를 찾아보는 계기를 마련

한 것은 지역개발에 있어서 새로운 시도임에 분명함.

- 하지만 실제 그 추진과정을 보면 사실상 기존의 투자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음.
- 사례지역으로 선정된 평창, 장수, 산청군은 평가결과 우수지역으로 2005년-2006년에 걸쳐 인센티브까지 받은 지역이지만 이들 지역의 사업 추진체계나 주요성과를 비교검토해 보면, 평가관리체계의 미흡으로 명확하게 “왜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인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측면이 있음.
- 사업비 규모는 지방비투자과 민자유치 규모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평창군의 경우 82억원 수준이지만 장수군은 146억원, 산청군은 무려 523억원에 이르고 있음.
- 지방비와 민자유치 규모가 크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의지가 강하고 사업성이 높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지만 이는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셨다던 당초의 이 사업의 취지와 어떻게 연계되는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임.
- 특히 지역의 부존자원을 기초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의지와는 달리 3개 우수지역 모두 24-25개의 크고 작은 사업에 분산투자를 하고 있음.
- 물론 장수와 산청군의 경우 각기 한우 및 약초산업에 특성화하기 위해 관련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관련시설을 설치하는 등 전후방으로 관련된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으나, 평창의 경우 ‘브랜드 명품화’라고 하여 선도사업의 성격이 불투명한 곳에 소규모로 나누어 사용하고 있음.
- ASP모델에 입각하여 이들 사례지역 개발사업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평창과 산청군의 경우 포럼이나 아카데미의 설치, 지역리더교육, 생산지도 및

농촌관광서비스 교육, 선진지 견학 등 주민역량을 키우는 교육 및 훈련사업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으나 장수군의 경우 CEO영입 등 전문경영인에 대한 획기적인 프로그램은 있으나, 지역리더의 프로그램은 부족함.

- 추진체계에서 있어서도 산청군에서는 지역혁신협의회 이외에 향후 지역의 혁신을 주도할만한 별다른 추진체계가 형성되었다고 판단할만한 근거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근거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부족한 것이 사실임.
- 결국 대부분의 사업비는 과거 농업, 농촌분야에 대한 투자방식과 크게 다를바 없이, 시설자금이나 생산자들에 대한 지원형태로 예산이 설계되어 있다는 것도 문제임.
- 예를 들면 평창군의 경우 공동선별기자재보급(865백만원), 물류지원비(560만원), 포장재개발 및 지원(720백만원), 품질하자보상 및 손실보전(430백만원)에 지원할 계획이며, 장수군에서도 장수한우유전자뱅크구축(5,117백만원)과 톱밥, 왕겨지원(1,575백만원), 유기질비료구입지원(2,000백만원) 등에 지원하고 있으며, 산청군의 경우 연구개발(600백만원), 우량약초묘목증식포 조성(2,455백만원), 약초산업지원센터 조성(1,990백만원), 약용작물재배단지조성(2,802백만원)을 지원하도록 계획되어 있음.
- 한편 부진지역의 경우 사업의 취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취지 자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사업의 선정이나 투자방식에서 소위 ASP모델에 의한 지역혁신 방식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임.
- 그 결과 시장수요와 무관한 품목육성이나 사업아이템을 선정하여 중도에 실패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음. 또한 부진지역에서는 사업추진체계 측면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확고한 추진의지와 체계를 갖추고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외부용역기관이나 민간부문 등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그러다 보니 사업비의 집행에 있어서도 무계획적으로 투자를 하

거나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집행상의 문제를 노출하고 있음.

- 이상에서 지적한 우수 및 부진사례지역에 대한 몇 가지 문제는 새로운 사업 방식의 도입에 따른 초기단계의 진통으로 시간이 경과하면서 조금씩 개선될 것으로 보지만, 그 과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은 필요함.
- 즉, 그 동안 신활력사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이라고 강조해온 지역혁신 체계의 구축이나 혁신역량의 재고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책대상과 투자방식을 어떻게 조정하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는 누가,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함.

<표Ⅲ-11> 신활력사업 우수사례지역의 사업대상 비교

구 분		평창군	장수군	산청군
사업비예산(05~07)		8,210	14,675	52,302
세부사업수		3개 분야 24개 사업	5개 분야 35개 사업	7개 분야 31개 사업
유형별 주요사업	지역역량	Happy700포럼 아카데미운영 생산지도교육 농촌관광서비스교육 FD운영	전문교육프로그램 계약학과 개설 CEO영입 FD운영 R&D사업	포럼운영 전문가pool 지역리더교육 기술교육 선진농장벤치마킹 R&D, 기초자료조사
	추진체계	지역혁신협의회 연합유통사업단 연합GT사업단	지역협력단 사업단사무실운영 홈페이지구축 운영	지역혁신협의회
	선도사업	브랜드명품화사업 농촌관광	유전자뱅크구축 생산이력관리 친환경순환농업	약초재배기반조성 약초체험장 설치 약초가공(민자유치) 공동브랜드개발 약초축제개최

자료 : 박준식·이기원, 신활력사업보고서 요약(2007)

4. 신활력사업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 신활력사업의 목표는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농산어촌형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여 발전역량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것임.
- 여기서 지역혁신체계를 강조하는 이유는 시장개방의 파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에서 유통까지 신뢰와 협력으로 뭉쳐 국내외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수준의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임.
- 신활력사업은 개개인의 의식개혁을 바탕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이러한 현실을 스스로 타개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추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 1기 신활력사업에서는 첫째, 지역별 특성화, 즉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주제를 선정한 것이 주요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국가균형발전 산업정책 중 시도별 4대 전략산업 선정이 지역의 특성과는 무관하게 IT와 BT일색이었던 것과 크게 대비됨.
- 농산어촌지역의 특성상 향토자원개발을 주제로 한 지역의 50여 시군에 이르지만 농특산물이 아닌 타 지역과 차별되는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주제 선정이 여러 시군에서 나타나는 것은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신활력사업의 새로운 접근방법에 기인함.
- 둘째,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사업(곡성, 거창, 함천, 창녕)은 곡성이나 거창의 경우 상당히 가시적인 성과(인구유출방지, 사교육비 경감)를 거두었으며, 지역문화, 관광을 주제로 한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의 기반시설사업 추진이 불가피하였으나 지역적 특성과 부합하는 경우에는 관광객 유입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음.
- 예를 들면 영월(박물관), 인제(모험레포츠), 영동(국악), 장성(홍길동 문화컨

텐츠), 신안(갯벌체험관광) 등은 농특산물 이외의 자원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임.

- 셋째, 신활력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람직한 변화로서 의식개혁을 수반하는 지역의 혁신리더 발굴과 육성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특히 일회성 행사 성격의 강의교육을 탈피하여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외부 전문교육기관과 협약하여 실질적인 교육성과를 가 나올 수 있도록 연중 운영하고 있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음.
- 2005년의 경우 1회성 행사에 치중하던 지역들이 많았으나, 2006년 실적을 분석해 보면 체계적인 리더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시군이 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연중 수차례 걸쳐 체계적인 혁신리더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시군을 들면 영암군(4회), 인제군 및 금산군(각 3회), 강화군, 양양군, 진도군(각2회) 그밖에 화천, 횡성, 평창, 괴산, 영동, 고창, 고흥, 무안, 장성, 나주, 보성, 강진, 당양, 상주, 함양, 영양, 봉화, 영덕, 의성, 하동, 청도군 등 총 27개 지역이나 됨.
- 넷째, 집단적 혁신역량 강화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나타낸 지역들이 나타나고 있음. 관민외부전문가가 함께하는 지역혁신포럼운영이나 생산 및 유통 조합법인 결성, 인근대학이나 전문연구기관의 공동연구와 지방자치단체 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여건이 크게 개선됨.
- 따라서 다수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강화군(강화약쑥), 양양군(양양송이), 순창군(장류), 고창군(북분자주), 진도군(진도홍주), 고흥군(고흥유자), 봉화군(봉화송이), 의성군(마늘) 등은 지리적표시제품목으로 등록하였음.

- 비록 향토지적재산권의 확보와 신활력사업과의 인과관계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지역의 부존자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를 발굴 및 재산권화한다는 것은 내발적 지역활성화의 시작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Ⅲ-12> 신활력지역의 지적재산권 확보실태

권역	시군	지적재산권 확보 내역
중부권	강화군	○ 강화약쑥 지리적 표시제 등록('06. 8. 7) ○ 강화약쑥 특구 지정('06. 6. 20) ○ 상표등록 38건 ○ 특허등록 5건 ○ 실용신안 등록 1건
	양양군	○ 양양송이 지리적 표시제 등록(산림청, '06. 3. 27)
	괴산군	○ 특허등록 6건
	증평군	○ 상표등록 1건
호남권	고창군	○ 복분자주 지리적 표시제 등록('04)
	순창군	○ 순창장류 지리적 표시제 등록(농림부 제8호) ○ 특허등록 3건 등 총 17건 지적재산권 확보
	고흥군	○ 통합브랜드 상표등록 및 의장등록('06) ○ 고흥유자 지리적 표시제 등록('06) ○ 고흥유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07)
	담양군	○ 대나무 신산업 관련 ¹² - 특허 26건 - 의장등록 3건 - 상표등록 78건
	진도군	○ 진도홍주 지리적 표시제 등록('07) ○ 진도홍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07)
영남권	봉화군	○ 봉화송이 지리적표시제 등록('05.)
	상주시	○ 상주곶감특구 지정('05. 9. 6)
	성주군	○ 성주참외(참별미소) 상표 등록('06. 11. 14) ○ 성주참외 지리적 표시제 등록('05. 12. 1)
	울릉군	○ 특산물(부지갱이, 미역취, 참고비, 삼나물) 지리적 표시제 등록('06. 12.15)
	의성군	○ 의성마늘 지리적 표시등록 ('05. 7. 20) ○ 의성마늘산업유통특구 지정('06. 6.20) ○ 구워먹는 토종의성마늘 특허청 상표 등록

- 신활력사업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음. 특히 낙후지역의 공통적인 특징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소득기반의 상실이기 때문에 이

들 지역에서 인구나 소득에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어쩌면 기대하기 어려운 일인지도 모른다.

- 하지만 짧은 사업기간에도 불구하고 인구가소 추세가 완화되거나 오히려 증가 추세로 돌아선 지역이 나타난 것은 비록 그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그동안 숨은 인구 찾기에 무심하던 지방자치단체가 비로소 지역의 숨은 자원과 가능성의 발굴에 관심을 두게 되었던 점에 큰 의의를 두어야 할 것임.

<표Ⅲ-13> 신활력사업 기간 중 인구증가가 있었던 지역

권역	시군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중부권	강화군	67,100	66,860	65,698	65,044	65,114	65,389	65,510
	용진군	14,008	14,050	14,120	14,270	14,820	15,609	16,491
	인제군	33,618	33,092	32,447	32,092	32,443	32,811	32,493
호남권	순창군	34,587	33,892	32,329	31,482	31,814	32,012	32,485
	신안군	53,150	51,342	49,704	50,726	47,591	46,451	46,714
영남권	고령군	37,587	36,796	35,978	34,942	34,522	34,272	34,797
	영덕군	51,131	49,593	52,602	46,965	45,826	45,003	46,460
	울릉군	10,241	9,944	9,615	9,245	9,201	9,550	10,254
	남해군	61,255	59,599	57,649	60,160	57,909	58,162	55,104
	의령군	33,494	32,751	32,766	32,371	32,371	31,099	31,625

- 또한 지역특산 농산물이나 가공품 등을 복합상품화 함으로써 고용을 창출하거나 매출을 늘리고 부가가치를 높여 소득을 올린 사례도 있음. 예를들면 순창장류산업의 경우 2004년 595명의 종사자가 2006년 675명으로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 매출액도 2,210억원에서 2,700억원으로 증가하였음.
- 자료제한으로 신활력사업이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자세한 실상은 어려우나 고용과 매출이 늘어난 지역은 임실치즈, 고흥유자, 무안백련, 문경 오미자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밖에 영동의 와인매출액은 2004년 22억원에서 2006년 43억원으로, 고창의 복분자로 120억원에서 384억원으로 진도홍주도 80억원에서 13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표Ⅲ-14> 신활력지역의 고용 및 매출액 증가사례

지 역	고용(명)		매출액(억)	
	2004	2006	2004	2006
양양 - 송이가공	83	96	46.4	62.6
- 송이판매	112	142	5.7	7.6
순창 - 장류산업	595	675	2,210	2,700
임실 - 치즈농협	47	53	104	123
- 숲골유가공	14	37	11	32
- 치즈피자	196	640	120	384
고흥 - 유자관련	3,992	4,934	185.6	265.6
무안 - 백련산업	10	120	3	42
문경 - 오미자가공	8	155	1	75
청도 - 청도반시	-	-	232.2	383.3
남해 - 화전한우	-	-	35	86

-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 지역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화천산천어축제와 인제황태축제, 금산인삼축제, 함평나비축제 등이 여기에 해당함. 이와 같은 가시적인 성과중 어느 정도가 과연 신활력사업의 추진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긍정적인 작용을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판단됨.

<표Ⅲ-15> 신활력지역 축제의 파급효과

권역	시군명	2004년	2005년	2006년
중부권	양양군	○ 송이축제 - 매출: 89억	○ 송이축제 - 매출: 97억	○ 송이축제(77만명) - 매출: 102억
	인제군	○ 황태축제(6회) - 방문객: 15만 - 매출: 3억	○ 황태축제(7회) - 방문객: 18만 - 매출: 4억	○ 황태축제(8회) - 방문객: 20만 - 매출: 5억
	화천군	○ 산천어축제(2회) - 58만 5천명	○ 산천어축제 - 87만명	○ 산천어축제 - 103만명
	횡성군		○ 한우축제 - 방문객: 29만 - 소득: 79억	○ 한우축제 - 방문객: 52만 - 소득: 118억
	금산군	○ 인삼축제 - 방문: 19만7천	○ 인삼축제 - 방문: 93만5천	○ 인삼축제 - 방문: 190만
호남권	무안군	○ 백련단지 - 방문: 8만 - 입장료: 1억	○ 백련단지 - 방문: 11만5천 - 입장료: 2억	○ 백련단지 - 방문: 14만 - 입장료: 2억 5천만
	함평군	○ 함평나비대축제 - 150만	○ 함평나비대축제 - 155만5천	○ 함평나비대축제 - 161만8천
영남권	봉화군	○ 은어축제 - 방문: 16만5천 - 매출: 19억 ○ 송이축제 - 방문: 19만9천 - 매출: 72억	○ 은어축제 - 방문: 19만8천 - 매출: 22억 ○ 송이축제 - 방문: 23만3천 - 매출: 100억	○ 은어축제 - 방문: 29만6천 - 매출: 50억 ○ 송이축제 - 방문: 30만5천 - 매출: 112억
	산청군	○ 약초관련관광객 - 60만명	○ 약초관련관광객 - 70만명	○ 약초관련관광객 - 100만명
	함양군	○ 물레방아축제 - 방문: 5만	○ 물레방아축제 - 방문: 8만5천	○ 물레방아축제 - 방문: 10만

IV. 신활력사업 정책의 차별화 등 발전방안

1. 신활력사업 유형구분 기준

1.1 신활력사업의 유형구분 기준

가. 투입단계별 유형화

- 자원요소의 투입단계에 따라 자원단계, 생산과정단계, 산출물 단계로 구분, 이때 자원단계에서 향토문화자원은 자원의 형태에 따라 유형의 자원과 무형의 자원으로 나눌 수 있음
- 유형의 자원은 실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리적 자원요소를 말하며, 무형의 자원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다소 기술이나 지식, 노하우, 풍속처럼 다소 추상적인 자원요소를 말함
- 그렇지만 이러한 유형의 자원요소와 무형의 자원요소는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도 한다. 즉, 무형의 자원요소는 유형의 자원요소를 생산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기반이나 모티브가 되기도 하고
- 유형의 자원을 생산 활용하는 과정에서 무형의 자원이 축적되어 계승, 발전되는 경향이 강하게 때문에 유형의 자원활용 결과가 무형의 자원요소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음

<표IV-1> 투입단계별 유형화

구분		내용	사례
자원단계	유형자원요소	생산과정의 주요 모티브가 향토적 소재인 경우	장생도라지, 흑유도자기 등
	무형자원요소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원을 활용하는 경우	강화순무, 보성녹차 등
생산과정단계		생산변환 과정에서 생산되는 자원을 활용하는 경우	옷칠도장, 피혁 등
산출물단계		향토문화자원을 기초로 제품과 서비스를 다양화시킨 경우	김치주스, 김치축제 등

나. 주도산업별 유형화

○ 산업별 특성과 성격에 따라 구분

- 신활력산업은 각각의 산업별 특성과 성격에 따라 1차 산업 혹은 2차 산업이나 3차 산업이 주도하여 해당되는 향토문화자원 요소의 산업화 혹은 부가가치화 및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도산업 형태에 따라서도 유형을 구분할 수 있음

<표IV-2> 주도산업별 유형화

구분	내용 및 사례	분야
1차 산업 주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적으로 유명한 산지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괴산고추, 풍기인삼, 충주사과 •지역적 소재가 산지화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제주선인장, 당진조락도약쑥 •지역특성환경에 맞는 산물을 도입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창복분자, 청양구기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 : 토종재배작물류, 약재류, 산채류, 견과류등 •임업 : 산림용 종자 및 묘목류 •축산업 : 토종가축류, 가금류 •어업 : 토종어로어류, 양식어류 •유전자원 : 미생물, 자생식물, 토종동물 •기타 : 천연광물류, 공기, 물 등
2차 산업 주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적으로 유명한 산지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원목기, 한산 모시 •전통지식 소재를 산업화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생도라지, 안동간고등어, 황칠 •지역부존자원을 활용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은황토, 보령머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생활 : 전통직물 및 제품, 전통염색 및 염료, 장신구, 전통한복 혼례복 등 •식생활 : 한과류, 김치류, 장류, 떡류, 다류, 전통곡주 및 민족주, 축산물 등 •주생활 : 창호, 목가구, 온돌, 활토방 등 •기타 : 한의약제재, 화장품, 도자기 등
3차 산업 주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특성을 관광지나 축제화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반딧불이축제, 영월레프팅 •지역특성을 캐릭터나 브랜드화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성홍길동, 안성맞춤캐릭터 •지역식생활을 식당이나 프랜차이즈화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산이구찜, 포항과메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토관광 및 축제 : 민간전승 관광상품화, 전통체험프로그램제작 및 서비스 등 •향토제품의 유통, 프랜차이즈, 향토소재 캐릭터, 영상, 출판 등

다. 자원활용별 유형화

○ 산업별 특성과 성격에 따라 구분

- 신활력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 부존하고 있는 자원요소를 발굴하여 이를 산업화시키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 이와 같은 자원의 활용 유형을 통하여 지역내의 자원에 대한 시각과 그것에 대한 개발방향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음
- 이에 자원 요소의 활용측면을 기준으로 신활력의 유형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이 크게 전통지식복원 활용형, 부존자원 활용형, 전통산업 발전형 등 3가지 형태로 유형화 할 수 있다.

<표IV-3> 자원활용별 유형화

구분	내용	사례
전통지식 복원활용형	•전통문화 속에 있었던 지식, 구전되어 내려온 비기(秘記) 및 민간요법을 활용한 제품화와 이를 사업화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생도라지 오래된 도라지가 산삼보다 낫다는 속담에 착안 • 황칠 정약용의 목민심서 내용중 ‘칠 중에 칠은황칠이 으뜸이다’라는 구절에서 착안 • 안동간고등어 내륙까지 고등어 운반을 위해 소금간을 찼던 생활역사의 구전을 산업화 •김포쌀눈비누 역사적으로 피부미백의 효과를 위해 사용되었던 쌀겨를 비누로 생산
부존자원 활용형	•해당지역에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는 향토문화자원을 기반으로 삼아 가공상품으로 개발하거나 관광자원화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령머드 세계 5대 갯벌중의 하나인 보령시의 머드자원을 관광자원화 •보은 황토 등반진입로에 다량 매장되어 있는 향토의 효능을 감안 황토볼을 상품화하여 개발
전통산업 발전형	•전통적으로 산지를 형성해 오면서내려온 전통산업에 첨단과학기술이 도입되고 지식이 접목되어 새로운 브랜드 등이 개발되어 발전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산모시 생산방식의 기계화 및 식용화하여 용도를 다변화 •담양대나무 대나무가 지닌 효능 및 활용처의 다변화 및 관광자원화 •남원목기 현대산업화 및 공동브랜드화

라. 사업추진주체별 유형화

○ 산업별 특성과 성격에 따라 구분

- 신활력사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여 지역 내에 정착되어 확산되도록 하고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업주체가 보다 많은 노력과 다양한 형태의 접근시도가 이루어져야 함
-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주체는 각각의 사업특성이나 성격에 따라 다른 형태로 접근을 시도하게 됨
- 따라서 신활력도 개인적으로 시도하는 형태의 사업가 주도형, 지역주민들의 공동참여로 협력해서 시도하는 지역민 주도형,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연구소가 주도하여 보육하는 형태의 공공주도형 등으로 나누어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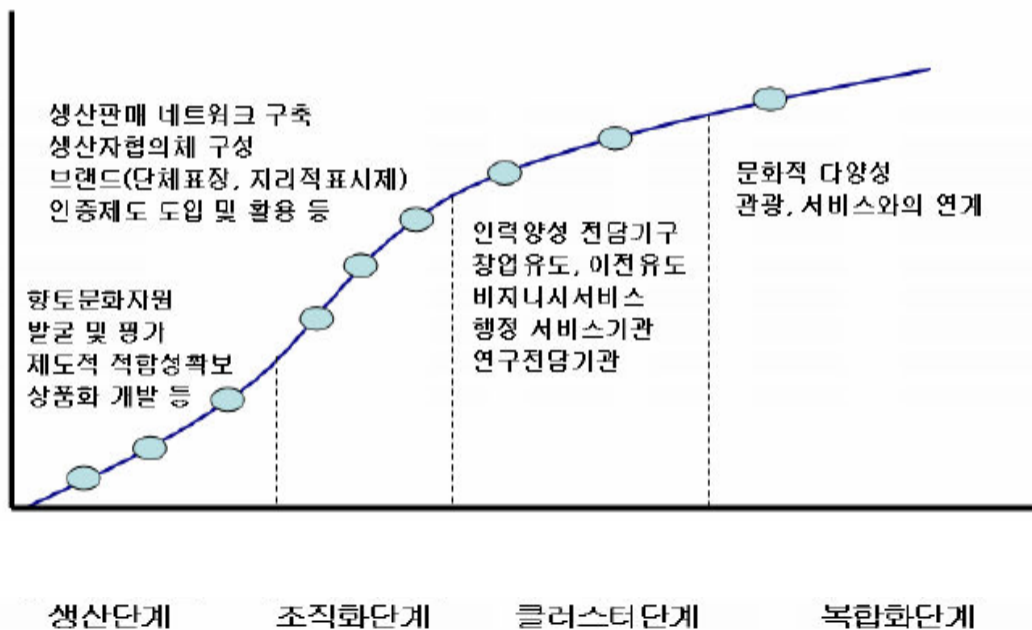
<표IV-4> 사업추진주체별 유형화

구 분	내 용	사 례
사업가 주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척자적, 사업가적 정신을 지닌 개별사업가가 사업아이템으로서 향토문화산업 자원요소를 선택하고, 이를 산업화시키는 과정에서 향토문화산업으로 발전하게 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생도라지 : 2대에 걸쳐 사업을 진행, 나물로 개발되어져 오던 도라지를 약재로 개발 • 홍쌍리청매실 : 3대에 걸쳐 이어온 매실 농사의 노하우로 매실제품 생산을 계획
지역민 주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의 개인보다 지역민 전체의 사업적 의지함양 및 노력에 의하여 향토문화산업으로 발전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성녹차 : 국내 제1의 지리적 표시등록 제품으로 이를 위해 녹차관련업체로 구성된 법인체를 구성
공공 주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적 발전가능성 및 육성의 타당성은 있으나 산업화 초기단계에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육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양대나무 : 대나무산업의 재활성화를 위해 관련과를 만들고, 주변대학과 공동연구개발하여 자원화 • 고창복분자 : 고창군 업기술센터에서 복분자 육종개발과 제품개발을 추진하여 산업화 • 구례야생화 & 북제주 선인장 : 농업기술센터에서야생화 및 선인장 효능에 착안 이를 산업화

1.2 신활력사업의 산업발전단계별 유형화

□ 신활력사업의 성장단계

- 신활력사업은 크게 향토자원 요소의 식별과 산업생성 ⇒ 생산의 조직화 ⇒ 클러스터화 ⇒ 복합화 등 4단계를 거쳐서 성장발전
 - 즉, 다시 말해첫째, 향토문화산업이 창출되는 생성단계
 - 둘째, 창출된 아이템을 중심으로 하여 산업으로 조직화되는 단계
 - 셋째, 조직화된 기관을 중심으로 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들이 네트워크를 맺고 관련업체가 창업되는 클러스터가 구축되는 단계
 - 넷째, 1차, 2차, 3차 산업이 상호 융합하거나 복합화 되는 단계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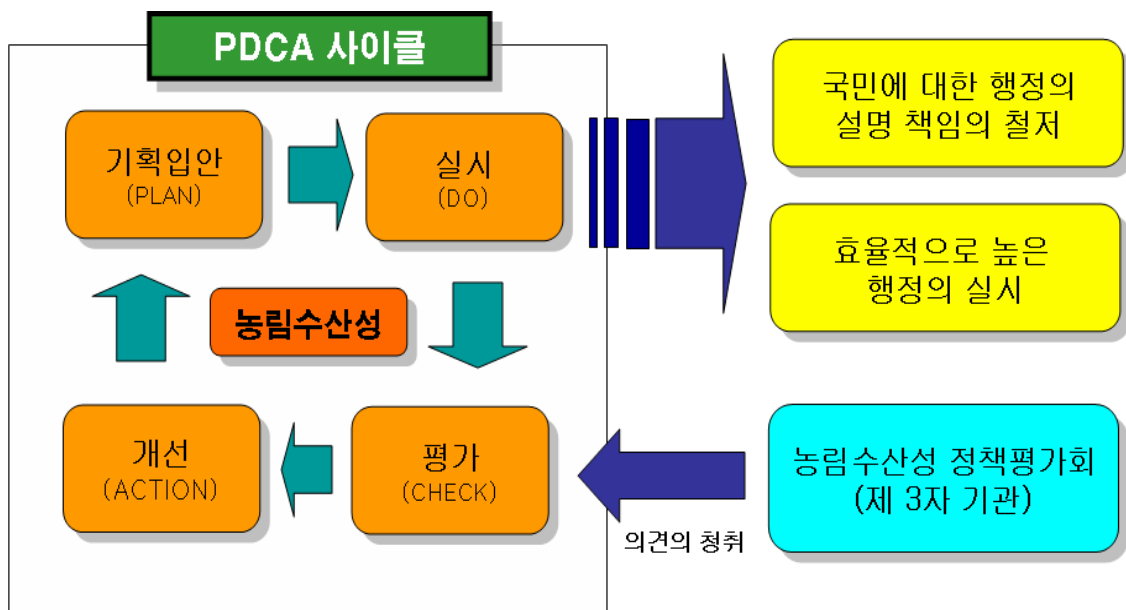
<그림 IV-1> 신활력사업의 성장단계

V. 외국의 정책평가 및 성과관리 사례 연구

1. 일본 농림수산성 정책평가

1.1 농림수산성의 정책평가

- 농림수산성은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정책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농림수산성이 정책평가를 실시하는데 있어서는 제 3차 위원으로 구성된 ‘농림수산성정책평가회’로부터 의견을 청취 및 반영시킴으로써 정책평가의 객관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그림 V-1> 일본의 정책평가 PDCA사이클 모형

가. 농림수산성의 정책평가개요

- 일본의 행정에 있어서 국민적 입장에 서서 또한 대내외 사회경제정세의 변화를 근거로 한 객관적인 정책의 평가를 강화하고 이에 따라 평가의 결과를 정책적으로 적절하게 반영시키는 것이 과제라는 인식하에 2001년 1월에 중앙성청(Central Government Reform) 개혁에 수반하여 전 성청에 정책평가 제도가 도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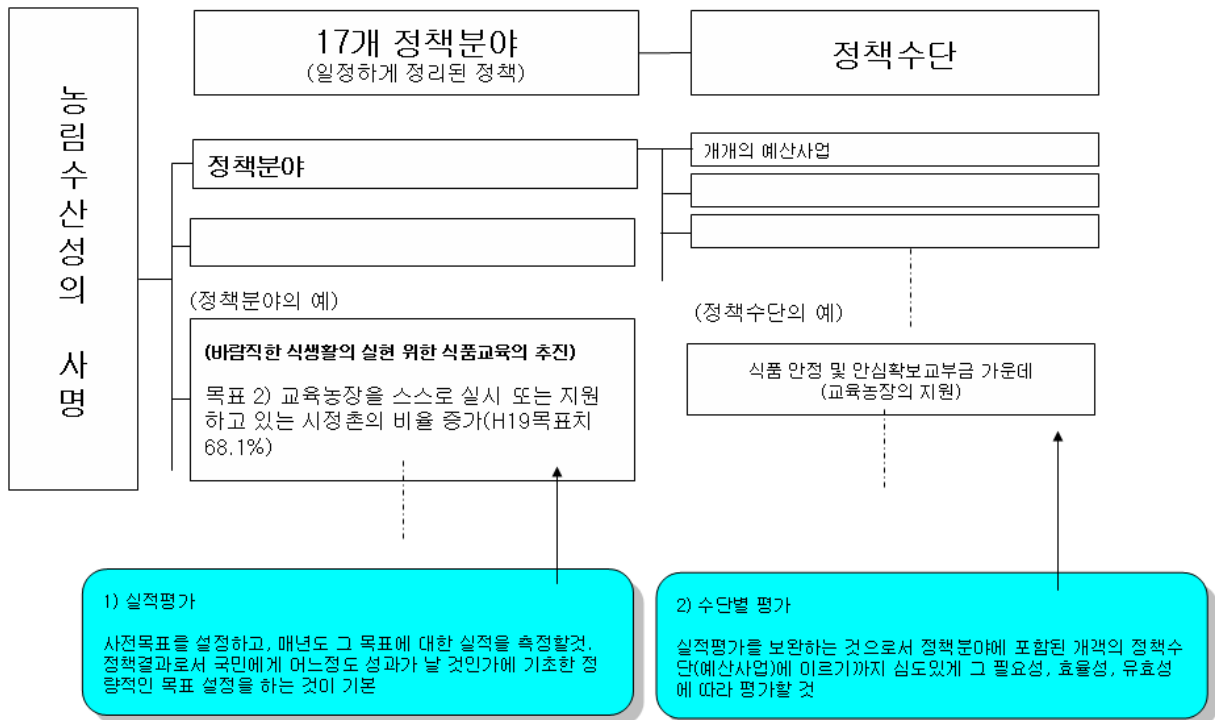
- 농림수산성에서는 「식료·농업·농림기본계획」에 있어, ‘계획에 따른 각 시책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필요에 따라 제 3자기관에 의한 평가를 활용하는 것을 포함해서 적절한 시기에 정책의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각하여 필요에 따라 시책내용 등의 재검토를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타성청에 선도적으로 2001년부터 정책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에 입각하여 농업의 본질 강화 및 공격적 농업정책의 추진 등에 맞물려 있는 지금 보다 효율적으로 질 높은 농림수산행정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정책평가의 추진이 불가피하다.

나. 정책평가방법

- 농림수산성의 정책평가에 있어서는 농림수산성 ‘정책평가기본계획(2007년 3월 농림수산대신결정)’에 기초하여 실적평가, 종합평가,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이번 평가결과는 어느 정도 정리된 정책분야 등에 목표를 정하고 매년도 그 목표에 대한 실적을 측정할 실적평가의 결과를 정리하는 것이다.
- 또한 실적평가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책분야에 포함된 각각의 정책수단(예산사업)에 이르기까지 심도있는 분석 및 검증을 행하는 정책수단별 평가의 결과도 병행하여 정리하였다.

1.2 정책평가의 체계

- 농림수산성의 정책평가는 1) 정책분야 등에 목표를 정하고 매년도 그 목표에 대한 실적을 측정하는 ‘실적평가’ 2) 실적평가를 보완하는 것으로서 정책분야에 포함된 각각의 정책수단(예산사업 등)에 이르기 까지 심도 있는 통합을 행한다.



<그림 V-2> 일본의 농림수산성의 사명

1.3 2007년도 실시한 정책의 평가결과의 개요

- 실적평가에 있어서는 평가대상인 54개의 목표 가운데 약 7할의 달성 순위가 'A(대체로 유효)'가 달성되었다.
 - 달성순위가 C 유효성에 문제가 있게 된 목표 및 지표에 대해서는 그 요인을 충분히 분석한 후 유효성 등에 문제가 있는 정책수단(예산사업)에 대해서는 폐지를 포함하여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다. 또한 달성순위가 'A(대체로 유효)', 'B(유효성의 향상이 필요함)'로 된 목표에 속하는 예산사업에 있어서도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시책의 재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 정책수단별 평가에 있어서는 달성순위가 C로 된 2개의 목표와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1개의 지표에 속하는 정책수단에 있어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를 실현한 4개 사업의 경우 3개 사업에 대해서는 무언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되었다.
- 정책평가의 결과는 차기년도의 예산사업 등에 반영시키고 있다.

【2007년도 실시한 정책의 평가결과】

A 39개 목표 (72%)
 B 12개 목표 (22%)
 C 2개 목표 (4%)
 기타 1개 목표 (2%)

합계 54개 목표

정량적인 목표의 경우		정성적인 목표의 경우
A	90%이상	대체로 유효
B	50%이상 90% 미만	유효성의 향상이 필요함
C	50% 미만	유효성에 문제가 있음

2. 유럽연합의 농촌개발정책 평가체계

1.1 모니터링과 평가체계 도입의 배경

가. EU 농촌개발정책

□ 농촌개발정책의 발전과정

- 1958년에 출범한 EEC의 공동농업정책(CAP)의 핵심인 농업지도보장기금(EAGGF)을 통해 농업생산력 증대와 경쟁력 강화 추진
- 1960~70년대를 거치면서 공동농업정책과 병행하여 사회구조정책차원에서의 농업경영근대화, 생산구조조정(Mansholt plan),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농촌지역개발(ERDF) 등이 추진되고 1970년대 후반부터 다년도 사업방식이 도입됨
- 1980년대 이후 농촌지역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농촌사회의 미래” (1988)보고서를 토대로 농촌개발 지원정책 프로그램의 체계화(LEADER 프로그램 도입계기)
- 1992년 맥셰리(R. Mac Sharry)의 개혁정책에 따라 시장개입의 축소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전략이 도입되어 공동농업정책(CAP) 출범당시의 목표와 정책수단에 대한 구조적 변화가 이뤄짐(*Neo-CAP : 1992~99*)
- 1996년 프란츠 피슬러(F. Fischler)가 주도한 “코크(Cork) 농촌개발회의”를 계기로 다양하게 전개되어오던 기존의 농촌개발 관련정책들의 통합과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전략의 체계적인 추진을 시도함
- 2000~2007년 기간 동안 시행될 EU 공동농업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정한 “아젠다(Agenda) 2000”에 기초하여, (i) “EU 농업모델”의 구축 (다원적 기능, 지속가능한 농업, 경쟁력강화), (ii) 시장기능 활성화, (iii) 농촌개발정책 강화

등의 핵심정책을 추진함 (*New-CAP : 2000~2006*)

- 농촌개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정책들을 통합하고 투자 및 지원자금을 공동농업정책 재원으로 배정; "Pillar 2"
 - 이러한 농촌개발정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평가체계 도입
 - 2003년 중간개혁을 통해서 생산과 연계된 직접보조금 삭감계획을 실현
 - 농촌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강화; 농식품의 품질, 인적자원역량 강화, 환경보호 및 개선, 청년후계자 육성, 산림·생태보존 및 개선 등
- 공동농업정책 (CAP) 2007~2013
 - 2005년 브뤼셀 정상회담에서 농촌지원개발전략 논의
 - 공동농업정책의 재정을 유럽농업보장기금(EAGF)와 농촌개발기금(EAFRD)으로 분리하고, “전략가이드라인(Strategic guidelines)”에 기초하여 농촌개발의 기본(핵심)목표, 하위목표, 정책수단을 체계적 및 세부적으로 규정
 - 각 회원국 정부는 전략가이드라인의 지침을 준수하여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하고, 회원국들의 정책시행 경험을 상호 교류하기 위한 네트워크 조직

나. 2007~13 농촌개발정책 체계

- EU 농촌개발정책의 기본지침
 - **Council Regulation (EC) No 1698/2005** of 20 September 2005/on support for rural development by the 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 (EAFRD)

□ 농촌개발 전략가이드라인

○ 유럽연합은 2005년 7월, 2007~13년 기간 동안 시행할 농촌개발정책 수립을 위한 “전략가이드라인(**strategic guidelines**)”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각 회원국은 “**농촌개발계획**”을 작성하여 회원국 전체의 일관성을 갖춘 추진방향을 합의한 후, 종합하여 2007년 1월부터 농촌개발정책을 시행

○ 전략가이드라인의 수립배경과 체계

-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농림산업의 경쟁력강화, 국토정비, 환경, 삶의 질, 경제활동의 다각화 등의 전략적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핵심목표** 설정하고 역량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음
-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의 **우선과제(Priorities)**에 기초한 농촌개발정책의 전략적 목표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럽연합 이사회(Community Council)는 집행위원회(Commission, 행정기구)가 제시한 “전략가이드라인”을 채택
- 회원국들은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제시된 “전략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농촌개발계획 (Rural development national plan)**”을 수립하고, 회원국 중앙정부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모니터링 및 평가보고서 (Monitoring and evaluation)**”를 작성

□ 농촌개발정책 체계의 특성

- 과거의 농촌개발정책 보다 접근방법 및 추진체계를 단순명료화하고 전략적 접근노력을 강화하였음, 즉 개별적인 목표들에 대한 정책수단 중심의 체계를 전략적 목표 지향으로 전환; EU 회원국 전체의 공통된 전략 목표
- 이를 위해서 **기본(핵심)목표(Principal or Core Objectives)**를 먼저 설정하고,

각 기본(핵심)목표에 대한 하위목표(Sub-Objectives)와 각 하위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목표수단(Measures Objectives) 및 세부정책수단(Measure Activities)등으로 정책추진방법을 체계화함

- 또한 농촌개발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자금을 “농촌개발정책기금(EAFRD)”으로 단일화하고, 농촌개발 프로그램을 위한 계획수립, 자금관리, 평가체계의 수정을 통해 정책시행을 단순명료화함

□ 정책목표, 우선과제, 정책수단의 연계

-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의 농촌개발(2007~13년)의 핵심목표는 다음과 같음

- 구조조정, 개발, 혁신에 기초한 농업 및 임업 부문의 경쟁력강화
- 국토정비지원에 기초한 환경과 농촌다움의 개선
- 농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활동의 다각화

- 이상의 3개 핵심목표는 전략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접근방법의 '주제 축(thematic axis)'과 일관성 있게 유지되도록 수립하고, 네 번째 축인 상향식(수평적 접근)개발 축은 LEADER 프로그램으로 별도 수립

- 농촌개발 전략가이드라인은 농촌개발정책의 목표와 정책수단을 수립함에 있어 고려해야할 “정책우선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농식품 공급체인에서 지식이전, 현대화, 혁신, 품질의 우선과 물적 및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의 우선을 통하여 강력하고 역동적인 유럽 농식품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종다양성, 농림경작의 자연가치, 농업의 전통경관, 수자원의 보존과 개발, 기후변화에 대한 우선영역에 기여
- 고용기회와 성장조건 창출의 우선에 기여
- 농촌지역의 거버넌스 개선과 내생적 개발 잠재력의 동원의 우선에 기여

(LEADER)

- EU 각 회원국은 위에서 제시한 3개 기본(핵심)목표와 우선과제의 토대위에서 “농촌개발계획”을 수립해야하며, 각 회원국의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하여 농촌개발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적합하고 효율적인 정책수단을 채택해야함
- 이러한 정책수립 및 추진체계의 논리에 따르면, 3개의 기본(핵심)목표의 테두리에서 채택된 정책수단들의 시행을 통해 농촌개발전략은 체계적으로 시행되어질 수 있음

1.2 공동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CMEF)

가. 모니터링과 평가의 개요

□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 유럽연합은 2000~06 기간 동안 시행되었던 농촌개발정책의 모니터링 및 평가방법과 시행결과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새로운 농촌개발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 Monitoring and Evaluation**”체계를 수립
- EC Regulation 1698/2005의 제7장 77조~87조에 걸쳐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의 목적, 방법, 활용 등에 대해 제시
- 모니터링 위원회의 구성, 임무 및 역할, 모니터링 절차 제시 (77~79조)
- “**공동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CMEF: Common Monitoring and evaluation framework)**” 수립 및 평가지표(indicators)의 내용과 설정 방법을 세부적으로 제시 (80~81조)
- 연간 평가보고서 작성방법, 내용구성, 활용방안 등을 제시 (82조~83조)
- 주요내용
 - 평가의 목적, 책임, 절차
 - 사전평가, 중간평가, 사후평가 등 지속평가체계(Ongoing evaluation) 운영

- 사전평가, 중간평가, 사후평가에서 다뤄야 하는 내용
- 각 평가가 완료되어야 하는 시점

□ 평가의 정의와 목적

○ 정의

- 정책수단의 시행 결과 및 성과 그리고 당초의 요구와 필요에 따른 정책개입에 대한 판단을 수행하는 과정

○ 평가의 관점

- 실효성(effectiveness) : 수립된 목표가 달성되었는지의 여부
- 효율성(efficiency) : 투입된 자원과 결과 간의 최적 관계
- 정책개입의 적절성 : 정책개입 목표가 필요, 문제, 이슈 등에 대해 적절한 것인가의 여부

○ 목적

- 의회와 국민들에 대한 책임(accountability) 및 투명성(transparency)의 제고
- 사업계획에서부터 실행 및 성과측정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의 경험, 정보, 및 관련 자료의 축적으로 정책프로그램 실천역량의 지속적인 개선

□ 모니터링 및 평가

○ 모니터링

- 농촌개발계획의 시행에 따른 1차적인 결과자료와 예산투입, 정책개입활동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실적을 조사하는 활동 (계량적 자료산출)
- 이를 토대로 정책수단이 목적에 적합하면서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피드백 역할
- 예산지출의 현황파악 및 정책수단 평가를 위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평가

- 정책사업의 실효성, 효율성, 적절성 등을 고려하면서 정책시행의 **결과(results)**와 **성과/영향(impacts)**를 관찰 및 평가
- 향후 정책방향의 조정 및 **투입(input)**요소 구성의 조정 방향 도출에 기여
-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된 자료와 정보는 평가작업에 중요한 역할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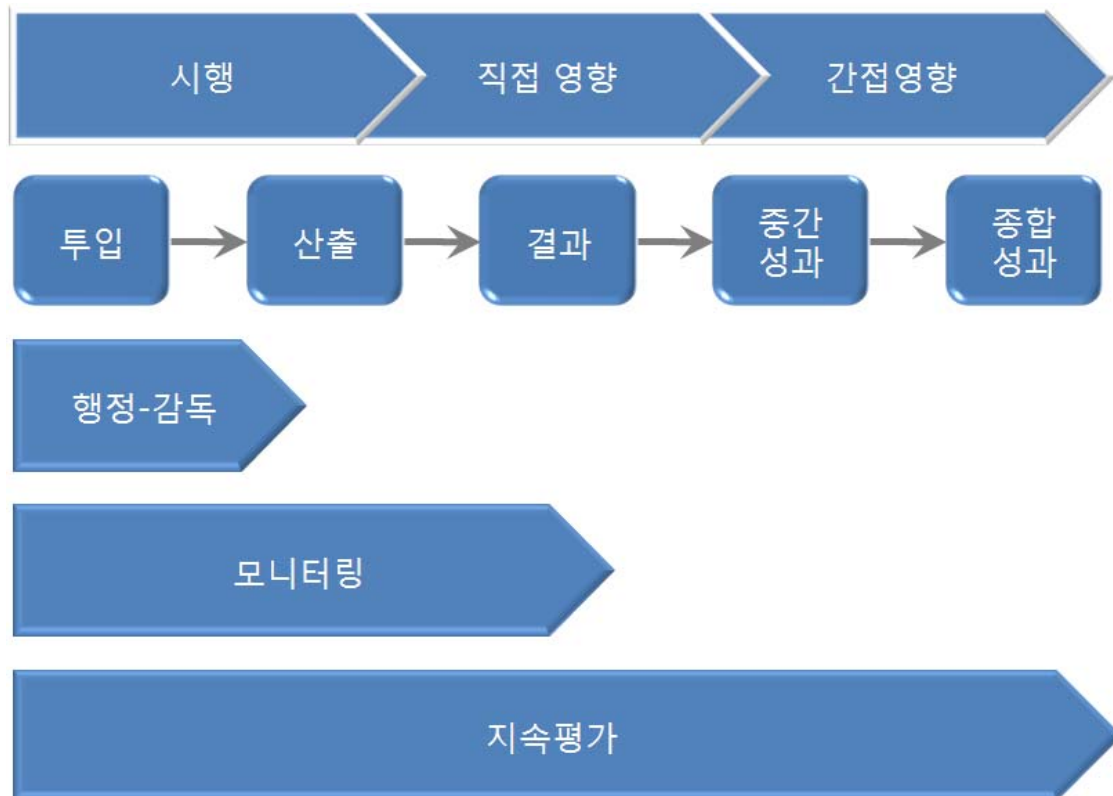
□ 모니터링과 평가의 적용

- EU 농촌개발정책의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
- EU 회원국 모두에게 공통된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공통된 평가방법과 지표)를 적용하여;
- 정책시행 결과 및 성과에 대한 회원국가들 간의 평가 및 비교에서 일관성과 단순·명료화함
- 농촌개발정책을 시행하는 각 회원국 정책당국으로 하여금 정책운영에 있어 유연성을 제고함

나. 정책개입과 평가의 논리체계

- 모니터링과 평가방법은 정책시행을 위한 예산의 **투입(input)**으로부터, 정책수단의 시행에 따른 **산출(output)** 및 **결과(Result)**를 거쳐, **성과/영향(impact)**에 이르는 인과관계를 수립하는 “**정책개입 논리(Intervention logic)**”에 기초하여 운영됨
- 이론적인 측면에서 사회 및 경제적 필요에 의해 수립되는 농촌개발정책의 목표는 글로벌목표, 세부목표, 실행목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목표들을 상위목표부터 하위목표까지 서열적으로(**목표서열, Hierarchy of Objectives**) 배치할 수 있음
- 그리고 평가를 위해서 “**목표서열**”에 대응하여 정책수단의 개입논리에 다양한 지표요소들을 반영한 “**지표서열(Hierarchy of indicators)**”을 구성할 수 있음

- 이러한 “정책개입 논리”의 인과관계를 토대로 ”지표서열“은 하위에서부터 상위방향으로 투입(input/재정적·행정적 자원), 산출(output/투입의 결과로 얻어지는 산출), 결과(result/세부목표의 달성에 기여하는 정책개입의 즉각적인 결과), 성과(impact/글로벌 목표의 도달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과, 효과, 영향) 등으로 설정할 수 있음



<그림 V-3> EU농촌개발정책의 모니터링과 평가체계

다. EU 농촌개발정책의 목표서열과 지표서열 체계

□ 정책목표 서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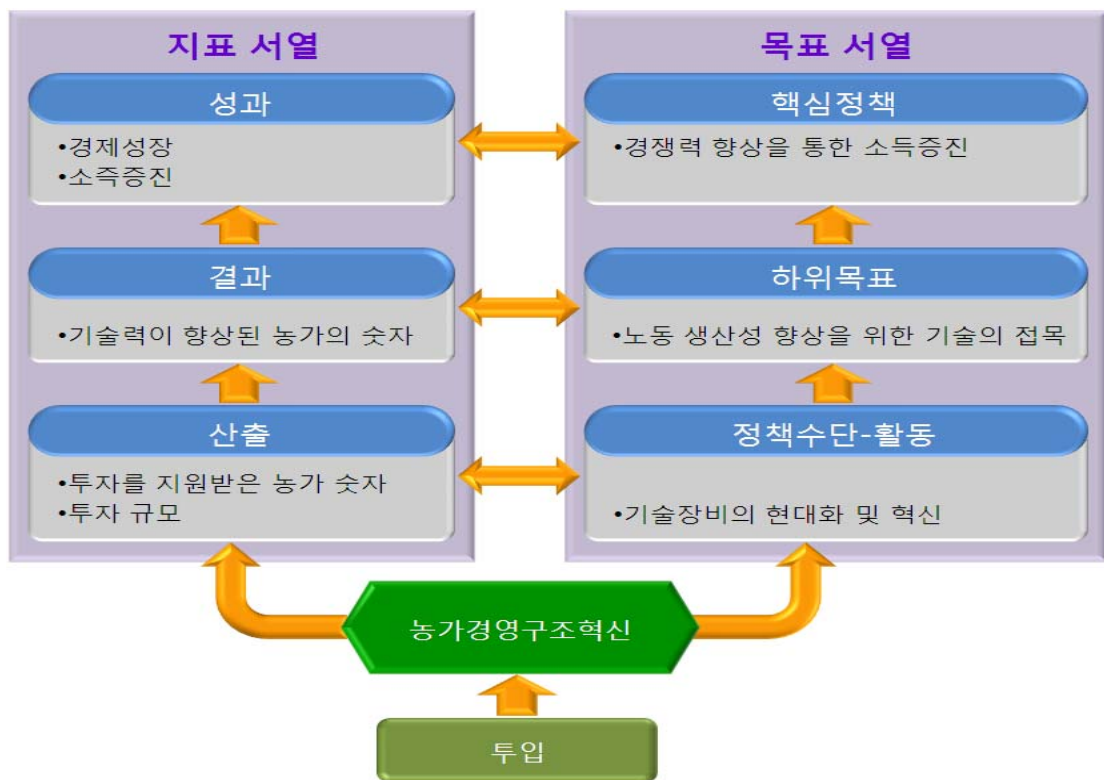
- 정책목표 및 정책수단을 상위에서 하위 방향으로 기본(핵심)목표(Principal Objectives), 각 핵심목표의 하위목표(Sub-Objectives), 정책목표수단(Measures Objectives), 정책수단활동(Measure Activity)으로 서열화

- 기본(핵심)정책목표(또는 전략적 목표) 및 정책수단들은 농촌개발정책 프로그램의 시행 출발시점에서 대상지역별로 개발목표 및 환경여건을 토대로 SWOT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통해서 수립됨
- 정책목표의 서열은 정책프로그램의 목표들을 분석하고 각 지역단위의 정책개입이 글로벌 정책목표 달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입증하는 중요한 수단임
- 서열화된 정책목표는 EU 이사회(회원국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내용들을 종합 (경쟁력, 환경, 농촌경제)하여 지침에 명기된 사항이며 각 세부정책들도 이를 근거로 수립
- 농촌개발정책 (사례 예시)
 - 기본목표 (**Principal Objectives**)1(Axis 1) : 구조조정, 개발, 혁신에 기초한 농업 및 임업 경쟁력 강화
 - 하위목표 (**Sub-Objectives**)
 - 1.1. 지식 및 인적자원 역량강화
 - 1.2. 물적잠재력 개발 및 혁신역량강화
 - 1.3. 농업생산활동과 생산품의 품질향상
 - 1.4. 신규가입회원국에 대한 지식역량이전
 - 정책목표수단 (**Measures Objectives ; 1.1.에 대한 사례**)
 - 1.1.1. 농림부문의 변화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IT기술을 포함한 기술, 경제 교육 및 지식의 적합한 수준 보장
 - 정책수단활동(**Measure Activity**) : 농식품임업부분의 종사자들에 대한 직업훈련, 정보화활동, 지식 및 정보보급 등
- ※ 정책수단은 코드화하여 관리 (예: 111 농식품임업부분의 과학적 지식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 및 정보화사업)

○ 정책목표 및 정책수단을 서열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얻는 장점

- 정책개입과 정책수단들의 시행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수 있음
- 개별 정책수단들의 시행 결과와 글로벌 정책목표 간의 연계성을 체계화할 수 있음
- 기본목표, 하위목표, 정책수단에 대응하여 결과 및 성과 지표를 서열적으로 체계화하여 작성할 수 있게 되어 모니터링과 평가체계도 논리성을 갖출 수 있음



<그림 V-4> 정책목표와 평가지표의 서열화 체계

□ 지표의 서열화

○ 모니터링과 평가지표는 기초지표인 투입(input) 및 기초지표(baseline indicators) 외에 정책개입의 결과로 얻어진 지표들을 산출(output) < 결과(result) < 성과/

효과(Impact)로 서열화하여 정책목표 및 수단의 서열과 대응시킴

- 기본(핵심)목표(전략적 목표)는 성과/효과(Impact) : 평가대상
- 이러한 성과(Impacts)는 하위정책에 대응하는 결과(results) : 모니터링 대상
- 정책수단에 대응한 산출(outputs)의 총합 :모니터링 대상

○ EU의 농촌개발정책 “공동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CMEF)”는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동지표(common indicators)**들을 세부적으로 명시함(모니터링 및 평가가이드라인 부록에 명시)

- **투입지표** : 사업계획에 기초한 예산집행 또는 자원의 배분지표
- **산출지표** : 정책수단의 시행을 위해 투입된 자원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실현 결과 (예 : 교육에 참여한 농업인 수, 투자자금을 지원받은 농민 수 및 집행된 투자규모 등)
- **결과지표** : 정책개입을 통해서 얻어지는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결과로 수익자의 행동, 역량, 성과에 대한 변화된 지표정보가 제공됨 (물리적 지표 또는 화폐로 표시가능, 예 : 신규로 창출된 고용, 교육 훈련의 결과)
- **성과지표** : 정책개입을 통해 직접적으로 얻어진 영향 차원을 넘어서, 정책사업 프로그램 전체가 미치는 성과로 기본목표(또는 전략적 목표)와 대응됨 (예 : 농촌지역 고용증진, 농업부문 생산성 향상, 재생에너지 생산증가 등)

※ 기초지표 (baseline indicators)

- 기초지표는 정책사업의 출범시의 현황을 분석한 지표
- 정책목표와 관련된 지표 : SWOT 분석 자료 및 성과지표와 비교자료
- 여건 및 환경지표 : 정책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여건과 경향적인 지표들로 SWOT 분석자료 및 성과지표 평가에 대한 영향평가 자료를 활용

※ 추가보완지표 (Additional Indicators)

- 공동지표들이 회원국 또는 특정 지역의 우선과제와 특수한 정책수단의 실행에 따른 효과를 완전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 추가보완지표를 사용할 수 있음
- 회원국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CMEF의 지표사용의 일반 원칙을 준수해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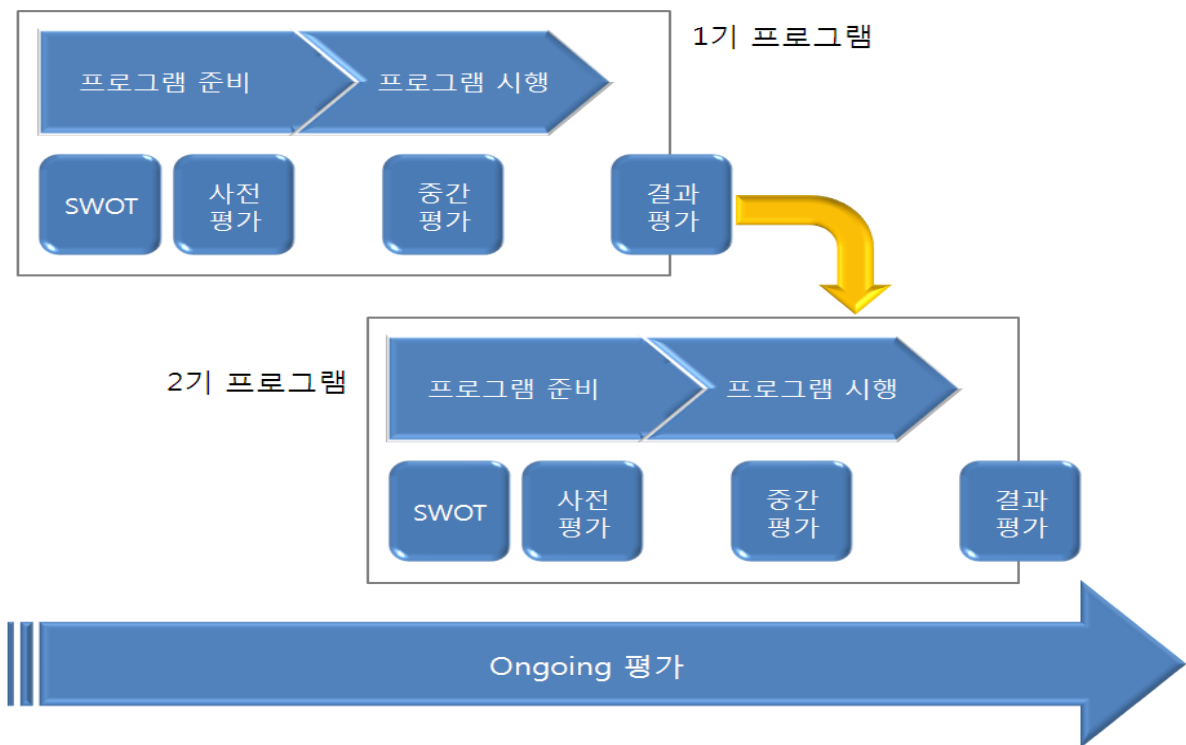
라. 모니터링과 평가기간

□ 모니터링

- 자금투입(input), 산출(output), 결과(Result)지표(indicators)들을 토대로 정책프로그램의 진전 상황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여 연차보고서 또는 전략보고서의 형태로 모니터링 위원회에 제출 (전략모니터링은 2010년에 실시하며 매 2년마다 제출)

□ 지속(Ongoing)평가

- 평가 시기는 정책사업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단계에서의 사전평가(Ex-ante), 중간평가(Mi-term), 사후평가(ex-post)로 구성하여 지속성을 가짐 (EU 농촌개발 프로그램은 7년 단위로 시행되므로 중간평가의 필요성)
- 1기 프로그램의 중간평가지기에 다음 기간인 2기의 정책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사전평가를 실시하며, 따라서 1기의 모니터링 및 중간평가 결과는 2기 정책 프로그램의 사전평가에 피드백 요소를 가지게 됨
- 사전평가는 정책프로그램의 목표, 기본(핵심)전략, 기초지표 등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통해 향후 중간평가와 사후평가의 기초를 마련하는 작업



<그림 V-5> 모니터링과 평가기간

마. 보고서의 작성

보고서 형태의 제출

- 모니터링과 평가는 반드시 보고 형태로 작성되어 위원회에 제출되어야함
- 관련 데이터 및 지표들은 RDIS(Rural Development Information System)을 활용하여 작성

정량적 자료의 사용

- 모니터링과 평가는 반드시 정량적 지표들을 활용하여 적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량적 데이터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정성적 평가를 실시함
- 정량적 지표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 분석, 과거 경험 또는 다른 벤치마킹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서 실시
- 평가자는 정책사업 출발당시의 기초지표, 정책목표, 환경지표, 정책수단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함

- 농촌개발정책의 종합적인 성과(impact)에 대한 평가는 bottom-up 방식
- 평가자는 자료를 통해 얻어진 산출 (output) 결과(result) 등의 지표를 통해 직접 또는 간접 수혜효과를 추정(estimation) 평가 (단 여러 정책수단들의 시행으로 인한 중복평가에 유의)
- 평가자는 정책사업의 시행결과가 사업출발당시에 비해 어느 정도 의미있는 성과를 얻었는지, 어떤 분야에서 얻었는지 가시적 및 통계적 자료분석을 실시하되 종합적으로 판단함 (단 정량적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정성적 평가도 가능함)

1.3 평가시스템 구축

가. 평가시스템 구축

- 행정작업
 - 평가기관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독립적이어야 하며, 평가능력을 충분히 갖추어야 함 (공공기관-public organisation 도 가능함)
 - 평가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팀, 관련전문가, 현장전문가 들의 연구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평가작업 (4단계)
 - 구조화 (Structuring)
 - 평가 대상이 되는 정책수단들과 정책개입의 논리 파악 및 이해
 - 평가를 위한 질문(evaluation questions)의 방향설정: 판단을 위한 중요한 자료
 - 평가를 위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 방법론의 수립
 - 지표의 설정 : 평가를 위한 필요한 지표들의 설정
 - 관찰 (Observing)
 - 유용한 그리고 동원할 수 있는 정보의 수집 및 분류

- 정량적 및 정성적 분석에 필요한 수단개발 : 인터뷰가이드, 질문, 데이터베이스, 지도, 가이드라인
- 데이터와 정량적 정보의 수집
- 프로그램 시행과정, 프로그램의 구성, 우선정책, 예산 등에 대한 묘사

○ 분석 (Analysing)

- 정책 수단들의 시행 결과, 영향, 성과 등에 대한 분석
- 복잡한 정책수단, 지표, 수익자 등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분석

○ 판단 (Judging)

- 분석자료를 토대로 모든 평가질문에 체계적인 대답 도출
- 정책사업의 실효성 및 효율성 평가
- 국가전략과의 비교 판단 등 종합적인 판단
- 결론 및 권고사항 도출, 개선을 위한 조정사항 제시

1.4 2007-13 농촌개발정책 전략가이드라인

□ 개요

- 리스본과 예테보리(Glöteborg) EU이사회 지침(conclusion)에 따라 주요정책의 우선과제(major policy priorities)들에 대한 회원국 간의 조화를 목적으로, 농촌개발규정(Rural Development regulation)에서 정해진 대상의 틀 안에서 EU 정책의 우선과제들을 제시하고 있음
- 또한 각각의 정책 우선과제에 대해 핵심목표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회원국들은 이렇게 작성된 **전략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농촌개발정책프로그램 준비를 위한 지침(reference framework)을 구성하고 회원국별 농촌개발전략을 마련

가. 농업 및 임업 부문의 경쟁력 강화

□ 가이드라인

유럽의 농업, 임업, 식품산업 부문은 다양한 유럽 소비자와 세계시장의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고품질,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첫 번째 축(Axis 1)에 투입되는 자원들은 ‘농산물 유통체인에서의 지식의 이전과 혁신’이라는 정책 우선과제와 ‘물적·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라는 정책 우선과제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유럽 농식품 부문을 강력하고 역동적으로 발전 시키는데 기여해야 함

이러한 정책 우선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회원국들은 다음과 같은 핵심정책목표를 중점적으로 지원해야함

○ 혁신(innovation) 촉진과 연구개발(R&D) 장려

유럽의 농업, 농식품 산업, 임업부문에서 혁신의 중요성이 커지고 대기업들이 유럽의 농식품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 식품가공업자와 농

업생산자도 새로운 가공사업을 도입하여 부가가치 향상을 추진할 수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협력관계를 통해 R&D와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함

○ 농산물 유통망의 개선

유럽 농식품산업은 가장 경쟁력 있고 혁신적인 산업이지만 세계시장에서 경쟁에 직면함. 신 상품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품질관리 계획을 통해 농촌지역에 부가가치를 더욱 확대하면서 국제시장에서 유럽 상품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높음. 유럽연합 표준지침(standards)에 적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서비스 분야를 적극 지원하고, 시장지향적인 농업부문의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성장과 고용의 주요 원천으로서의 유럽 농식품 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더욱 높여나감

○ 정보통신기술(ICT)의 보급과 확산 장려

농식품 분야 전반에 걸쳐 정보통신기술의 보급이 저조한 실정이며, 다국적 대기업들과 대규모 유통사업자를 제외하면, 전자상거래의 도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농촌개발자금을 통해 전자상거래 분야(e-business, e-skill, e-learning)에서 EU 집행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i2010*과 같은 미래혁신정책들을 보완해야 함

○ 역동적인 기업가정신 육성

최근의 개혁으로 유럽농업에 있어 시장지향적 환경이 조성되고, 농업경영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적 잠재력을 현실화하기 위한 전략(strategic)과 조직(organizational)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농업 및 임업분야 생산품의 새로운 판로 개발

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해 부가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 농촌개발정책은 비식품 생산(non-food production)분야의 투자 활성화와 교육 및 훈련(training)을 지원하여 혁신적인 판로를 창출, 재생 가능한 에너지 및 생물연료(biofuels)의 개발, 가공능력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공동농업정책의 제1축(pillar 1)에서 수행되는 정책수단들을 보완함

○ 농업과 임업의 친환경적 성과개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엄격한 환경기준을 준수하면서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친환경적 성과 증진을 위한 투자는 전체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어 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농업부문의 구조조정

농촌개발정책은 EU 신규회원국의 농업구조 조정의 핵심수단이며, 성공적인 농업구조조정은 농업부문의 경쟁력 강화, 친환경적 지속가능성 확보, 고용창출과 경제성장 촉진에 있어 필수적인 수단임. 회원국들은 구조조정을 위해 농업부문의 변화를 촉진하고, 특히 이직기술(transferables skills)과 관련하여 농업생산자의 교육훈련을 위한 혁신적인 방법을 개발하는 한편, 농업부문의 세대교체를 촉진하기 위해 제1축(Axis1)의 정책수단들을 청년후계농의 필요에 적합하게 구성해야함

나. 환경과 농촌다움의 개선

□ 가이드라인

EU의 자연자원과 농촌지역의 경관을 보호 및 관리를 위해, Axis 2에서는 다음 3가지 EU 정책 우선과제(three EU level priority areas)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원을 투입해야 함 : 종다양성(biodiversity), 친환경적 농업·임업 시스템 보호, 수질, 기후변화.

Axis2의 정책수단들은 이러한 친환경적 목표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농업·임업의 Natura 2000 네트워크 적용을 통해 2010년 까지 종다양성 감소의 반전을 규정한 예테보리 서약(commitment), 수질관리목표(Water Framework Directive objectives), 기후변화 완화에 관한 교토의정서(Koyto Protocol)의 준수에 기여해야함

이러한 정책 우선사항들을 충족하기 위해 회원국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함.

○ 친환경적 서비스와 동물 친화적 농업활동 장려

유럽시민들은 농업생산자들이 환경 관련 표준지침의 준수를 기대하는 동시에 수자원, 토양과 같은 특별한 자원들에 대해 시장이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의 추가적인 공급에 참여하는 농업생산자들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함

○ 농업경관(farmed landscape)의 보전

유럽에서 가치 있는 농촌환경의 대부분은 농업생산과 관련된 것으로 적절한 농업시스템은 습지, 초지, 목초지 등 다양한 경관과 동물서식지 보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많은 지역에서 이러한 농업경관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 생활과 경제활동을 위한 공간으로서 농촌지역은 중요함

○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농업과 임업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 바이오에너지, 가공원료(material source) 개발의 선도부문으로, 이러한 에너지자원 개발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와 산림과 토양 속 유기물질의 탄소고정(carbon sink) 효과를 고려해야 함

○ 유기농업의 기여 강화

유기농업은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방법으로 유기농업이 환경과 동물후생(animal welfare)에 대한 기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환경과 경제가 상호 이익이 되는 혁신(win-win initiative)의 장려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확대는 지역과 농산품의 정체성 확립과 농촌관광과 농촌어메니티 공급을 통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촉진할 수 있으며, 특히, 관광, 수공업, 비식품 부문을 다각적으로 연계할 경우 그 효과는 더욱 커짐

○ 지역의 균형발전 촉진

농촌개발 프로그램은 농촌지역의 매력(attractiveness)을 증진시키고 지식기반 경제(knowledge-based economy)차원의 경쟁력을 통해 도시와 농촌 간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토지관리 정책수단들을 농촌

개발정책 프로그램들과 병행하여 경제활동의 공간적 분산과 지역통합에 기여할 수 있음

다. 농촌지역 삶의 질 개선과 다각화(diversification) 촉진

□ 가이드라인

Axis3에서 농촌경제 다각화와 농촌지역 삶의 질 개선에 투입되는 자원은 고용 기회 창출을 위한 정책우선과제에 기여해함. Axis3의 정책수단들은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 기술 습득(skill acquisition)촉진, 지역전략개발을 위한 조직육성과 관련된 것이어야 하며, 농촌지역이 미래세대들에게도 매력적인 공간으로 남아있도록 지원해야하고, 특히 교육훈련, 정보, 기업가 정신 육성에서는 여성과 젊은이들의 요구를 고려해야 함

이러한 우선사항을 달성하기 위해 회원국들은 다음과 같은 핵심활동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농촌경제에서 경제활동 활성화 및 고용증진

농촌지역에서 경제활동의 다각화는 경제성장, 고용증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농촌관광, 수공업(crafts), 농촌어메니티 공급은 성장잠재력이 높아 농촌경제에서 농업활동 다각화와 소규모 경영체의 성장 기회를 제공함

○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장려

농촌 보육시설 개발과 같은 지역혁신은 고용기회를 늘리고 여성의 노동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함. 농촌생활과 관련한 소규모 기업창립을 장려하는 혁신사업과 연계하여 보육시설을 개발하는 것도 정책범주에 포함할 수 있음.

○ 소규모 경영체(micro-business) 육성

소규모 경영체와 수공업은 교육훈련, 기업가정신 육성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기업가정신을 육성하고 경제구조를 발전시키는데 기여

할 수 있음

-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농촌 전통기술 교육훈련
젊은이들에게 농촌전통기술을 교육함으로써 농촌관광, 레크레이션, 친환경 서비스, 고품질 상품에 대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음

- 정보통신기술(ICT) 습득과 확산 장려
농촌지역에서 정보통신기술의 확산은 지역개발, 지역서비스, 디지털 참여 촉진 및 경제활동의 다각화를 위해서 필수적인 것임. IT설비, 네트워킹, 커뮤니티, 정보통신기술훈련 등을 통해 마을 정보통신기술 혁신을 촉진하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으며, 지역농가와 농촌기업의 정보기술 습득을 촉진하고 eBusiness 및 eCommerce 도입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 구조기금(Structurak Funds)의 지역정책 프로그램을 통해 인터넷과 광대역 통신망구축이 선행되어야함

-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의 혁신적인 사용방법 개발과 공급 확대
이를 통해 농산품, 임산품의 새로운 판로 창출, 지역 서비스 공급, 농촌경제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음

- 농촌관광 육성
농촌관광은 중요한 성장분야로, 예약, 판촉, 마케팅, 레크레이션 활동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활용의 촉진은 방문객 수와 체류기간 증가에 기여하고, 소규모 시설과의 연계와 농업관광(agri-tourism)을 장려할 경우 그 효과는 커짐

- 지역 기반시설의 강화 (신규회원국)
미래에는 통신, 운송, 에너지, 수자원 기반시설 개발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EU의 구조기금(Structural Fund)에서 “범유럽 고속통신망구축” 및 기업과 연구단지간의 연계강화를 위한 대규모 정책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농촌개발 정책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한 소규모 지역기반시설들은 이러한 대규모 기반시설 투자를 농업 및 식품산업분야의 잠재력 개발과 경제다각화를 위한 지역전략

에 연계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이를 통해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의 양 측면에서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를 발생시킬 수 있음

라. 고용 증진과 경제다각화를 위한 지역 역량 강화

Leaders의 지원을 통해 ‘지역의 요구와 강점에 기반 한 지역개발전략’의 차원에서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목표들(경쟁력, 친환경, 삶의 질/경제다각화)을 통합할 수 있음. 농림업생산자와 지역활동주체들을 통합한 접근방법은 지역의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가치 증진, 친환경적 인식 고양, 특산품 개발, 농촌관광 활성화, 재생가능한 자원 및 에너지 사용촉진에 기여할 수 있음

□ 가이드라인

Axis4(Leader)에 투입되는 자원들은 Axis 1, Axis 2의 정책 우선과제에 기여할 수 있으며, 특히 Axis 3에서 그 효과가 크다. 또한 거버넌스(governance) 개선과 농촌지역의 내생적 발전 잠재력의 실현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이러한 정책우선사항을 달성하기 위해 회원국은 다음과 같은 활동지원에 중점을 둬

○ 지역 파트너십 역량 강화

지역 파트너십 강화, 지역 활성화, 프로모션 기술습득은 지역의 잠재력 구현에 기여함

○ 민관(private-public) 파트너십 강화

혁신적인 지역개발 접근방법의 촉진과 민관의 협력유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 협력과 혁신의 촉진

지역혁신정책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접근방법 창출, 혁신촉진과 기업가정신 육성, 지역서비스의 포괄성 개선 및 공급촉진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함. 온

라인 커뮤니티 육성은 지식보급, 모범사례 및 경험의 공유, 농촌상품과 서비스혁신에 기여함

○ 지역 거버넌스 개선

농업, 임업 및 기타 지역산업들을 연계하는 혁신적인 접근방법을 육성하여 농촌지역 경제기반 다각화와 사회·경제적 조직 강화에 기여함

마. 정책 우선사항과 프로그램 개발

□ 가이드라인

각 회원국은 Axis 내부의 시너지 효과는 물론 Axis들 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들 간의 잠재할 수 있는 모순도 피할 수 있도록 회원국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회원국들은 유기농업 육성계획(Action Plan for Organic Farming), 재생가능한 에너지 사용에 대한 EU 집행위원회 결정 (the latest Commission Communication on Renewable Energy), 기후변화에 대한 집행위원회 결정 (the Commission's recent Communication on Climate Change), EU 집행위원회 임업 전략 보고서 (the Commission report on the EU Forestry Strategy), 미래 환경문제 대응전략 (the forthcoming thematic environmental strategies)등과 같은 EU 수준의 다양한 전략들도 국가전략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함

○ 개별 농촌개발 정책프로그램 대상지역의 특수한 상황 및 강점과 약점에 따라 정책개입수단이 다양할 수 있으며, 개개의 EU 정책 우선과제들과 이들 정책 우선과제들이 리스본 및 예테보리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각 회원국의 상황에 맞게 정책을 조정하여 국가전략계획과 농촌개발 프로그램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농식품 분야 혹은 농림업의 환경, 기후, 지리적 상황과 관련된 특수한 문제해결을 위해 별도의 국가적·지역적 정책우선과제가 있으며, 농촌지역은 도시근교의 압력, 실업, 원격성, 낮은 인구 밀도와 같은 특별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 거버넌스와 정책 집행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정책구상, 관리, 정책 집행 등 모든 단계에서 경험과 전문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유럽 농촌개발정책 네트워크(European network for rural development)구축에 기술적 지원

바. 유럽연합 정책들의 상호 보완성(complementarity)

□ 가이드라인

구조정책, 고용정책, 농촌개발정책간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회원국들은 주어진 지역(territory)과 활동범위에 대해 ERDF, Cohesion Fund, ESF, EFF, EAFRD 등의 기금이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사업들 간의 상호보완성(complementarity)과 일관성(coherence)을 확보해야 하고, 국가 전략지침 틀(reference framework)은 국가전략 계획단계에서 다양한 기금에서 지원되는 정책사업들 간의 경계선과 조정 메커니즘(coordination mechanism)을 규정해야 함

- 기반시설 투자와 관련한 정책가이드원칙으로 “정책개입의 규모”를 활용할 수 있음. 즉, 국가수준이나 지역(region)/하부지역(sub-region) 수준에서는 운송설비와 다른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위해 통합정책(Cohesion policy)수단을 고려할 수 있는 반면에 지방수준에서는 소지역(local)과 광역지역(region)간의 연계를 고려하여 Axis3의 기초 서비스 정책수단을 활용할 수 있음
- 인적자본 개발과 관련하여, 농촌개발정책은 통합적 상향식 접근방법의 일부로서 농촌지역 주민들의 교육 훈련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영역의 정책수단들은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한 통합가이드라인(the Integrated Guidelines for Growth and Jobs)’이 제시하는 ‘유럽고용전략(European Employment Strategy)’의 목적에 적합하게 수행되어야 함
- 또한 ‘리스본 전략 추진틀(the framework of the Lisbon process)’ 안의 국가개혁 프로그램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 ‘2010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Education

and Training 2010 work programs)'은 교육과 훈련 측면에서 리스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 프로그램은 평생교육(lifelong learning)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농업·임업·식품 부문을 포함한 모든 영역의 교육과 훈련에 적용되고 있음

<첨부자료 1> 농촌개발정책의 핵심정책(정책축), 하위정책, 정책수단, 정책활동

※ 정책수단은 EC Regulation No 1698/2005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으로 번호(알파벳)는 해당조항을 표시함

핵심목표	하위목표	정책수단	정책활동
구조조정, 개발, 혁신에 기초한 농업 및 임업 경쟁력 강화 (Axis 1)	지식개발과 인적자원의 잠재력 향상 (20) (a)	농림산업의 변화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IT의 진문성을 포함한 한 기술 및 경제 교육과 지식의 적합한 수준 보장 (15)	20(a)(i) 농업, 식품, 임업 종사자들을 위한 과학 지식 보급 및 실천력혁신을 포함하는 교육과 정보활동
		청년농업인 정착지원 및 이들 농지의 구조조정 (16)	20(a)(ii) 청년농업인 육성
		이전된 농지를 통하여 의미 있는 구조조정의 완수 (17)	20(a)(iii) 농업인 및 농업고용인력의 조기 은퇴
		농지의 지속가능한 관리역량의 향상 (18)	20(a)(iv) 농업 및 임업 경영체의 컨설팅 이용
		인적 잠재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경영관리 향상과 편의 및 전체적인 성과향상을 위하여 농업경영체에 대한 지원 (19)	20(a)(v) 농업경영, 농업경영컨설팅, 임업경영컨설팅의 확대
	물적 잠재력의 구조조정 및 개발 - 혁신의 촉진 (20) (b)	신기술 및 혁신도입을 포함한 생산요소들의 보다 낮은 활용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경제적 성과 향상 (21)	20(b)(i) 농장 현대화
		지속가능한 관리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개인소유 임야(산림)의 경제적 가치의 확대, 생산의 다각화 촉진, 시장기회의 확대 (22)	20(b)(ii) 임야(산림)의 경제적 가치증진
		향상된 효율성, 신재생에너지, 신기술, 신시장기회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원료 농산 및 임산물의 마케팅과 가공사업 촉진 (23)	20 (b) (iii) 농산 및 임산물의 부가가치 증진
		신상품, 가공, 기술 발전에 있어서 광범위한 혁신을 통하여	20 (b) (iv) 농식품 부문에서 신상품, 가공, 기술

핵심목표	하위목표	정책수단	정책활동
		<p>시장기회의 우위를 장악 (24)</p> <p>농업 및 임업부분의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인프라의 확충 (25)</p> <p>농업생산의 잠재성의 복원 및 경쟁력에 기여하는 적합한 예방수단의 도입 (25)</p>	<p>의 발전을 위한 협력</p> <p>20 (b) (v) 농업 및 임업의 발전과 관련한 인프라의 향상과 개발</p> <p>20 (b) (vi) 자연재해에 의해 손상된 농업생산의 잠재성 복구 및 적합한 예방활동</p>
	<p>농업생산과 생산품의 품질 개선 (20) (c)</p>	<p>유립연합 공동체 범규를 토대로 요구되고 있는 표준지침에 대한 농업인들의 신속한 시행 촉진 (27)</p> <p>식품 및 식품가공에 대해 소비자에게 신뢰를 제공하는 체계에 농가들이 참여하도록 독려 (28)</p>	<p>20 (i) 유립연합 공동체 범규에 기초한 요구사항에 대해 농가가 적용 할 수 있도록 지원(c)</p> <p>20 (c) (ii) 식품품질관리 체계에 참여한 농가 지원</p>
	<p>이행정책수단 (신규가입회원 국) (20) (d)</p>	<p>농촌개발프로그램에서 지원된 품질관리체계의 존재에 대한 소비자 인식의 제고 (29)</p> <p>NMS 비자립 농가가 시장에 진입하도록 독려(30) 20 (d) (i) 비자립 농가를 NMS차원에서 생산자그룹 창설을 촉진하도록 지원(30)</p>	<p>20 (c) (iii) 식품품질체계에 기초한 식품의 정보 및 홍보를 위한 생산자그룹의 지원</p> <p>20 (d) (i) 생산자그룹의 육성</p>

핵심목표	하위목표	정책수단	정책활동
<p>국가 토지관리 지원을 통한 환경 및 농촌지역의 향상 (AXIS 2)</p>	<p>자연환경 및 경관보존, 종다양성 보호를 통한 자연자원의 개선에 적합한 토지이용을 하도록 농업경영체 및 산업경영체를 유도하여 농지의 지속가능한 관리제도 Natura 2000 권역 관리, 수자원 및 토양 보호, 온실가스 및 암모니아의 방출 억제, 농약의 합리적 사용을 포함한 기후변화에 대한 저항 (31)</p>	<p>조건불리 산간지역에 농지이용의 지속화 및 이를 통한 농촌 지역의 유지 및 지속가능한 경작시스템의 유지에 기여 (33)</p> <p>다른 조건불리지역 농지이용의 지속화 및 이를 통한 농촌 지역의 유지 및 지속가능한 경작시스템의 유지에 기여 (33)</p> <p>자연서식지, 야생동식물의 보전관련 규정 및 강유역지역의 수자원 관리정책과 관련한 규정의 시행으로부터 야기된 특별한 불이익에 대해 농가지원 (34)</p> <p>환경보호 및 개선, 경관, 자연자원, 토양, 종다양성을 표준지침의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서 시행할 수 있는 농업생산방식의 도입 및 지속 가능한 농가육성을 통해 환경서비스에 대해 증가하는 요구에 대응 (35)</p> <p>규정된 표준 수준을 넘어선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를 채택하도록 농업인의 독려(36)</p> <p>농업-환경 수단 또는 다른 환경적 목표 아래 주어진 과업수행의 지원 및 Natura 2000과 기타 고자연가치 지역에서의 공공 어페니터 가치의 실현 지원 (37)</p> <p>산림자원을 환경보호, 자연재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기여하는 농지로의 확대 촉진 (38)</p> <p>고품질 목재생산 및 기타 산림자원 생산지원을 통해 조방농업 및 산림경작의 결합 활성화 (39)</p>	<p>36 (a) (i) 산간지역 농업인에 대한 자연조건 불리 지원지불(payments)</p> <p>36 (a) (ii) 산간지역 및 조건불리지역 농민에 대한 지원지불(payments)</p> <p>36 (a) (iii) Natura 2000 지원지불(payments) 및 Directive 2000/60/EC관련 지원지불</p> <p>36 (a) (iv) 친환경농업 지원지불(payments)</p> <p>36 (a) (v) 동물복지 지원지불(payments)</p> <p>36 (a) (vi) 비생산적 투자에 대한 지원</p> <p>- 36 (b) (i) 농지의 우선 산림화</p> <p>36 (b) (ii) 농지의 농산림화(agroforestry) 시스템의 우선 촉진</p>

핵심목표	하위목표	정책수단	정책활동
		<p>산림자원을 환경보호, 자연재해예방, 기후변화대응에 기여하는 비농업토지로 확대 (38)</p> <p>자연 서식지, 야생동물 및 식물의 보전에 관한 법령의 시행 결과 특별한 불이익을 받는 농가지원(40)</p> <p>종다양성 실현을 위한 임야경작자들의 독려를 통해 환경서비스에 대한 증가되는 요구에 대응, 고부가가치 산림경작 시스템의 유지 및 토양침식의 관점에서 산림의 보호적 가치 강화, 수자원 및 수자원의 질 유지, 표준수행지침을 넘어서는 자연보호노력 (41)</p> <p>자연재해 및 화재에 의해 손상된 산림의 잠재성 복원 및 예방 활동 도입 (42)</p>	<p>36 (b) (iii) 비농업토지의 우선 산림화</p> <p>36 (b) (iv) Natura 2000의 지원지불 (payments)</p> <p>36 (b) (v) 친환경 산림지원지불</p> <p>36 (b) (vi) 산림자원의 잠재성 복원 및 예방 활동 도입</p>
		<p>친환경 임업수단 및 기타 환경목표를 수행하는 과업지원 및 관련 권역의 공공어페니터 가치의 실현 (43)</p>	<p>36 (b) (vii) 비생산적 투자에 대한 지원</p>
<p>LFA 2000-2006 (EC N° 1257/1999)</p>	<p>농지의 지속적 이용, 농촌지역유지, 지속가능한 경작시스템의 활성화에 기여(24)</p>	<p>지속적인 농지의 이용 및 이를 통한 농촌공동체의 유지 및 담보, 환경보호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농촌지역의 유지 및 지속가능한 경작 시스템의 유지 및 활성화(13a)</p>	<p>자연적 조건불리지역 보전 (13a)</p>

핵심목표	하위목표	정책수단	정책활동
<p>농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 및 경제활동의 다각화 촉진</p> <p>(AXIS3)</p>	<p>농촌경제의 다각화(46)</p>	<p>비농업활동으로의 농가활동의 다각화, 비농업활동의 촉진, 고용 활성화 (46)</p>	<p>52 (a) (i) 비농업활동을 통한 다각화, 52 (a) (ii) 기업가정신의 활성화 및 경제조직 발전의 관점에서 소기업의 창업과 발전을 위한 지원</p> <p>52 (a) (iii) 관광산업의 촉진</p>
	<p>농촌개발프로그램에서 리더방식의 접근의 적용 (49)</p>	<p>농촌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침체 및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촌지역을 보다 유인적인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실천 및 정보통신의 접근을 포함한 기초 서비스의 향상 (46)</p>	<p>52 (b) (i) 경제와 농촌인구를 위한 기초서비스, 52 (b) (ii) 마을 리모델링과 개발, 52 (b) (iii) 농촌유산의 유지 및 업그레이드</p>
	<p>지역개발의 일관성과 시너지 효과의 강화 (48)</p>	<p>지역경제의 다각화 및 지역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요구되는 인적자원의 잠재역할의 확충 (46)</p>	<p>52 (c) axis 3에 의해 권장되는 영역에서의 경제주체들의 역할수행을 위한 교육훈련과 정보</p>
		<p>지역전략 실행을 위한 역량 제고 (47)</p>	<p>52 (d) 지역개발전략의 준비 및 실천의 관점에서 기술습득과 활성화 촉진</p>

※ AXIS 4 Leader는 생략 (제 63조)

<첨부자료 2> 평가질문 (예시)

AXIS II: 토지관리를 통한 환경과 농촌지역의 향상

정책활동	산간지역 농민에 대한 자연장애 지불지원 (Article 36 (a) (i) of Reg. (EC) N° 1698/2005)
정책 Code	211
평가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간지역에서 농지의 활용이 지속되도록 하는데 얼마나 기여하는가? - 산간지역에서 농촌공동체를 유지하는데 얼마나 기여하는가? - 지속가능한 농업경작 시스템 활성화에 기여하는 체계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 농촌지역의 유지와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체계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첨부자료 3> 공동 모니터링 및 평가지표(Common Indicators)
(산출, 결과, 성과영향, 기초지표)

□ 산출지표(OUTPUT INDICATORS)

AXIS 1. 농업과 임업부문의 경쟁력		
Code	정책수단	산출지표(Output Indicators)*
111	직업훈련 및 정보활동	<input type="checkbox"/> 교육훈련 참여자 수 <input type="checkbox"/> 교육훈련을 받은 일 수
112	청년농업인 육성	<input type="checkbox"/> 지원된 청년농가 수 <input type="checkbox"/> 총 투자규모
113	고령농업인 조기은퇴	<input type="checkbox"/> 조기 은퇴농가 수 <input type="checkbox"/> 조기은퇴 농업근로자 수 <input type="checkbox"/> 관련 경작면적
114	컨설팅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지원된 농가 수 <input type="checkbox"/> 지원된 산림농가 수
115	농장경영, 지원, 컨설팅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농장경영, 지원, 컨설팅 서비스가 새롭게 적용된 농가 수
121	농가경영 현대화	<input type="checkbox"/> 투자지원을 받은 농가 수 <input type="checkbox"/> 총 투자규모
122	산림경제의 향상	<input type="checkbox"/> 투자지원을 받은 산림농가 수 <input type="checkbox"/> 총 투자규모
123	농산품 및 임산품의 부가가치 향상	<input type="checkbox"/> 지원받은 기업 수 <input type="checkbox"/> 총 투자규모
124	농식품 부문에서 신상품, 가공, 기술의 발전을 위한 협력	<input type="checkbox"/> 지원받은 주도기업 수
125	농업 및 임업의 발전과 관련한 인프라의 향상과 개발	<input type="checkbox"/> 지원받은 사업 수 <input type="checkbox"/> 총 투자규모
126	자연재해에 의해 손상된 농업생산의 잠재성 복구 및 적합한 예방활동	<input type="checkbox"/> 피해를 입은 농지 중 지원된 지구 <input type="checkbox"/> 총 투자규모
131	유럽연합 공동체 법규에 기초한 표준규정의 적용	<input type="checkbox"/> 수익자 수
132	식품품질 체계에 농가의 참여	<input type="checkbox"/> 지원받은 품질관리체계에 참여 농가 수
133	정보와 홍보활동	<input type="checkbox"/> 지원된 활동 수
141	자급능력의 취약한 농가	<input type="checkbox"/> 지원을 받은 자급능력이 취약한 농가 수
142	생산자그룹	<input type="checkbox"/> 지원받은 생산자그룹 수 <input type="checkbox"/> 지원받은 생산자그룹 매출액

* 각 정책수단에 대해, 수혜를 받은 수는 반드시 증명될 수 있어야함

AXIS 3. 농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활동의 다각화 촉진		
Code	정책수단	결과지표(Output Indicators)
311	비농업활동 다각화	<input type="checkbox"/> 수익자의 혜택Number of beneficiaries <input type="checkbox"/> 투자규모
312	창업 및 개발	<input type="checkbox"/> 지원받은/참여한 소기업의 수
313	관광활동 촉진	<input type="checkbox"/> 지원받은 신규 관광활동 수 <input type="checkbox"/> 투자규모
321	경제 및 농촌인구를 위한 기초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지원받은 활동 수 <input type="checkbox"/> 투자규모
322	마을정비 및 개발	<input type="checkbox"/> 시행된 마을의 수 <input type="checkbox"/> 투자규모
323	농촌 유산의 보전 및 업그레이드	<input type="checkbox"/> 지원받은 농촌유산의 수 <input type="checkbox"/> 투자규모
331	교육훈련과 정보	<input type="checkbox"/> 지원받은 활동에 참여한 경제주체의 수 <input type="checkbox"/> 참여자가 받은 교육일 수
341	지역개발 전략을 위한 기술습득, 활성화 및 시행	<input type="checkbox"/> 얻어진 기술과 활성화 활동 수 <input type="checkbox"/> 활동에 참여자 수 <input type="checkbox"/> 지원된 관-민 파트너십 수
AXIS 4 LEADER 생략		

□ 결과지표 (RESULTS INDICATORS)

Axis/목표	지표
농업과 임업부문의 경쟁력 향상	(1) 농업 및 임업관련 교육훈련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참여자 수 (2) 지원받은 농가의 총부가가치 증가 (3) 신상품 및 신기술 도입농가의 수 (4) 품질인증 및 품질표준화 준수 농산품의 가치 (5) 시장에 진입한 농가 수
농업과 임업부문의 경쟁력 향상	(6) 다음에 기여한 성공적인 관리 지역 (a) 종 다양성 및 고자연가치 농업 및 임업 (b) 수자원 질 (c) 기후변화에 대응 (d) 토양 질 (e) 경작지의 한계화 및 포기의 제한
농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 및 경제활동의 다각화 촉진	(7) 지원된 사업의 비농업 부가가치 증가 (8) 신규창출 일자리 수 (9) 관광객 수의 증가 (10) 개선된 서비스로부터 편익을 얻은 농촌지역의 인구 (11) 농촌지역의 인터넷 보급 증가 (12) 교육훈련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참여자 수

□ 성과/영향지표(IMPACT INDICATORS)

지표	측정내역
1 경제성장	PPS에서 나타난 순부가가치의 증가
2 고용창출	정규직기준으로 환산한 순 일자리 창출
3 노동생산성	정규직기준으로 환산한 총부가가치의 변화율
4 종다양성감소의 역전	farmland bird species population으로 측정한 종 다양성 감소경향의 변화
5 농지와 산림의 고자연가치 유지	농지와 산림의 고자연가치의 변화
6 수지원의 향상	총영양분균형의 변화
7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	재생가능한 에너지 생산의 증가

□ 목표와 관련된 기초지표 (BASE LINES INDICATORS)

핵심축			지 표	측정내역
수평적 접근	*	1	경제발전	1인당 GDP 지수 (EU-25 = 100)
	*	2	고용수준(취업률)	전체인구 중 고용인구의 비중
	*	3	실업	실업률% (경제활동인구)

핵심축		지 표	측정내역	
AXIS 1 경쟁력	*	4	농업부문의 교육훈련	기초 및 정규교육 농업인구 비중%
		5	농업부문의 인구구조	35세 이하/ 55세 이상 인구비중
	*	6	농업부문의 노동생산성	전체 및 부문별 총부가가치/ AWU
		7	농업부문의 고정자본구성	농업부문의 GFCF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8	1차산업의 고용발전	1차 산업의 고용비중
		9	1차산업의 경제발전	1차 산업의 총부가가치
	*	10	식품산업의 노동생산성	식품산업의 총부가가치/ 고용인구
		11	식품산업의 고정자본구성	식품산업의 GFCF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12	식품산업의 고용발전	식품산업의 고용
		13	식품산업의 경제발전	식품산업의 총부가가치
	*	14	임업의 생산성	임업부문의 총부가가치/ 고용인구
		15	임업의 고정자본구성	임업의 GFCF
		16	NMS의 준자급농가의 비중	농가 수 < 1 ESU

핵심축		지 표	측정내역
AXIS 2 환경	*	17	종다양성: population of farmland birds population of farmland birds 지수경향
	*	18	종다양성: 고자연가치 농지 고자연가치 농지 규모UAA
		19	종다양성: 3개 종 구성 FOWL지구의 종의 구성비율 (침엽수%/활엽수 %/혼합비%)
	*	20	수자원 질: 질소의 총영양균형잉여 kg/ha “인”의 잉여 kg/ha
		21	수자원 질: 질산염과 농약의 오염 년간 수표면의 질산염 집중화 지표 변화/ 년간 수표면의 농약 집중화 지표 변화
		22	토양: 토양침식위험지구 토양의 침식위험지구 영역 (T/ha/year)
		23	토양: 유기농업 유기농 경작면적UAA
	*	24	기후변화: 농업 및 임업으로부터의 재생가능한 에너지 농업으로 부터의 재생에너지 생산 (ktoe)/ 임업부터의 재생에너지 생산 (ktoe)
		25	기후변화: 재생에너지 생산에 기여하는 농지 UAA 에너지와 biomass 농산물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 UAA
		26	기후변화/공기의 질: 농업부문으로부터의 발생 가스 유리온실 가스 및 농업으로부터의 암모니아 배출

핵심축		지표	측정내역	
AXIS 3 농촌개발	*	27	농외소득을 가진 농가	농외소득 활동 농가비중%
	*	28	비농업부문의 고용성장	2차 및 3차 부문의 고용
	*	29	비농업부문의 경제성장	2차 및 3차 부문의 총부가가치
	*	30	자가고용의 성장	자가고용인구
		31	농촌지역의 관광 인프라	숙박침대 수(호텔, 캠핑, 휴일민박 등)
	*	32	농촌지역의 인터넷 접속	DSL 접속가능 인구비중%
	*	33	서비스 부문의 성장	서비스 부문의 총부가가치 생산비중%
		34	순 유입인구	순 인구유입률
	*	35	농촌지역의 평생교육	교육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성인인구의 비중%

□ 여건과 관련된 기초지표 (BASELINES INDICATORS)

핵심축		지표	측정내역	
수평적 접근		1	농촌지역의 지명	OECD 방법에 의한 농촌지역의 지명
		2	농촌공간의 중요성	농촌지역의 구역 % 농촌지역의 인구 % 농촌지역의 부가가치 % 농촌지역의 고용 %

핵심축		지표	측정내역	
AXIS 1 경쟁력		3	농지이용	경작가능지역 %/ 항구적인 초지/ 항구적인 경작지
		4	농가구조	농가인구/ 대상지역의 평균 농가규모/ 농가별 노동력의 평균규모 및 분포
		5	산림구조	목재공급지역에서의 소유권 분포현황/ 민간소유 비중
		6	산림생산성	년간 평균 순 증가규모 (FAWS)

핵심축		지 표	측정내역
AXIS 2 환경	7	토지구성	농업지역 % / 산림 / 자연 / 인공지역
	8	조건불리지역	비 LFA지역에서의 UAA % / LFA 산간지역 / 기타 LFA / 특별한 약점을 가진 LFA
	9	조방농업지역	조방경작지역 UAA % 조방목초지 UAA %
	10	Natura 2000 지역	Natura 2000 적용지역 % Natura 2000 내에서 UAA % Natura 2000 내에서 산림 %
	11	종다양성: 보호산림지구	종다양성, 경관, 특수한 자연요소들의 보전을 위한 보호되는 FOWL % (MCPFE 4.9, classes 1.1, 1.2, 1.3 & 2)
	12	산림지역의 개발	산림 및 기타 식재된 지역의 년 평균 증가율
	13	산림의 ecosystem 실태	식재 % / 침엽수 / 활엽수
	14	수자원 질	질산염 취약지구 %
	15	수자원 이용	관계시설화 된 UAA %
	16	원천적 토양과 수자원과 관련된 산림의 보호	토질과 수자원보호를 위해서 관리되는 FOWL 지구(MCPFE 5.1 class 3.1)

핵심축		지표	측정내역
AXIS 3 농촌개발	17	인구밀도	인구밀도
	18	연령구조	0~4세 % / 15-64세 % / >=65세 %
	19	경제구조	1차, 2차, 3차 산업의 부가가치비중 %
	20	고용구조	1차, 2차, 3차 산업의 고용비중 %
	21	장기실업현황	장기실업비중 % (경제활동인구대비)
	22	교육 성취도	25~64세 인구 중 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비중 %
	23	인터넷 인프라	DSL 보급율

<첨부자료 4> 정책수단별 코드화된 목록사례 (Measures Fiches)

▶ 구성항목 : 정책수단코드, 정책의 논리적 근거, 정책수단 내용, 목표그룹, 목표범위, 공동지표, 정책수단과 지표간의 논리적 연계성, 평가질문

▶ 사례예시

정책수단활동	농업, 식품, 임업 종사자들을 위한 과학지식 보급 및 실천력혁신을 포함하는 교육과 정보활동 (Regulation 20조 (a), (i)항)
정책수단 코드	111
정책의 논리적 근거	경제적, 기술적, 환경적 여건변화는 농업, 식품, 임업 부문의 모든 종사자들에게 새로운 기술습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이러한 새로운 기술습득을 위하여 학교정규교육이 아닌 성인들을 위한 직업교육활동의 제공이 요구됨. 우수한 농가들에 대한 높은 수준의 교육프로그램의 실시는 노동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임
정책내용	과학적 지식 보급을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 - 강의식 수업 - 세미나 - 사례교육 - 정보교육 - 워크숍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훈련활동 - 기술, 경제 등 - 정보통신기술 -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경관의 정비와 연계된 생산활동의 적용방법)
목표그룹	농업, 식품, 임업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성인
목표범위	정하지 않음
공동지표	Baseline(기초지표) - 농업부문의 교육과 훈련 - 임업부문의 노동생산성 - 농업부문의 노동생산성 Input (투입) - 집행된 공공지출 총액(EAFRD) Output (산출) - 교육참가자 수 (연령, 성별, 직업별, 참여자 유형별) - 교육시행일 수 Result (결과) - 교육수료자 수 (수료자의 연령별, 성별, 직업별, 유형별) Impact(성과) - 노동생산성

<p>정책수단과 지표간의 논리적 연계성</p>	
<p>평가질문</p>	<p>교육, 정보, 지식보급과 관련된 활동들이 노동생산성 향상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으며, 농업, 식품, 임업부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른 기여요소들은 무엇인가?</p> <p>교육훈련활동이 얼마나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에 기여하고 있는가?</p> <p>교육프로그램은 교육의 필요성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으며, 다른 정책수단들과의 연계성은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가?</p>

3. 미국 성과관리정책

- 미국의 연방정부 차원 성과관리는 1921년에 설립된 의회 소속의 감시기구인 GAO(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에 의해서 시작되었음. GAO는 회계감사 및 정책평가 기능을 통해 행정부처의 업무수행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회계감사 및 정책평가에 관한 자료는 의회의 예산심의과정에 반영됨으로써 성과와 예산의 연계구조를 마련한 것임.
- 1990년에는 CFO(Chief Financial Officers Act)를 통과시켜 연방기관들에 대한 최고 재무관리직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하였고, 민간기업과 같이 각 기관의 재무상태 및 관리상의 통제상태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도록 하였음.
- 이러한 결과중심의 행정관리체계의 변화는 계속하여 1993년 정부관리성관리법 GPRA(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를 제정하여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부 결정 수립과 책임성의 기준을 정부가 행한 행동에 초점을 맞추던 것에서부터 활동의 결과에 맞추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였음.
- 즉 연방기관으로 하여금 핵심적인 결과를 통해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강조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전략적 계획, 목표의 수립 및 성과측정을 통한 목표달성여부의 심사, 이들 정보에 대한 공개 등을 통해 결과중심의 관리개혁을 실현할 것을 강조.
- 미국에서의 성과관리체계가 도입된 구체적인 배경은 다음과 같음. 첫째 연방사업에 있어서 낭비와 비효율성은 정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필수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하는 연방정부의 능력을 위축시켰고, 둘째, 연방정부의 관리자들은 사업의 목표에 대한 불명확성과 사업의 성과에 대한 부족한 정보로 인해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 심각

한 불편을 겪고 있었으며, 예산배정과 사업에 대한 통제 등 의회에서 정책 결정은 사업성과 및 결과에 대한 관심과 정보부족으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경험하였기 때문임.

- 이러한 상황에서 연방정부는 성과관리제도의 도입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였음.
- 첫째, 연방기관들로 하여금 체계적으로 사업결과의 달성에 기초한 책임성 확보를 통해 연방정부의 능력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제고시키고, 둘째 일련의 시범사업에서의 사업목표의 규명, 목표에 대비한 성과의 측정, 그리고 사업의 진척과 성과에 대한 복 등을 통해 사업성과의 개선을 주도하며,
- 셋째 사업의 결과, 서비스의 질, 그리고 고객만족 등에 대한 강조를 통해 연방사업의 효과성과 시민에 대한 책임성을 증진시키며, 넷째, 사업의 목표를 충족시키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결과와 서비스 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연방관리자들로 하여금 서비스 전달을 증진시키도록 지원하며, 다섯째 법적인 목표의 달성에 관한 보다 객관적인 정보와 함께 연방사업과 지출의 상대적인 효과성과 효율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회의 정책 결정을 향상시키고, 마지막으로 연방정부의 내적관리를 향상시키는 것 등임.
- GPRA의 쟁점들은 다음과 같음. 첫째, GPRA의 실제 핵심은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침을 나열하는 성과계획안이다. 만일 기준이 세심하게 선택되어지지 않거나 꼭 해야 할 측정을 위해 고안되어지지 않는다면 결과는 나쁘게 나타날 수 있음.
- 둘째, 종종 원인과 결과를 수립하기가 어렵다. 긍정적 결과가 정말로 기관 때문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 복지개혁 분야와 같이 성공의 주된 이유는 실제 프로그램의 기능이 아니라 미국의 급속한 경제 분위기라고 말 수 있음.

- 셋째 일부 결과들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는다. 자연체계의 오염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노력은 분명하게 연간 예산 주기에 맞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과측정은 결과가 즉시 명백하지 않더라도 기관이 목표를 이루지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필요할 수 있음.
- 넷째, 많은 예들에서 보면 개선된 점을 측정할 수 있는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자료들이 부족하다. 가이드라인과 같은 것이 없이는 개선점을 보여주기 불가능하여 목표를 수립조차 불가능하게 함.
- 다섯째, 하나의 큰 기관 내에서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단위 사업들이 있다. 이러한 많은 정부 기능들이 각 기관들 사이에서 교차되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책임지우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일임.
- 여섯째, 예산과정은 아주 정치적으로 다루어진다. 정부지출은 기관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아니라 정칙적 고려와 탄탄한 자금을 제공하는 이익집단의 영향력에 근거하는 경우가 많음.
- GPRA의 시행에 따라 연방정부의 각 행정부처는 최소 3년에 한 번씩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전략계획에는 적도 6개년을 포함하며, 각 부처가 존재하는 이유인 임무기술서와 장기목표를 포함한다.
- 장기목표는 대부분 결과에 대한 목표이며 각 부처의 임부수행과 연계되어 있음. 이와 함께 목표의 달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측정지표들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목표달성에 방해가 되는 위협요인들도 제시하도록 되어 있음. 전략계획은 매 3년마다 수정되지만 매년 세부적인 수정을 할 수 있음.
- 연간성과계획서는 전략계획의 장기목표를 연간 성과 목표로 구체화하여 제시하는 것임. 연간성과계획에 포함된 목표들은 결과목표와 산출목표를 모두 포함하며,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소요 정도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음.

- 연간성과보고서는 연간성과계획에 따라 수행된 결과와 산출을 실제적인 성과와 비교하는 것임, 목표달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그 사유와 향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연간성과보고서에는 당해연도에 행해진 사업평가의 결과를 포함한다.
- 이와 함께 포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성과향상을 위한 각 부처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부처의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활동을 줄여나가도록 하고 있으며, 각 부처의 성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평가와 이를 위한 보다 체계적인 정보시스템의 구축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있음.
- 이러한 개선방안에는 각 부처의 우선순위와 목적달성 활동을 측정할 수 있도록 GPRA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사업, 프로젝트, 활동수준으로의 전환, 장기적인 추이분석의 실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들을 평가할 수 있는 측정의 보완, 사회에 대한 영향을 포함하는 외부성과에 대한 평가포함, 사업의 성격에 따라 성과보고 주기의 차별화 등이 제시되고 있음.
- 또한 2001년 4월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원 중심의 재정관리 시스템도 성과관리의 주요한 제도임. 2001년 도입한 President's Performance Management Agenda는 크게 다섯 가지 안 즉 전략적 인력관리, 경쟁력 있는 자원관리, 제정의 개선, 전자정부의 확대, 예산과 성과의 통합을 제시하고 있음.
- 이중 하나의 예산과 성과의 통합(The Budget and Performance Integration)의 논리는 좋은 성과를 내는 프로그램은 지속되어야 하는 반면 성과가 좋지 못한 프로그램은 수정하거나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성과관리를 예산운영과 연계시키려고 하는 것임. 즉 결과중심의 목표를 설정하며, 이러한 실질적인 결과에 기초하여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 미국의 성과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유인체계는 운영예산을 성과에 따라 기관

및 사업별로 배정하는 방법, 예산배정법상의 의회의 추가행위 없이 부처에서 전용을 허용하고, 다년도 또는 회계연도의 제한이 없는 배정 및 지출을 허용하고 정부내부 서비스에 대한 자유경쟁을 허용하는 방법 등이 있음.

- 공무원들의 행태에 변화를 가져오고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유인체계 필수적임. 높은 성과에 대한 개인적이고 재정적인 보상은 중요한 유인체계임. 이와 함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규제나 통제의 수준을 낮추고 재량의 범위를 넓혀주는 것도 중요한 유인체계로 활용되고 있음.

4. 영국 성과관리정책

- 영국은 1980년대 이후 공공분야에서 결과에 초점을 둔 관리시스템(Results Focused Management in the Public Sector)에 대한 관심과 비중이 점점 높아져 갔음. 이는 이 시기에 도입된 FMI(Financial Management Initiative), Next Steps Citizen's Charter 등 세 가지 핵심적인 행정개혁 장치에 근거하고 있음.
- 1980년대 이후 광범위한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영국을 중심으로 한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배경은 높은 재정지출과 재정적자의 누적, 정책목표달성을 위한 책임성의 결여, 정책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한 결과 중심관리로의 전환이 불가피했기 때문임.
- 이러한 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으로 첫째, 성과중심의 관리체계는 기본적으로 이들 국가들이 경제위기를 직면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내적인 행정개혁을 추진하는 일환으로 시도되었음.
- 경제위기하에서 정부는 재정수입의 감소를 경험하는 한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의 신장이 요구되는 과정에서 높은 재정적자를 경험하면서 재정지출의 감축 등 작은 정보가 요구되었으며, 국가재정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주어진 재원하에서 그 성과를 담보하는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음.

- 둘째, 기존의 행정관리는 정치적인 논리에 의한 단기적인 시각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없었고 한편 중앙 집중적이고 일원화된 규정과 과정은 관리자들로 하여금 결과의 달성을 위한 보다 신축적인 업무처리의 여지와 성과증진을 위한 유인을 없애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예산 또는 지출 중심의 관리는 결과에 대한 관심을 악화시키는 등 기관활동 내지는 정책목표의 달성에 대한 책임감이 결여되었으며, 행정관리자들로 하여금 결과중심의 보다 효과적인 정책수행의 유인하기 보다는 오히려 차단하는 역효과를 나타내게 하였음.
- 셋째, 재정적자의 축소와 정책을 기준으로 이미 지출된 재정에 대한 성과를 통해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접근수단으로 결과중심의 관리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것임.
- 변화의 단계를 보면, 첫째 공공기관 지출의 효율성 증가, 둘째, 공공 재정 투입에 있어 공공지출에 대한 통제라는 관점에서의 관리, 셋째,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높은 질의 성과를 지원함으로써 재정사업의 가치를 검증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음. 즉 재정의 투입 면에 대한 관리와 평가중심에서 산출물, 결과를 중심으로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음.
- 1982년 FMI를 통해 Thatcher 정부는 정부부처 내 모든 계층의 관리자에게 사업을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의도하고 있는 사업목표를 분명히 하여 제시하고, 목표의 달성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제시와 그 비용을 제시하도록 하였음.
- 이러한 성과지표의 설정은 전정부적으로 확산되게 되었음, 그러나 성과측정 및 평가에서의 FMI가 이루어낸 성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되어 관리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도출하게 되었음. 이에 Next Steps Initiative가 도입되었음.
- 1988년의 Next Steps Initiative도입을 통해 부처 내 집행 또는 서비스 제공기능을 중심으로 개혁의 초점이 변화하게 되었음. 즉 Next Step은 전통적인 부처 구조로부터 분리하여 책임운영기관을 만드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책임운영기관에서는 분명히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자율적인 서비스 집행기능을 가지고 있음. 부처의 장관과 집행기관장의 관계는 계약에 의해 규정되고 있고, 계약내용으로 집행기관장이 성취해야 할 성과목표가 규정되고, 지출 및 인력관리상의 재량권을 가지고 있음.
- 1991년에는 한걸음 나아가 서비스 이용 고객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헌장제도(Citizen's Charter)를 도입하였음. 시민헌장은 책임운영기관 등이 대고객과의 관계에 있어 제공되는 서비스 표준과 함께 이들 표준에 근거하여 성과를 측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1998년부터 3년 단위의 성과계획서와 1년 단위의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있음. 1999년 10월 공무원 개혁 프로그램에서는 성과관리의 주요 안건을 네 가지로 분류하여 2002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에게 자체의 성과관리 시스템 점검을 마치도록 하였음.
- 성과관리에 있어서 네 가지 중요사항은 첫째, 효율적인 사업정책과 시행관리 방법 및 계획 수립, 둘째 현재의 인력관리시스템과 관련 현대적인 공무원 육성을 이루기 위한 인력 관리 방법, 셋째 성과중심의 보상방법, 마지막으로 리더십과 경영능력 개선방법 등이다.
- 영국의 관리과 예산결정은 결과와 산출정보를 기반을 두고 있음. 영국의 두 가지 중요요소는 공공서비스 협약과 서비스 전달 협약이다. PSA는 영국의 블레어 정부가 행정혁신의 일환으로 실행한 것으로 정부와 공공간의 서비스 전달 효과와 효율에 대하여 산출과 성과를 중시하는 것임.
- 이에 근거하여 모든 각 부처는 당해 부처의 향후 3년간에 걸친 목표 및 목적, 자원, 성과목표치를 구체적이고 계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된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음. 각 부처의 PSA는 개별부처뿐만 아니라 정부의 특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부처간 상호연계되어 존재하기도 함. 이러한 결과와 과정의 목표값들은 결과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도록 되어 있음

VI. 신활력사업 성과관리체계 모형 구축

1. 성과관리의 개요

1.1 성과관리의 목적

- 신활력사업의 미션과 비전을 설정 및 수립을 통해 정부, 지자체, 기업,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이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성과를 높이는데 있음.
- 성과관리는 사업수행기관(시군구 및 사업단)이 사업의 목표에 맞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목표달성이 효과적으로 지원되도록 관리하는데 있음.
- 성과관리 평가기관은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체계의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성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평가의 투명성, 효율성, 책무성을 높이는데 있음.

1.2 성과관리의 성격

- 첫째, 비전, 전략 등 사업의 방향성을 제공
- 둘째, 사업의 운영방향에 대한 사업관리 및 추진주체의 역할 제공
- 셋째, 전체 사업의 목표와 세부목표와의 연계성 제공
- 넷째, 목표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와 환류정보 제공

1.3 성과관리의 내용

가. 성과관리 목표체계 수립(Performance System)

- 성과관리 목표체계 수립을 위해서는 전략적인 기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당해기관의 수립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목표, 가치, 기능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개념으로 당해기관이 추구하는 중심목표나 의도가 있어야 함.

- 이러한 당해기관의 임무(Mission)는 그 조직의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이 될 수 있으며, 전략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관임무의 제시가 필요함. 전략목표는 기관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이므로 기관 임무와 밀접한 연계가 있어야 함.
- 전략기획 하에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조직이 지향하는 바를 결정하는 것이며,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제시된 목표가 조직 내에서 널리 수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따라서 목표의 설정은 계층성에 입각하여 단계적으로 접근되어야 하는데, 먼저 기관 조직의 임무를 마련하고, 전략목표의 하위 목표인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후에, 조직구성원 개개인 차원에서 실현할 수 있는 개인별 목표를 설정하게 됨.
- 전략목표(Strategic Goal)는 조직의 이념과 목표, 가치, 기능 등을 포함하는 중장기적인 중점정책 방향을 의미함. 각 전략목표 하에는 기관 활동을 보다 구체화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과 목표가 필요함.
- 성과목표(Performance Goal)는 전략목표의 하위개념으로 각 부서의 활동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복수의 구체적인 목표를 의미함. 이는 전략목표보다 구체적으로 정의되며, 주요 임무의 분석 또는 사업의 검토로부터 도출할 수 있음.
- 성과목표는 성과지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요소로써 전략목표처럼 추상적으로 정의되어서는 안됨. 만약 특정사업이 객관적이고 계량화된 형태로 성과목표를 설정할 수 없을 시 서술형식으로 성과달성 정도의 설정이 가능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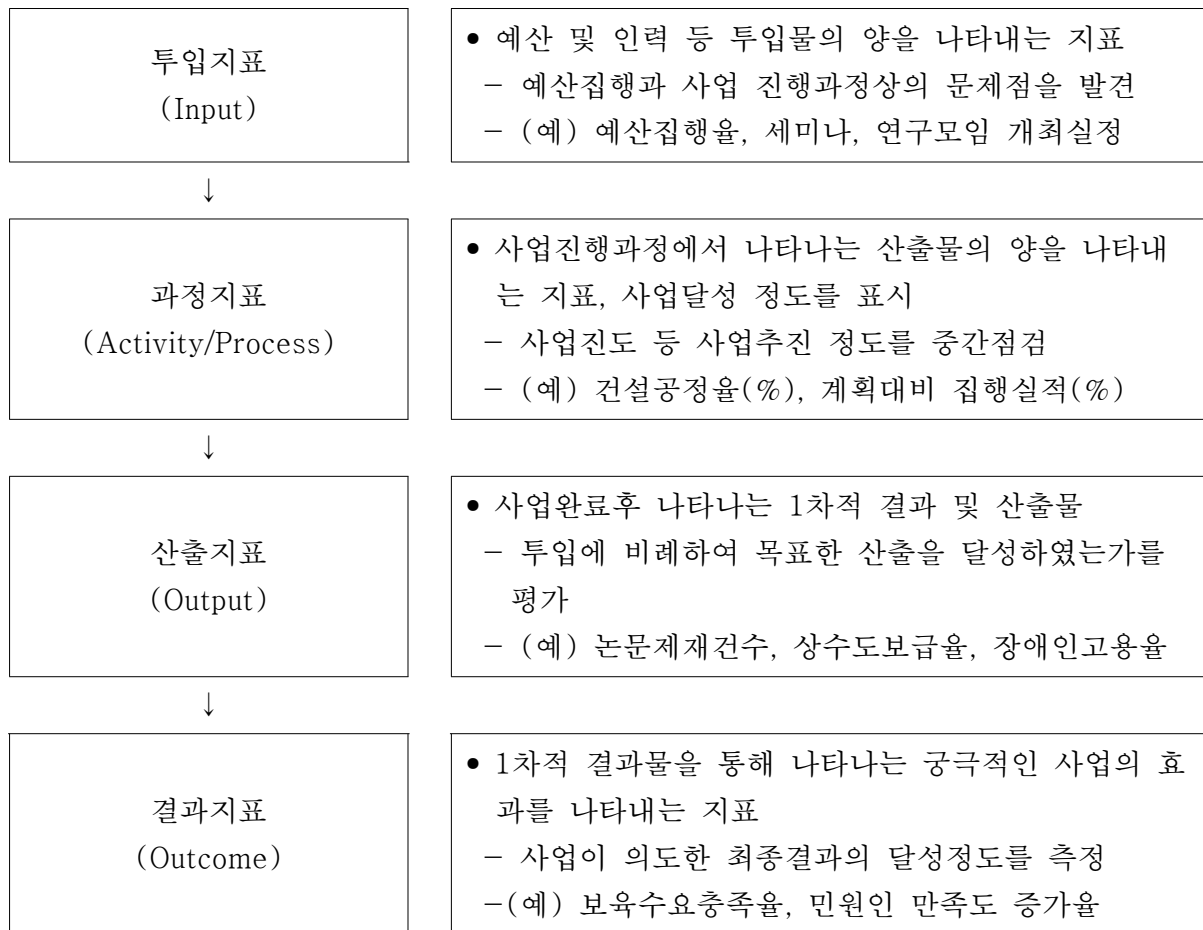
-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란 조직의 임무, 전략목표,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계량적 혹은 질적으로 나타낸 것을 말함.
- 성과지표에 의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성과의 달성수준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과관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성과지표는 성과관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 성과의 정의, 성과지표의 개발 및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음. 사업에 따라서 사업이 성과와 무관하여 지표화가 불가능한 경우, 지표화할 경우 사업의 취지가 왜곡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지표화가 바람직하지 않는 경우, 지표화가 무의미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바람직한 성과지표의 요건으로서는 SMART(Specific, Measurable, Achievable, Relevant, Timed)라는 다음의 5가지를 들 수 있음.

<표VI-1> 성과지표의 SMART 요건

구 분	내 용
구체성 (Specific)	성과지표는 포괄적이 아니라 조직이나 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성과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구체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이를 명확히 기술할 수 있어야 함
측정가능성 (Measurable)	성과지표는 측정가능한 것이어야 함. 단순히 추상적으로 나열해 놓은 지표나 자료수집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표는 그 유용성이 매우 낮음
달성가능성 (Achievable)	성과지표는 조직이나 기관이 일정한 기간 동안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를 전제할 것이어야 함. 조직이나 기관의 노력으로 달성할 수 없는 지표를 선정하는 것은 성과관리에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음
관련성 (Relevant)	성과지표는 기관의 우선순위와 결과, 사업의 임무 및 목적 그리고 측정하려는 성과와 관련이 있는 것이어야 함
적시성 (Timed)	성과지표는 명확한 시간계획을 가지고 있어 빈번하게 측정됨으로써 사업진행상황의 파악에 도움을 주어야 하며, 빠른 시간내에 생산됨으로써 자료로서의 유용성을 가져야 함.

○ 성과지표 개발(Performance Indicators)

- 사업추진단계별(투입 -> 과정 -> 산출 -> 결과) 성과지표 개발
- 목표차원(정책목표 -> 전략목표 ->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개발
- 지표유형(공통지표, 고유지표, 핵심지표, 연계지표, 개별지표)별 성과지표 개발
- 지표측정을 위한 측정방법 및 자료 확보 방안 제시



자료 : 기획예산처 2004.

- 성과관리 운영계획 수립(Performance and Results Process)
 - 사업단계별(기획(P) -> 실행(D) -> 완료(C) -> 조치(A) 운영계획 수립
 - 평가자료의 원활한 확보 및 평가자료의 DB화 방안 제시
 - 평가결과의 활용 및 환류체계 구축방안 제시

2. 신활력사업 성과관리체계 ROAD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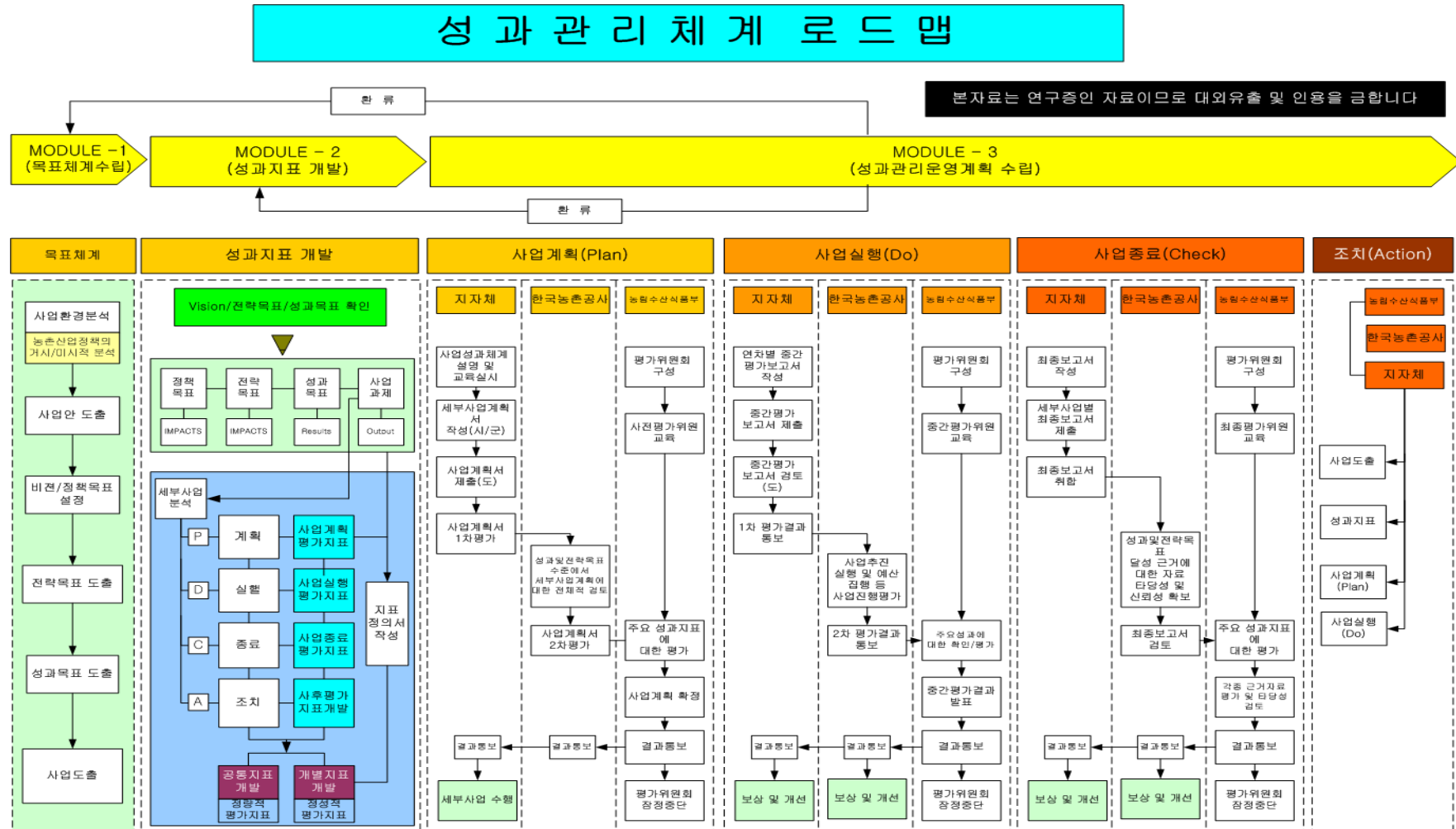
- 본 신활력사업 성과관리의 로드맵은 모듈(Module)화해서 표준화된 성과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향후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공함
- 성과관리의 로드맵은 3개의 모듈(Module)로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정형화된

형태의 평가방식을 채택함. Module-1(성과목표체계수립 : Performance System), Module-2(성과지표개발 : Performance Indicators), Module-3(성과관리 운영계획 : Performance and Results Process)로 구성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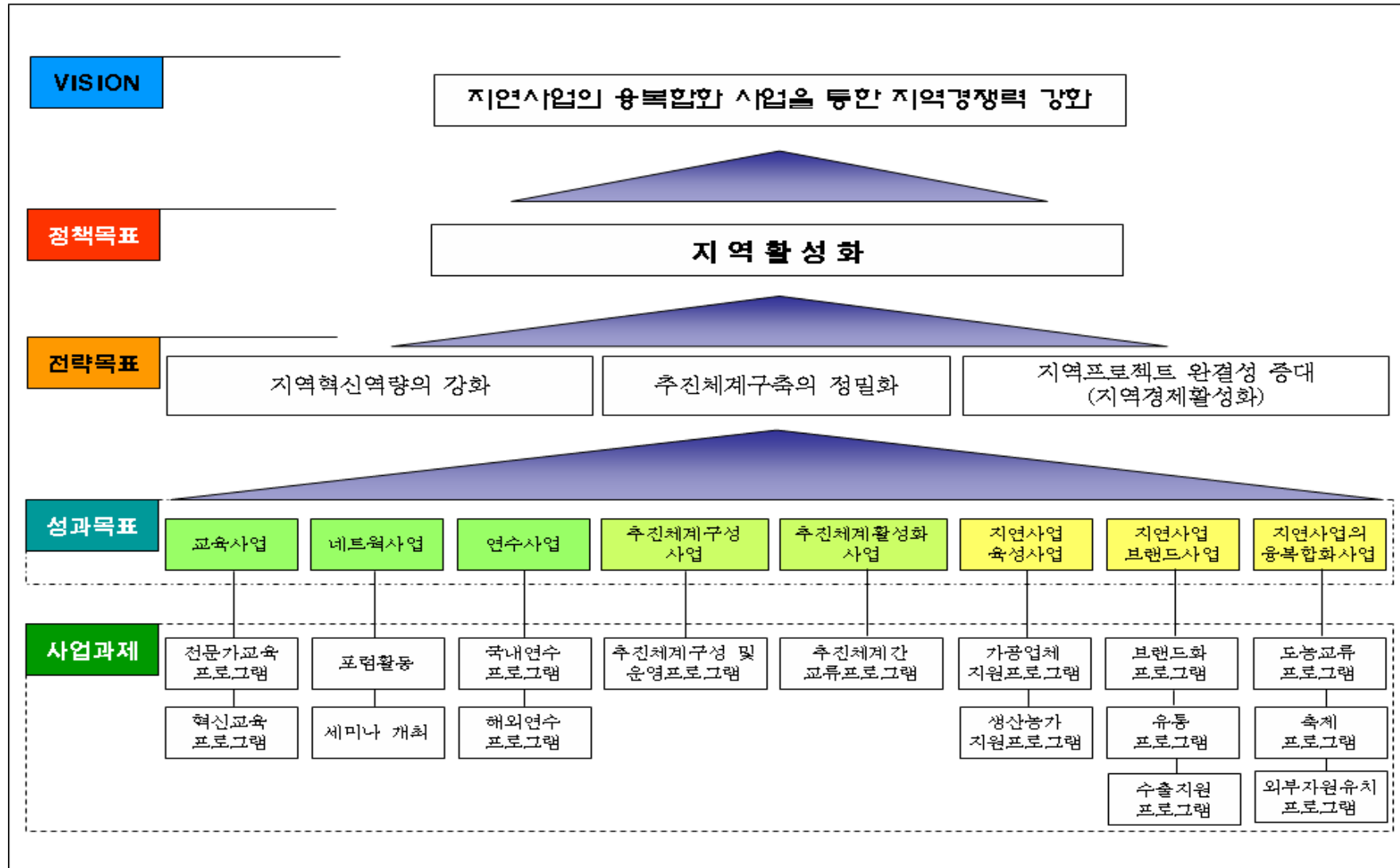
- Module-1은 목표체계를 수립하는 단계로서 추진사업의 환경분석을 통해 목표체계수립의 사업안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활력증진사업의 비전, 정책 목표, 전략목표, 성과목표, 사업도출을 수립하게 함.
- Module-2는 성과지표 개발단계로서 비전, 정책목표, 전략목표 등 목표체계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세부지표를 작성함.
 - 세부사업분석을 통하여 세부사업별 목표를 도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별 세부지표 개발
 -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목표수준의 성과지표 개발
 -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수준의 성과지표 개발
- Module-3은 성과관리운영계획 수립단계로서 사업계획 Process, 사업실행평가 Process, 사업종료 평가 Process로 구분하여 각각의 피평가자(지자체), 평가지원(한국농촌공사), 평가자(농림수산식품부)가 관리해야 할 업무를 명시함

3. 신활력사업의 정책목표

<그림VI-1> 신활력사업 성과관리체계 로드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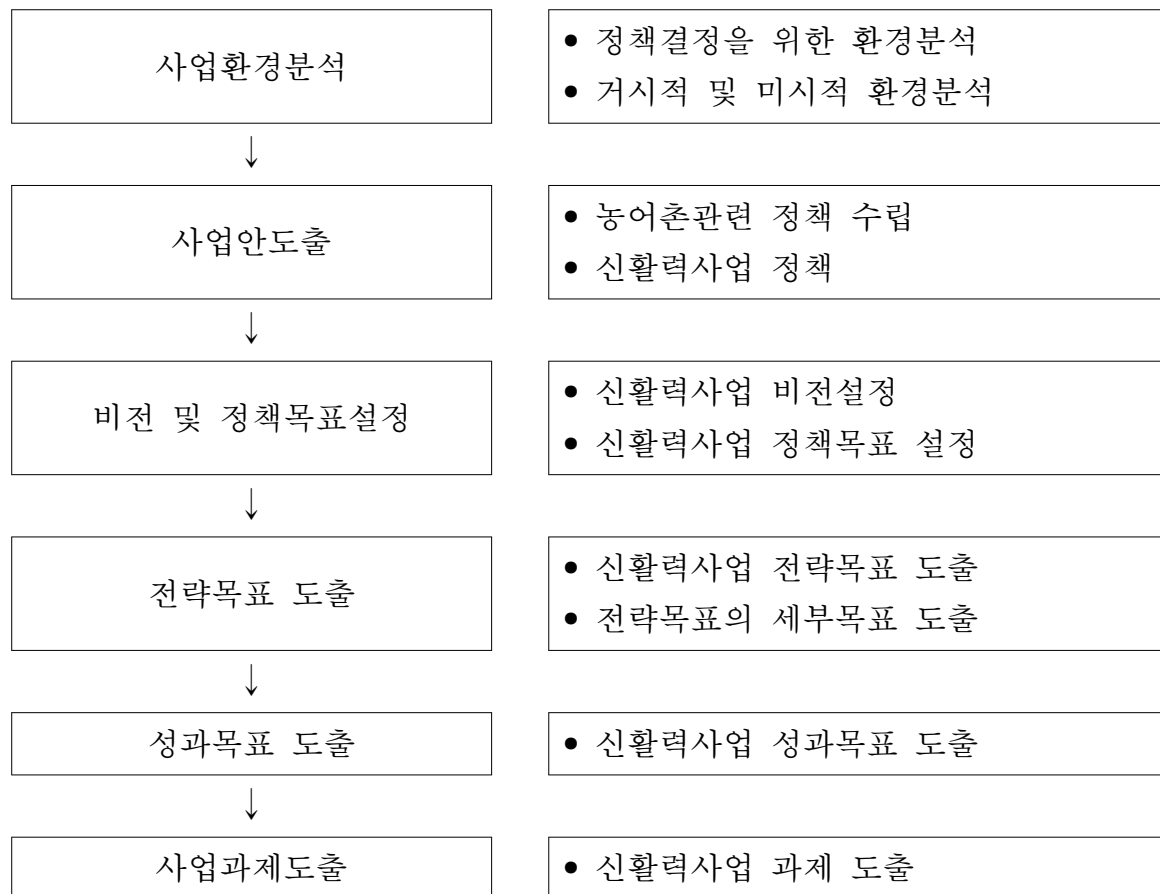
<그림VI-2> 신활력사업의 정책목표 모형



4. 성과관리 PROCESS

4.1 MODEL-1 : 목표체계 수립(Performance System)

가. 기본방향



나. 설정방향

1) 사업환경분석

- 2005년부터 시도하는 신활력사업은 낙후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기존의 농촌정책의 H/W사업에서 S/W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농촌의 신성장동력화하는데 사업의 목적이 있음.

- 이러한 정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농촌산업정책의 거시적 및 미시적 분석을 철저히 하여 정책의 중복성과 통합화 등을 고려하여 궁극적인 정책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사전 환경분석을 시행.

2) 사업안 도출

- 사업에 따른 철저한 성과관리를 통하여 통합 추진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업과 지속가능사업 등을 여러 측면에서 분석하여 올바른 농촌산업정책을 위한 사업을 추진.
- 사업환경분석을 통한 농촌산업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정책의 목표, 방향, 전략 및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 선정.

3) 비전 및 정책목표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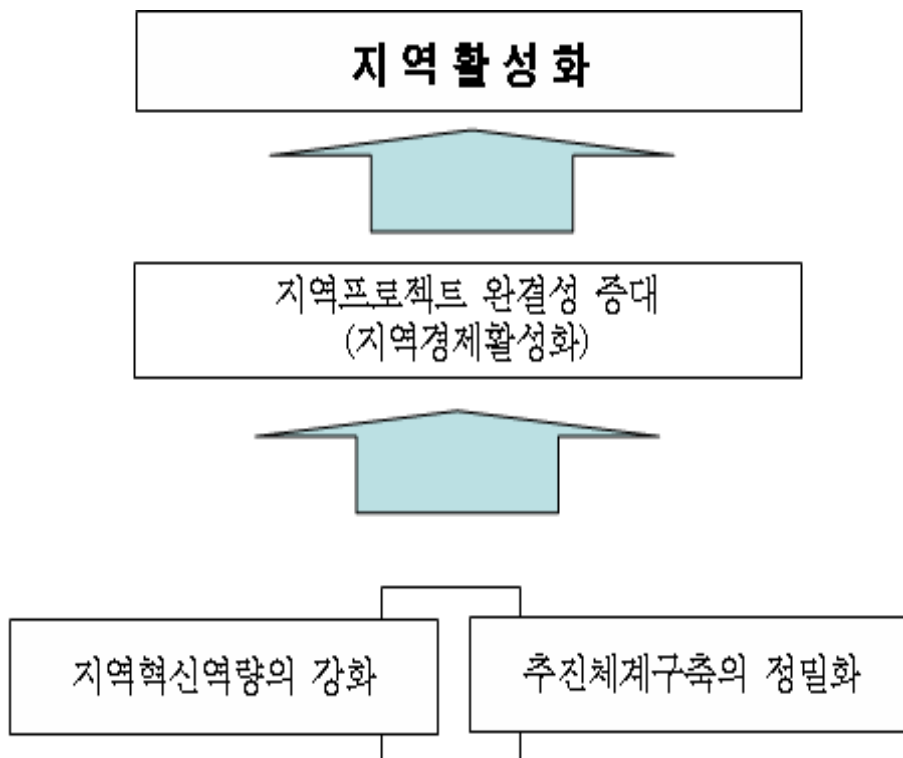
정책목표	지역 활성화
-------------	---------------

- 비전은 중장기적으로 이우려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의미하며, 농촌산업 정책의 여건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함.
- 따라서 신활력사업은 상위 농촌정책의 임무(Mission)에 부합하는 비전(Vision)을 설정하여 새로운 농촌산업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필요함.
- 신활력사업은 낙후지역의 혁신역량을 높이고 혁신체계를 구축하여 농촌의 활력을 증진하는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음.
- 그 동안 사업추진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신활력사업은 농촌정책의 성장엔진으로 자리를 잡도록 함과 동시에 농촌산업정책의 새로운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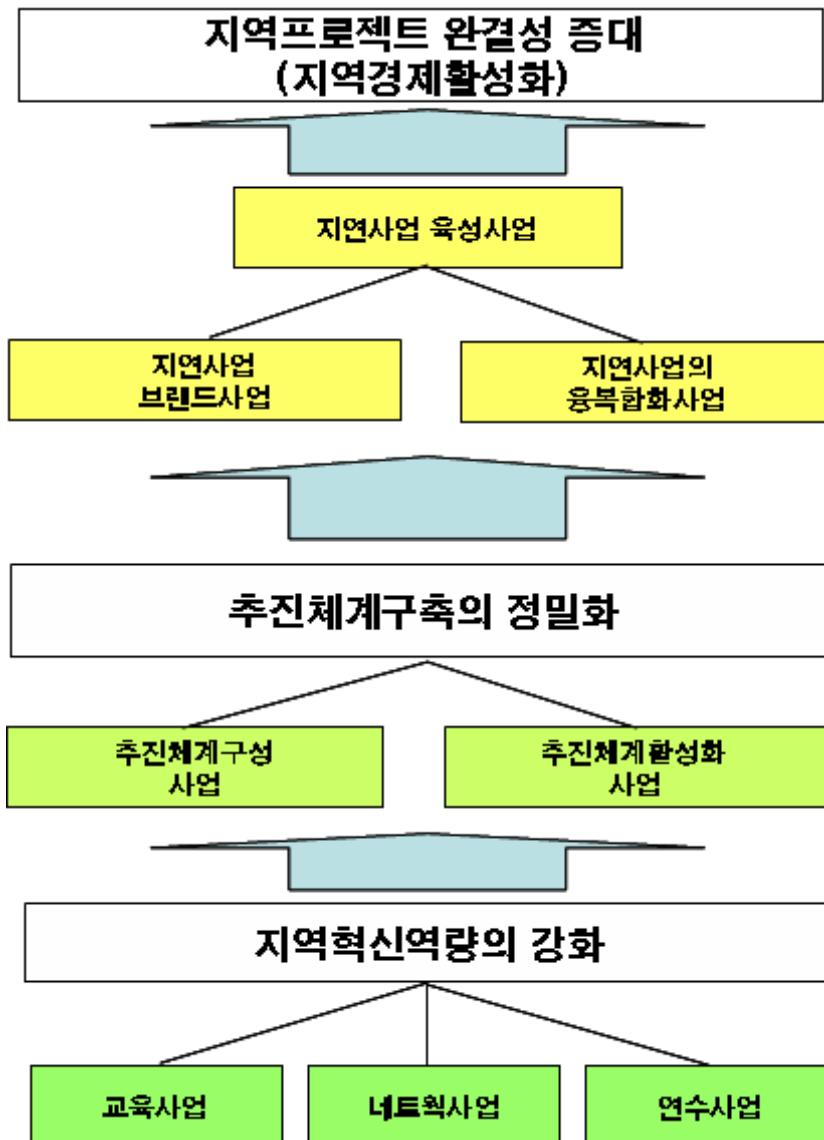
략목표를 수립하여 성장동력화하기 위한 전략목표 도출

4) 전략목표 수립

- 신활력사업의 전략목표는 지역활성화의 정책목표하에 지역혁신역량강화 (Actor Innovator) 및 추진체계구축 구축 및 활성화(System)을 통하여 지역프로젝트의 완결(Project or Program)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5) 성과목표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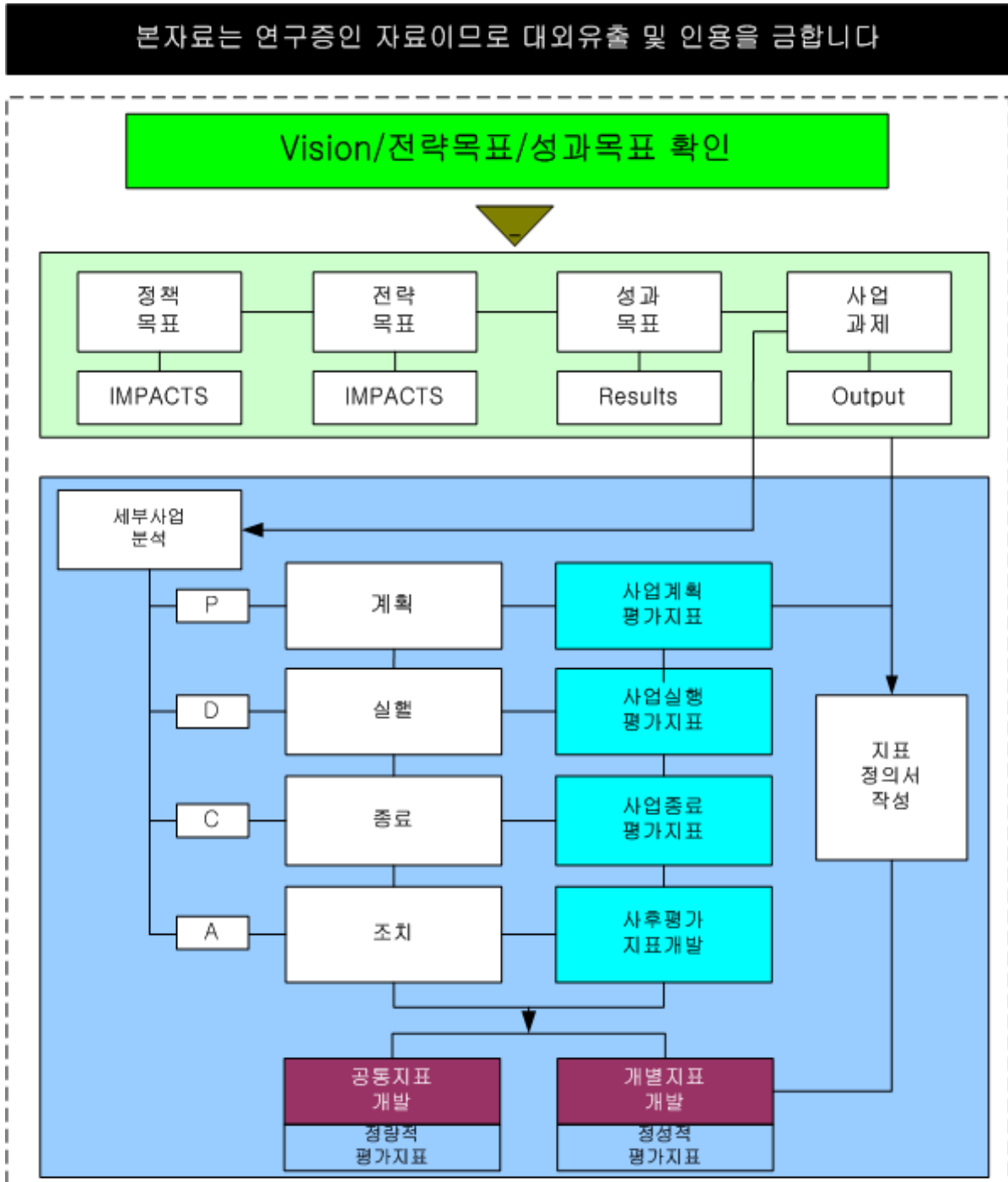
- 신활력사업의 성과목표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프로젝트를 완성하여 낙후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연계산업을 추진 및 통합화하는데 있음.
- 우선 신활력사업의 ASP모델에서 지역혁신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네트워크사업, 연수사업을 통한 지역혁신리더의 교육, 의식교육을 통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체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 혁신주체들의 발굴 및 육성을 통한 혁신체계 구축 및 제도 정비를 통한 자율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신활력사업의 자율적 계획수립 및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성을 유도할 수 있는 체계(System)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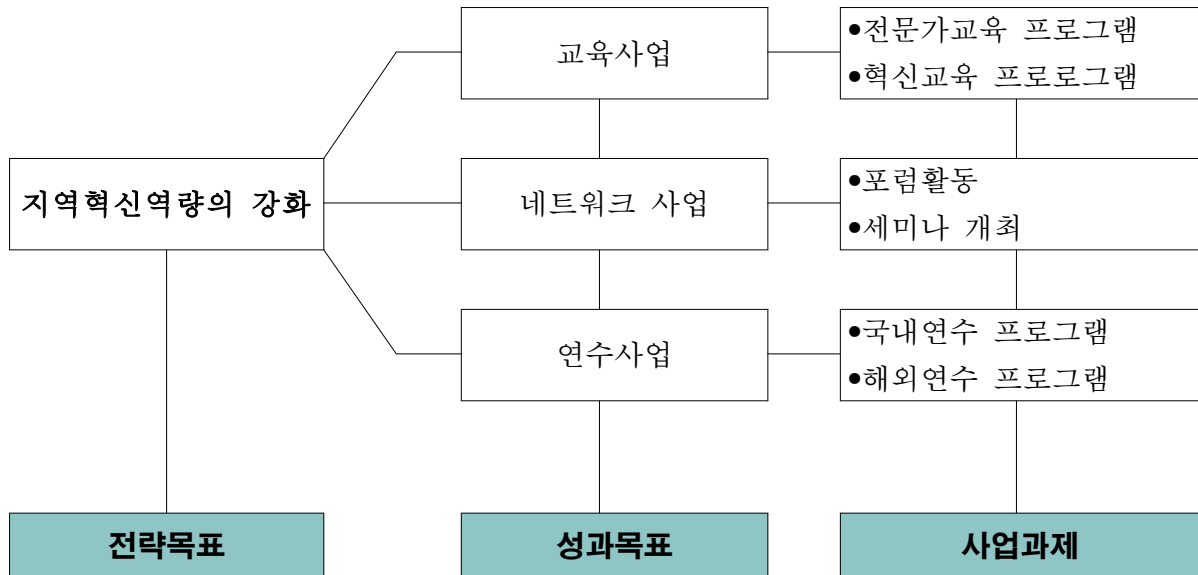
- 이러한 역량의 결집을 통한 선도사업(Project or Program)을 수행함으로써 지연사업 브랜드화, 지연사업의 융복합사업을 발굴 및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성장동력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과목표를 설정

4.2 MODEL-2 : 성과지표 개발(Performance Indicator)

가. 기본방향



나. 전략목표 1 : 지역혁신역량의 강화



1) 전략목표 성과지표 개발방향

- 신활력사업의 혁신정책의 틀에서 낙후지역의 우선적인 과제는 도로, 생활기반시설 등 물리적 인프라 공급이 아니라 소득과 일자리 창출 등의 생업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이는 혁신주체(Actor)들이 체계(System)적으로 비교우위를 갖는 선도사업(Project or Program)을 수행한다는 첫 글자를 따서 ASP 모델이라고 부름.
- 혁신주체들을 키우고 이들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조직을 구성하는 과정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이들의 혁신주체들이 어떠한 사업이라도 이러한 혁신적 환경의 토대 위에서 수행하여야 지속가능하다는 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신활력사업의 전략목표-1의 지역혁신역량의 강화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① 교육사업 ② 네트워크사업 ③ 연수사업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주요과제는 각 사업별로 설정.

<표VI-2> 전략목표 1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성과목표		세부사업 수		성과지표수
1-1	교육사업	• 전문가교육 프로그램		
		• 혁신교육 프로그램		
1-2	네트워크사업	• 포럼활동		
		• 세미나 개최		
1-3	연수사업	• 국내연수 프로그램		
		• 해외연수 프로그램		

2)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개발방향

□ 1-1 교육사업

- 신활력사업의 지역혁신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교육사업의 성과목표의 성과지표는 전문가교육프로그램과 혁신리더 교육프로그램 구분하여 지표, 측정단계, 지표구분, 측정형태로 구분.

<표VI-3> 성과목표 1-1 : 교육사업의 성과지표

사업과제	지표명	측정단계	지표구분	측정형태
전문가교육프로그램	• 교육프로그램수	성과	결과	정량
	• 워크숍 회수	성과	결과	정량
	• 강사확보율	성과	결과	정량
	• 교재개발 수	성과	결과	정량
혁신교육 프로그램	• 교육프로그램수	성과	결과	정량
	• 워크숍 회수	성과	결과	정량
	• 강사확보율	성과	결과	정량
	• 교재개발 수	성과	결과	정량

- 교육사업의 세부과제의 수행지표는 각 프로그램의 지표를 교육프로그램의 평

가를 위한 예산집행율, 전문인력 이용률, 인력투입율, 교육성과율 등으로 지표를 설정하여 측정.

<표VI-4> 성과목표 1-1 : 교육사업의 수행지표

사업과제	지표명	지표구분	측정형태
전문가교육프로그램	• 사업예산집행율	투입	정량
	• 전문인력 이용율	투입	정량
	• 인력투입율	투입	정량
	• 교육성과율	투입	정성
전문가교육프로그램	• 사업예산집행율	투입	정량
	• 전문인력 이용율	투입	정량
	• 인력투입율	투입	정량
	• 교육성과율	투입	정성

□ 1-2 네트워크 사업

- 신활력사업의 네트워크 사업의 성과지표는 혁신주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포럼활동과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여 지역별 사업에 적합한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네트워크사업을 통한 지역혁신역량화를 위한 성과지표 설정은 포럼활동수, 참여자의 포럼만족도, 네트워크 활용률, 교육성과율을 지표로 설정하여 정성 및 정량적 평가를 실시

<표VI-5> 성과목표 1-2 : 네트워크 사업의 성과지표

사업과제	지표명	측정단계	지표구분	측정형태
포럼활동	• 포럼활동수	성과	결과	정량
	• 포럼만족도	성과	결과	정성
	• 네트워크 활용률	성과	결과	정량
	• 교육성과율	성과	결과	정량
세미나 개최	• 포럼활동수	성과	결과	정량
	• 포럼만족도	성과	결과	정성
	• 네트워크 활용률	성과	결과	정량
	• 교육성과율	성과	결과	정량

- 네트워크사업의 일환으로 포럼활동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한 역량강화의 세부사업의 수행지표로는 사업예산집행율, 인력투입율, 인력예산집행율, 교육참여율의 지표를 설정하여 측정함으로써 평가를 실시.

<표VI-6> 성과목표 1-1 : 네트워크사업의 수행지표

사업과제	지표명	지표구분	측정형태
포럼활동	• 사업예산집행율	투입	정량
	• 인력투입율	투입	정량
	• 인력예산집행율	투입	정량
	• 교육참여율	투입	정성
세미나 개최	• 사업예산집행율	투입	정량
	• 전문인력 이용율	투입	정량
	• 인력투입율	투입	정량
	• 교육참여율	투입	정성

□ 1-3 연수사업

- 지역혁신역량강화사업의 일환인 연수사업은 국내연수프로그램 및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선진지 견학을 통한 지역주민의 식견을 높이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표VI-7> 성과목표 1-3 : 연수사업의 성과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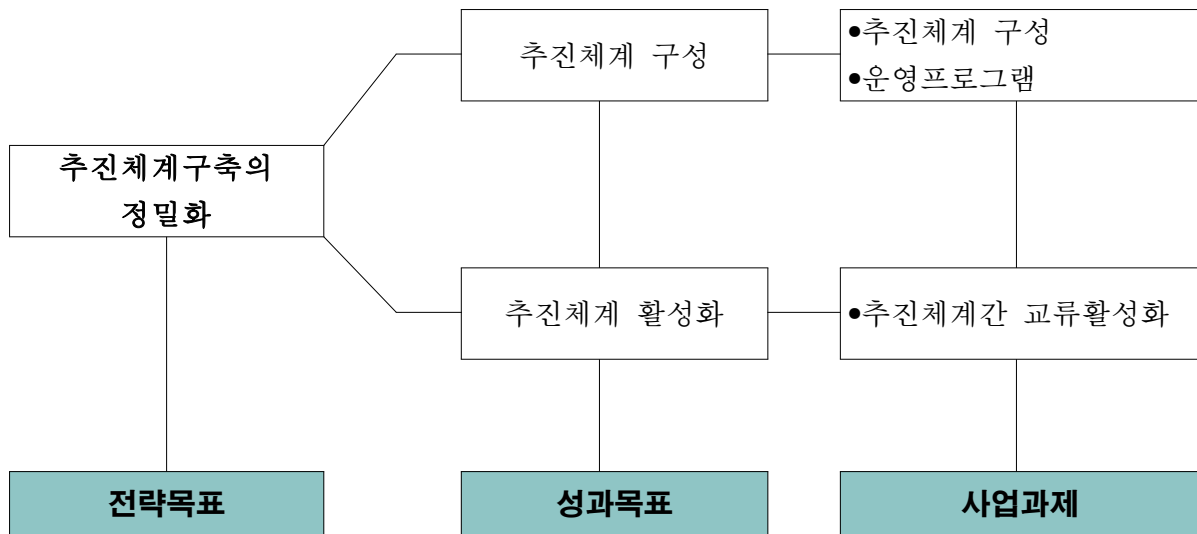
사업과제	지표명	측정단계	지표구분	측정형태
국내연수 프로그램	• 연수프로그램수	성과	결과	정량
	• 연수참여도	성과	결과	정량
	• 연수성과도	성과	결과	정성
	• 연수적합도	성과	결과	정성
해외연수 프로그램	• 연수프로그램수	성과	결과	정량
	• 연수참여도	성과	결과	정성
	• 연수성과도	성과	결과	정성
	• 연수적합도	성과	결과	정량

○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사업예산집행율, 인력투입율, 인력예산집행율, 네트워크 활용도를 지표를 설정하여 평가

<표VI-8> 성과목표 1-3 : 연수사업의 수행지표

사업과제	지표명	지표구분	측정형태
국내연수 프로그램	• 사업예산집행율	투입	정량
	• 인력투입율	투입	정량
	• 인력예산집행율	투입	정량
	• 네트워크활용도	투입	정성
해외연수 프로그램	• 사업예산집행율	투입	정량
	• 인력투입율	투입	정량
	• 인력예산집행율	투입	정량
	• 네트워크활용도	투입	정성

다. 전략목표 2 : 추진체계구축의 정밀화



1) 전략목표 성과지표 개발방향

- 신활력사업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산학관연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낙후 지역을 선도사업을 수행하는 시스템임. 특히 혁신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
- 제 2기 신활력사업은 기존의 추진체계를 더욱 정밀화하여 사업의 수월성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체계의 조직 구성 및 운영프로그램과 추진체계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주체간의 교류활성화에 역점을 둠.
- 따라서 신활력사업의 추진체계를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사업의 특성과 세부사업의 계획에 비추어 보아 실질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또는 얼마나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지를 성과지표를 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표VI-9> 전략목표 2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성과목표		세부사업 수	성과지표수
2-1	추진체계 구성사업	•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프로그램	
2-2	추진체계 활성화 사업	• 추진체계 교류프로그램	

2)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개발방향

□ 2-1 추진체계구축사업

- 신활력사업의 추진체계가 합리적으로 구축되어 있는지 또는 운영프로그램이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개발
-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프로그램은 효율성, 합리성, 체계성, 적정성과 운영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측정

<표VI-10> 성과목표 2-1 : 추진체계구축사업의 성과지표

사업과제	지표명	측정단계	지표구분	측정형태
추진체계 구성 운영프로그램	• 구성의 효율성	성과	결과	정성
	• 구성의 합리성	성과	결과	정성
	• 구성의 체계성	성과	결과	정성
	• 구성의 적정성	성과	결과	정성
	• 프로그램 운영율	성과	결과	정량
	• 프로그램 효과성	성과	결과	정성

-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프로그램의 세부과제의 수행지표는 각 프로그램의 지표를 교육프로그램의 평가를 위한 예산집행율, 전문인력 이용률, 인력투입율, 교육성과율 등으로 지표를 설정하여 측정.

<표VI-11> 성과목표 2-1 : 추진체계구축사업의 수행지표

사업과제	지표명	지표구분	측정형태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프로그램	• 사업예산집행율	투입	정량
	• 전문인력 이용율	투입	정량
	• 인력투입율	투입	정량
	• 교육성과율	투입	정성

□ 2-2 추진체계 활성화 사업

- 신활력사업의 추진체계의 활성화 사업은 추진체계간의 교류프로그램 운영을 제대하고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것임.

<표VI-12> 성과목표 2-2 : 추진체계활성화 사업의 성과지표

사업과제	지표명	측정단계	지표구분	측정형태
추진체계간 교류프로그램	• 추체간 교류수	성과	결과	정량
	• 교류프로그램의 활동성	성과	결과	정성
	• 참여기관의 인력투입율	성과	결과	정량
	• 교류프로그램의 효과성	성과	결과	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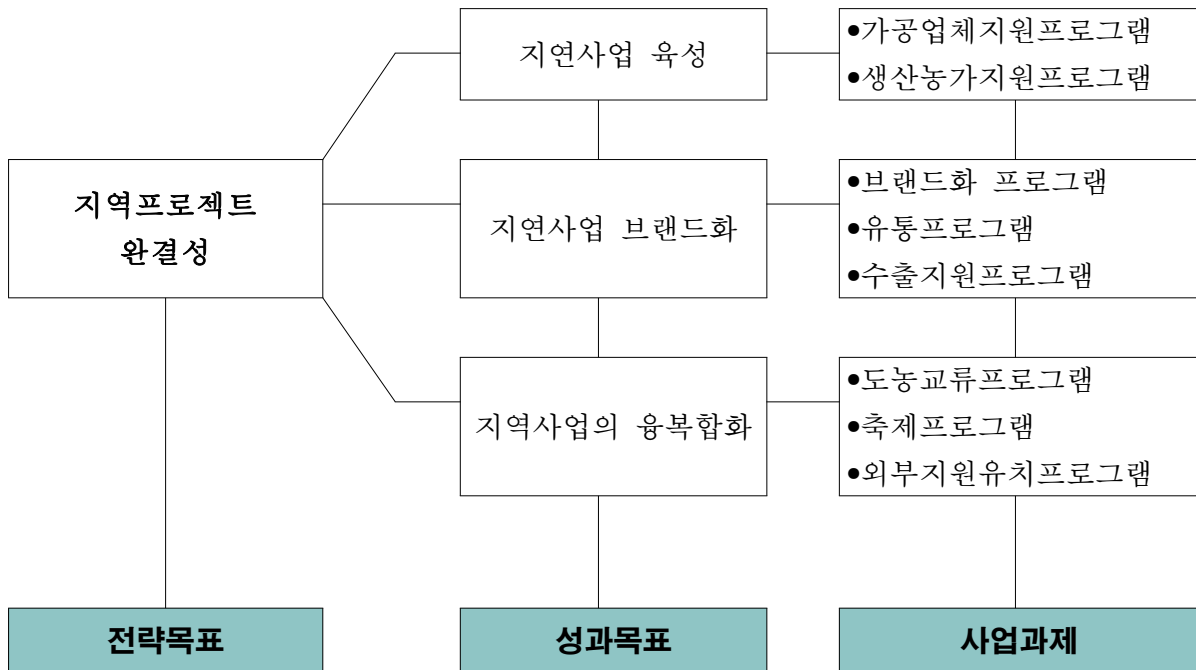
- 추진체계의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체계간의 교류프로그램은 추체간의 교류수, 교류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인력투입율, 효과성의 성과지표에 따른

수행지표로는 사업예산집행율, 인력투입율, 인력예산집행율, 교육참여율의 지표를 설정하여 측정함으로써 평가를 실시.

<표VI-13> 성과목표 2-2 : 추진체계활성화 사업의 수행지표

사업과제	지표명	지표구분	측정형태
추진체계간 교류프로그램	• 사업예산집행율	투입	정량
	• 인력투입율	투입	정량
	• 인력예산집행율	투입	정량
	• 교육참여율	투입	정성

라. 전략목표 3 : 지역프로젝트 완결성 증대



1) 전략목표 성과지표 개발방향

- 신활력사업의 ASP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체간의 역량강화를 바탕으로

로 추진체계의 활성화를 통한 선도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며, 결국 이는 지역프로젝트의 완결성을 위해 지연사업을 육성하고 지연사업의 브랜드화 및 융복합화 사업을 이루어 내는 것임.

- 신활력사업의 선도사업은 지연사업을 발굴 및 육성을 통한 브랜드화 및 융복합화 사업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따라서 신활력사업의 전략목표-3의 지역프로젝트 완결성 사업은 ① 지연사업의 육성사업 ② 지연사업 브랜드사업 ③ 지연사업이 융복합사업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주요과제는 각 사업별로 설정.

<표VI-14> 전략목표 3 :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성과목표		세부사업 수	성과지표수
3-1	지연사업	• 가공업체지원프로그램	
	육성사업	• 생산농가지원프로그램	
3-2	지연사업 브랜드사업	• 브랜드화프로그램	
		• 유통프로그램	
		• 수출지원프로그램	
3-3	지연사업의 융복합화사업	• 도농교류프로그램	
		• 축제프로그램	
		• 외부지원유치프로그램	

2)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개발방향

□ 2-1 지연사업육성사업

- 지연사업 육성사업은 가공업체 지원프로그램, 생산농가 지원프로그램으로 세부사업을 설정하여, 참여업체 및 참여농가의 수, 참여업체의 매출액, 고용율, 생산성 등 지표를 설정하여 성과관리.

<표VI-15> 성과목표 2-1 :지연사업육성사업의 성과지표

사업과제	지표명	측정단계	지표구분	측정형태
가공업체 지원프로그램	• 참여업체수	성과	결과	정량
	• 참여업체 매출액	성과	결과	정량
	• 참여업체 고용율	성과	결과	정량
	• 참여업체의 생산성	성과	결과	정량
생산농가 지원프로그램	• 참여농가수	성과	결과	정량
	• 생산농가의 소득증대	성과	결과	정량
	• 생산농가의 고용율	성과	결과	정량
	• 생산농가의 생산성	성과	결과	정량

- 지연사업육성사업의 세부과제의 수행지표는 각 프로그램의 지표를 교육프로그램의 평가를 위한 예산집행율, 전문인력이용률, 인력투입율, 매출증가율 등으로 지표를 설정하여 측정.

<표VI-16> 성과목표 3-1 : 지연사업육성사업의 수행지표

사업과제	지표명	지표구분	측정형태
가공업체 지원프로그램	• 사업예산집행율	투입	정량
	• 전문인력 이용율	투입	정량
	• 인력투입율	투입	정량
	• 매출 증가율	투입	정성
생산농가 지원프로그램	• 사업예산집행율	투입	정량
	• 전문인력 이용율	투입	정량
	• 인력투입율	투입	정량
	• 매출 증가율	투입	정성

□ 3-2 지연사업 브랜드사업

- 지연사업 브랜드화 사업은 브랜드화 프로그램 운영, 유통프로그램, 수출지원 프로그램으로 사업과제를 설정하여 성과지표를 개발

<표VI-17> 성과목표 3-2 : 지연사업브랜드사업의 성과지표

사업과제	지표명	측정단계	지표구분	측정형태
브랜드화 프로그램	• 브랜드화 수	성과	결과	정량
	• 브랜드화의 효과성	성과	결과	정성
	• 브랜드화의 경제성	성과	결과	정량
	• 브랜드화의 파급효과	성과	결과	정량
유통프로그램	• 유통업체 수	성과	결과	정량
	• 비용절감효과	성과	결과	정성
	• 유통시스템 간편성	성과	결과	정량
	• 유통정보화	성과	결과	정성
수출지원프로그램	• 수출업체수	성과	결과	정량
	• 수출실적(매출액)	성과	결과	정성
	• 수출지역의 다변화	성과	결과	정량
	• 수출지원프로그램	성과	결과	정량

- 지연사업 브랜드화 사업은 브랜드화 프로그램, 유통프로그램, 수출지원프로그램의 세부사업의 수행지표로는 사업예산집행율, 인력투입율, 인력예산집행율, 교육참여율의 지표를 설정하여 측정함으로써 평가를 실시.

<표VI-18> 성과목표 3-2 : 지연사업 브랜드사업의 수행지표

사업과제	지표명	지표구분	측정형태
브랜드화 프로그램	• 사업예산집행율	투입	정량
	• 전문인력 이용율	투입	정량
	• 인력투입율	투입	정량
	• 매출 증가율	투입	정성
유통프로그램	• 사업예산집행율	투입	정량
	• 전문인력 이용율	투입	정량
	• 인력투입율	투입	정량
	• 매출 증가율	투입	정성
수출지원프로그램	• 사업예산집행율	투입	정량
	• 전문인력 이용율	투입	정량
	• 인력투입율	투입	정량
	• 매출 증가율	투입	정성

□ 3-3 지연사업의 융복합화사업

- 지연사업의 융복합화사업은 도농교류프로그램, 축제프로그램, 외부자원유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신활력사업의 선도사업으로 성과지표 개발

<표VI-19> 성과목표 2-3 : 지연사업의 융복합화사업의 성과지표

사업과제	지표명	측정단계	지표구분	측정형태
도농교류프로그램	• 프로그램 수	성과	결과	정량
	• 경제적 효과	성과	결과	정성
	•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	결과	정량
	• 지역이미지	성과	결과	정성
축제프로그램	• 프로그램 수	성과	결과	정량
	• 관람객 참여율	성과	결과	정성
	• 경제적 효과	성과	결과	정량
	• 지역브랜드 이미지	성과	결과	정성
외부자원유치 프로그램	• 외부지원업체수	성과	결과	정량
	• 외부자금 유치율	성과	결과	정성
	• 경제적 효과	성과	결과	정량
	• 연관산업 파급효과	성과	결과	정성

○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사업예산집행율, 인력투입율, 인력예산집행율, 네트워크 활용도를 지표를 설정하여 평가

<표VI-20> 성과목표 3-3 : 지연사업의 융복합화사업의 수행지표

사업과제	지표명	지표구분	측정형태
도농교류프로그램	• 사업예산집행율	투입	정량
	• 전문인력 이용율	투입	정량
	• 인력투입율	투입	정량
	• 매출 증가율	투입	정성
축제프로그램	• 사업예산집행율	투입	정량
	• 전문인력 이용율	투입	정량
	• 인력투입율	투입	정량
	• 매출 증가율	투입	정성
외부지원유치프로그램	• 사업예산집행율	투입	정량
	• 전문인력 이용율	투입	정량
	• 인력투입율	투입	정량
	• 매출 증가율	투입	정성

마. 사업과제의 평가지표

■ 사업계획단계(Plan)의 평가지표

평가항목	세부평가지표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정부정책 및 종합계획과 부합하는가?
	지역주민 참여계획은 적정한가?
	계획수립을 위한 여론 수렴, 관련 절차를 충분히 이행하였는가?
	사업개발 규모가 적절한가?
	사업의 실행시기 및 기간은 적당한가?
	사업목적이 명확한가?
수요분석에 대한 적합성	수급분석을 철저히 수행하였는가?
	사업에 대한 수요분석의 데이터는 적합한가?
	사업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수요분석이 이루어졌는가?
	산업시장 환경분석을 철저히 수행하였는가?
계획내용의 충실성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산업 등)을 충실하게 수립하였는가?
	환경보전대책은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예기치 않은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계획이 마련되어 있나?
	사업일정, 예산, 인력 등이 각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나?
사업규모, 사업비의 적정성	재원 및 사업비 배분은 적정한가?
	투자재원의 조달에 대한 합리성은 있는가?
	사업의 규모는 적절한가?
	전체 및 개별사업에 대한 사업비분 적정하게 측정되었는가?

■ 사업실행단계(Do)의 평가지표

평가지표		세부평가지표
집행 단 계	사업의 원활한 집행여부	모니터링된 결과가 사업팀에 제대로 환류되고 있는가?
		모니터링은 잘되고 있는가?
		해당사업에 투입될 인적 물적 자원이 원활하게 집행되었나?
	사업의 문제발생시 대응체계	사업지연 등 문제발생시 집행계획을 재검토하였나?
		사업지연 등 문제발생시 대안을 재검토하였나?
		사업의 문제발생시 당면한 문제를 재검토하였나?
	시행과정의 적절성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 상황의 변화를 적절히 포착하여 대응하고 있는가?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 정책과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시행과정에서 주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제대로 알리고 있는가?
	시행과정의 효율성	운영방법의 개선에 의해 효율화를 기할 수 없는가?
		투입된 자원을 목표달성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가?
		일정계획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사업비 지출에 대한 데이터는 잘 정리되고 있는가?
		사업비 지출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가?
		해당사업의 사업비 지출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나?

■ 사업종료단계(Check)의 평가지표

평가지표		세부평가지표
종 료 단 계	해당사업의 목표달성도	당초 설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였는가?
		계획대비 실적비율은 어떠한가?
	해당사업에 따른 영향도	완료된 사업이 지역주민과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완료된 사업이 지역의 사회, 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완료된 사업이 지역의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완료된 사업에 관하여 관광객 등 외부인들은 만족하는가?
	지역민 만족도	지역면 고용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지역소득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예산 운용의 효율성	불필요한 곳에 예산을 낭비하지는 않았는가?
		예산운용에 관한 데이터는 잘 정리되었는가?
		예산추정범위내에서 옛나활용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바. 지표정의서

예시) 지역혁신역량강화 사업 - 전문가 교육프로그램 지표정의서

■ 측정단계 : 사업수행

지표구분	투입	사업명 : 지역혁신역량강화 사업	세부 사업	교육사업
측정형태	정량		단위 사업	전문가교육프로그램

지 표 명	사업예산 집행률															
지표정의	전문가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의 적정성															
측정방법	전문가 교육프로그램을 위해 배정된 예산에 대비하여 투입된 비용의 비율															
측정산식	$\left[\frac{\text{프로그램집행비용}}{\text{프로그램소요예산}} \right] * 100\%$															
측정사업연도	1	2	3	4	5	6	7	8								
관련통계 및 검증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집행비용 : 전문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출내역 ■ 사업계획 수립시 명시한 전문가 프로그램 예산내역 															
비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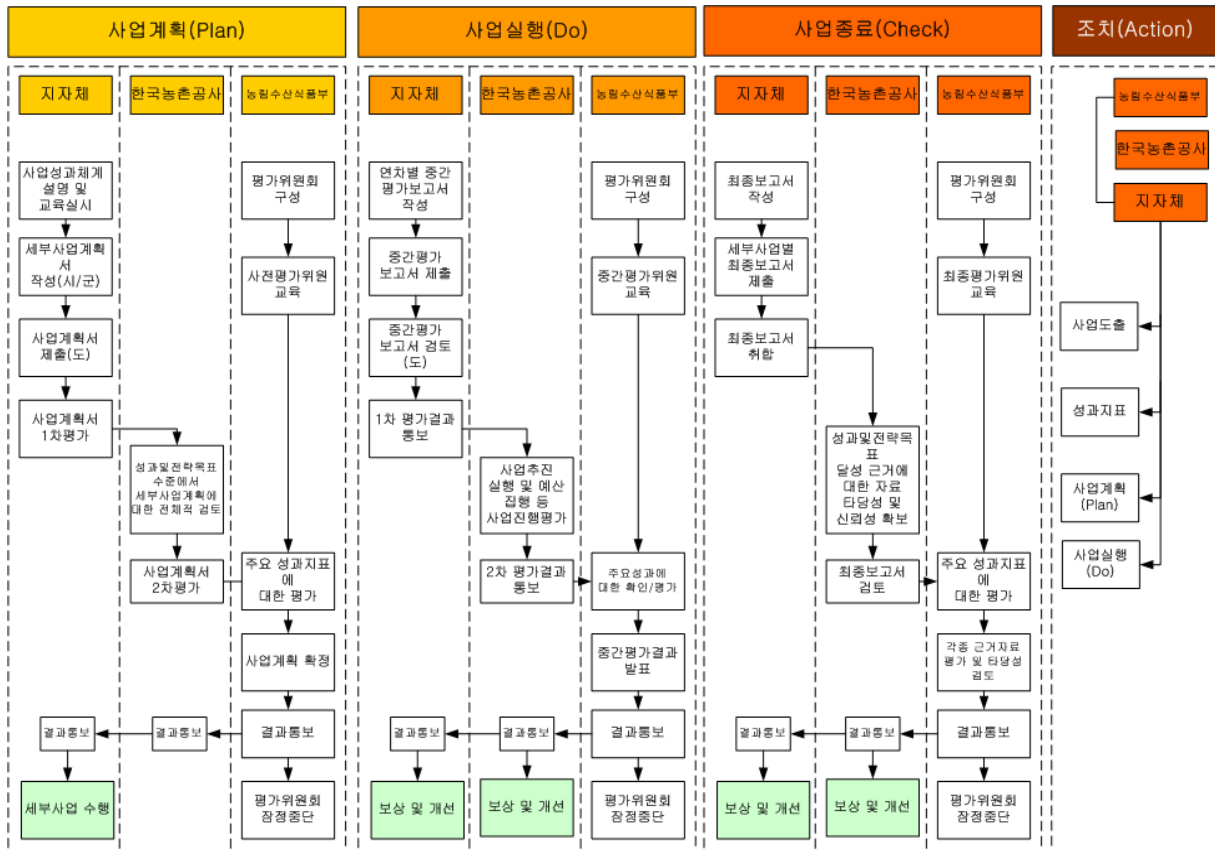
사업명	지역혁신역량강화	사업목적	역량강화
세부사업명	진문가 교육프로그램		

세부사업성과	지역혁신역량강화를 위한 추진주체의 교육프로그램
성과목표	진문가 교육프로그램

단계	지표명	지표구분	지표정의	측정형태	측정방법	측정산식	관련통계	측정연도						
								1	2	3	4	5	6	
사업수행	사업예산집행률	투입	예산투입의 적정성	정량	사업연도예산대비 집행률	$\frac{\text{프로그램집행비용}}{\text{프로그램예산예산}} *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비용:사업연도별 예산비용 집행예산:사업수행에 따른 집행비용 							
	인력투입률	투입	인력투입의 적정성	정량	사업연도인력대비 투입률	$\frac{\text{사업투입인원}}{\text{사업투입계획인원}} *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투입인원:사업수행을 위한 인력 사업투입계획인원:사업수행 인원 							
	인력예산집행률	투입	인력비용의 적정성	정량	인력투입예산대비 집행률	$\frac{\text{인력투입비용}}{\text{인력투입예산}} *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력투입비용:사업수행시확보한 인건비 인력투입예산:사업수행 인력투입 인건비 							
	교육성과률	투입	교육의 성과율	정량	교육대비 성과율	설문조항에 대한 응답점수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참가 및 교육에 따른 설문조사 							
성과목표	혁신역량기여도	결과	주체의 사업기여도	정성	역량강화 증가율	설문조항에 대한 응답점수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참가 및 교육에 따른 설문조사 							
전략목표	진문가체감도	결과	진문가의 체감정도	정성	참여도 정도	설문조항에 대한 응답점수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참가 및 교육에 따른 설문조사 							

4.3 MODEL-3 : 성과관리운영계획 수립

가. 기본방향



- 신활력사업의 성과관리운영계획 프로세스는 PDCA시스템하에서 사업계획단계(Plan), 사업실행단계(Do), 사업종료단계(Check), 조치단계(Action)으로 운영함.
- 사업계획단계(Plan)은 신활력사업의 가장 중요한 단계로서 신활력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 목표를 결정한 다음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결정함.
- 사업실행단계(Do)는 사업진행을 모니터링을 위한 단계로서 사업의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중간평가의 형태로 운영함으로써 사업의 실행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찾아 이를 개선하게 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높임.
- 사업종료단계(Check)는 사업단위 종료에 따른 결과를 확인하며, 사업이 연

속적인 사업인 경우는 매년 1년 단위로 사업을 평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업의 경우는 연속성을 지속하게 하고, 사업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개선을 시킴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높임.

- 조치단계(Action)은 사업의 최종평가 결과에 따른 환류체계로서 사업계획, 실행, 결과를 재검토함으로써 그에 따른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함.

나. 사업계획수립(Plan)

- 사업계획수립단계에서는 사업의 목적과 성과지표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그에 따른 사업계획서 작성법을 제시함으로써 각 지자체의 사업제안을 평가하는 단계임.
- 사업계획서는 1차적으로 지자체에서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이를 취합하여 한국농촌공사에서 사전심사 및 평가를 통하여 농림수산식품부의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여 이를 통보함으로써 사업 선정
-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추진단(한국농촌공사)은 사업계획이 성과목표 달성에 타당성 여부 평가와 사업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의 개발을 위해 평가위원회 구성
 - 성과제표는 성과관리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표 Pool을 근거로 개발
- 사업성과체계 설명 및 교육실시
 - 평가추진단은 각 센터 담당자 및 세부사업 담당자, 또는 평가위원회를 대상으로 성과평가관리계획에 대해 설명
- 성과 및 전략목표 수준에서 세부사업계획의 전체적 검토
 - 평가위원단은 각 사업계획서에 대해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사업여부와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평가지

표에 따라 사업선정 우선순위를 결정

- 주요 성과지표/목표치에 대한 점검 및 확정
 - 평가위원회는 평가추진단(평가추진주체)이 제시한 사업계획과 주요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해 전반적인 타당성과 적절여부를 점검 및 확정
- 결과 통보
 - 평가위원에서 최종 확정된 사업을 평가추진단(평가추진주체)에 통보하고 이는 평가추진단은 지자체(시도)에 통보함으로써 사업 착수

다. 사업실행단계(Do)

- 신활력사업의 사업실행단계는 사업의 진행여부를 점검하고 사업집행과정 등을 점검 및 모니터링함으로써 사업의 진행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를 해결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
- 사업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애로사항을 전문가 및 평가위원들의 컨설팅 등을 통하여 사업진행의 수월성을 제공하고, 사업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사업단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진단을 실시
-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추진단(평가추진주체)은 사업계획이 성과목표 달성에 타당성 여부 평가와 사업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의 개발을 위해 평가위원회 구성
 - 성과제표는 성과관리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표 Pool을 근거로 개발
 - 사업의 중간평가지표에 의해 사업평가 실시
- 사업성과체계 설명 및 교육실시
 - 평가추진단은 각 센터 담당자 및 세부사업 담당자, 또는 평가위원회를 대상으로 성과평가관리계획에 대해 설명
- 연차별 중간평가보고서 작성
 - 각 사업단의 세부사업 담당자는 사업초기에 계획한 사업목표의 달성수준

을 평가하기 위해 보고서를 작성

- 사업계획서 확정된 지표를 근거로 기본데이터 및 성과지표를 근거자료 정리 및 목표달성에 미흡한 부분은 근거자료를 마련하여 평가에 대비

○ 성과 및 전략목표 수준에서 세부사업계획의 전체적 검토

- 평가위원단은 각 사업계획서에 대해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사업여부와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사업의 진행을 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의 수월성 제공

○ 주요 성과지표/목표치에 대한 점검 및 확정

- 평가위원회는 평가추진단(평가추진주체)이 제시한 사업계획과 주요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해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사업의 진행사항을 점검

○ 결과 통보

- 평가위원에서 사업의 중간평가결과를 평가추진단(평가추진주체)에 통보하고 이는 평가추진단은 지자체(시도)에 통보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

라. 사업종료단계(Check)

○ 평가추진단(한국농촌공사)는 신활력사업의 수행 후 계획한 최종 성과목표에 달성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평가위원회 구성을 구성하고 성과지표에 따른 사업평가

○ 평가위원에서는 평가지표에 의거하여 최종보고서 작성 지침과 작성방법을 통보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게 함.

○ 사업 최종보고서 작성

- 각 지자체의 세부사업 담당자는 연차별 보고서를 작성하되, 보고된 사업 중간보고서를 포함하여 세부사업 평가보고서 작성
- 사업계획서 확정된 지표를 근거로 기존 데이터 및 성과지표 근거자료 정리하여 목표달성에 미흡한 부분은 근거자료를 마련하여 평가에 대비

- 최종보고서 최종성과 취합
 - 각 지자체에서 작성한 최종보고서를 시도에서 취합하여 평가추진단(평가추진주체)에 제출하여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실시

- 성과 및 전략목표 수준에서 세부사업계획의 전체적 검토
 - 평가위원단은 각 사업계획서에 대해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사업여부를 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른 수정 및 보완을 지시

- 최종성과에 대한 평가 및 성과평가 결과발표
 - 평가위원회는 평가추진단(평가추진주체)이 취합하여 검토한 최종성과보고서를 평가 하여 성과달성에 대한 등급별 성과점수 부여 및 성과목표체계별 성과점수의 도출

- 최종성과의 결과에 대한 보상 실시 및 성과제언 제시
 - 세부사업별, 성과목표별, 전략목표별 신활력사업의 최종성과에 대한 평가내용 실시하고 성과목표에 충분히 달성한 세부사업, 목적사업에 대해서는 성과평가결과에 대한 보상내용을 마련하여 보상을 실시
 - 성과달성이 미흡한 세부사업, 성과목표, 전략목표에 대해서는 세부사업담당자와 각 지자체에 성과달성 미흡원인에 대한 분석 및 이에 대한 해결책이나 대안 제시

바. 조치단계(Action)

- 신활력사업의 사업평가 후 성과목표 달성여부를 점검하여 사업전체의 목표달성도를 점검하여 사업계획수립, 성과지표, 사업성과 관리운영계획을 재검토

- 신활력사업의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환류하여 문제점을 점검하고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VII. 향후 농촌정책 변화에 따른 성과관리 모형 방향

1. 농어촌정책의 변화 방향

1.1 농어촌정책의 필요성

- 농어촌 산업을 통한 농어업 및 농어촌 문제의 해결
 - 우리의 농어촌은 WTO가 주도하고 있는 시장개방과 농수축산물의 수입증가, 농어업인력의 노령화와 계속되는 농어촌 인구감소 등 대내외 여건의 악화로 위를 맞고 있음.
 - 위기 해결을 위해 농어촌 지역개발과 농어업 구조개선 정책을 추진하여 왔지만, 농수산물 가공, 저장, 유통사업의 기술개선이나 농어촌산업화 등 농어촌 경제활성화의 기반조성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 간접적 형태의 산업지원에서 본격적인 농어촌산업정책이 필요
 - 그간 농촌활력증진사업, 지역농업클러스터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산업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어느 정도 기반을 축적하여 왔음.
 - 지역특산물의 산업화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원동력이며, 이를 통한 산업기반으로서의 유지 및 발전은 농어업 소득증대 및 풀뿌리 차원에서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음.
 - 농어촌의 산업화지원은 농특산물, 전통문화, 경과 등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식품업, 제조업, 문화, 관광, 서비스업 뿐만 아니라 장소·브랜드·이미지마케팅 등 고부가가치 산업분여로의 확산이 가능함,

- 농어촌산업은 전후방연관효과를 높일 수 있는 내재적 강점 보유
 - 농림수산물을 원료로 한 2차 산업육성은 1차 농림수산업 분야의 경제적 동반상승 창출
 - 원료인 농림수산물이 갖는 자연경관성과 역사성을 토대로 3차·문화·관광산업과 연계하기 용이함.

- 농어촌 기업은 일반기업과는 달리 전주기적 관리시스템 필요
 - 기업의 주원료인 농림수산물의 재배면적 관리가 2차적인 관건
 - R&D 중심의 기업으로 발전시켜 농업-기업-서비스업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전략으로서의 산업정책이 필요함
 - 농어촌산업의 장점인 1,2,3차 융복합화를 전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농어촌산업정책’으로 농가소득향상, 기업육성, 지역경제활성화를 동시에 추구

- 농어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을 선도하는 농어업산업 분야를 선정하고, 이를 통한 지자체의 자율적인 발전계획을 농어촌산업육성 방향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어촌지역에 인재와 기술과 기업의 선순환 시스템 정착을 위한 ‘산업정책’이 필요함.

1.2 농어촌업정책의 목표와 비전

- 규모화·품종개량의 농어업 성과를 기반으로 명품화 추구
 - 자동선별기(RPC), 지역브랜드 관리 등을 통해 농특산물 명품화로 부가가치 증대 및 수출기반 확대

- 농림축산특산물의 가공을 통한 2차 산업화 추구
 - 산업화 가능 자원분석·제품화를 위한 R&D지원·창업마인드 교육 등을 통해 2차 산업화 분위기 확산

- 향토자원의 2차 산업화가 활기를 띠는 지역의 농어촌형 산업클러스터화 추구
 - 창업·관련기업유치·R&D 중심 지자체 연구소·마케팅 및 수출지원·기업 및 관련 향토자원 서비스업이 집적된 특화단지 조성 등으로 클러스터형 산업발전 추구

- 특색 있는 향토자원을 활용하여 1,2,3차 융복합화 지역경제 구조고도화 추구
 - 농특산물·문화자원·자연경관·관광자원을 활용한 1,2,3차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복합산업구조 창출

- 이미지마케팅, 장소마케팅, 체험마을, 농특산상품개발, 산지직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 정착
- 향토자원의 기반조성을 바탕으로 외부기업을 유치하여 지역산업의 비전 강화 추구
 - 지역에서 농어촌산업 발전의 한계 등을 극복하기 위해 도시자본 및 기업을 유치하여 도약의 계기 마련
- 자연순환형 녹색환경산업을 통한 새로운 영역의 개척
 - 해적생물, 농특산물 부산물, 축분 등을 활용한 녹색환경산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녹색국가 성장의 새로운 기반 구축

2. 농산업사업의 정책목표의 모형

- 농어촌사업은 “농촌자원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통한 일자리 및 소득창출”이라는 비전하에 1) 농림수산물의 명품화, 2) 농어촌형 산업클러스터화, 3) 1,2,3차 융복합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4) 향토자원 발굴 및 산업화 역량강화, 5) 향토식품산업 및 체험 휴양서비스업 활성화 6) 외부기업 유치 및 투자여건개선 등 사업과제를 도출.
- 농어촌사업의 추진전단계 및 목표는 1) 향토선도산업 선정, 2) 지역특화발전계획 수립, 3) 농어업, 명품화 산업, 클러스터화, 3차 고부가가치화 설정하여 인적자원 양성을 통한 농산업기업 경쟁력 강화로 완결성
- 농어촌사업의 7대 기본전략으로는 1) 선도향토산업 관련 농어촌 생산기반 정비, 2) 인력양성 및 R&D 기반구축, 3) 향토창업보육, 4) 관광·문화·서비스 산업육성, 5) 마케팅 수출지원, 6) 산업입지지원, 7) 투자활성화 및 규제완화로 성과관리 모델을 설정.

2.1 EU농촌개발정책의 변화과정 및 시사점

가. 종전(2007년 이전)의 EU 농촌개발정책과 평가체계의 변화과정 및 문제점

< EU 농촌개발정책과 평가체계의 변화과정 >

- EU의 농촌개발정책은 농업환경의 변화와 농업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요구에 따라 공동농업정책의 틀 안에서, 다양한 정책들과 시행방법이 도입되고 변화해 오다가, 2000년 이후 농촌개발정책으로 통합되어 체계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 1970년대에는 “농업구조현대화”와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이 도입되었으며, 특히 유럽지역개발기금(ERDF)이 창설되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개발정책이 도입되었다.
- 1980년대에는 조건불리지역 지원정책에서 농업과 비농업부문이 통합되고, 지중해지역 개발정책에서 다년차 정책프로그램이 처음 도입되었으며, 농업구조현대화를 위한 구조기금의 운영이 체계화되었다.
- 1990년대에는 환경정책이 강화되고, “코크”선언(1996)을 계기로 농촌개발정책에 대한 개념과 운영방향이 정립되었으며, 지역의 개발주체들이 사업을 주도하는 "LEADER"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 ▶ 정책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는 1970년대와 80년대까지는 별도의 규정을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행정차원에서의 재정집행결과에 대한 보고서과 일부지역에서의 시행성과에 대한 시범적인 평가와 분석이 시행되었다.
- ▶ 그러나 1990년대 LEADER 프로그램의 도입, 환경정책 및 사회정책의 강화, 공동농업정책의 예산규모 확대를 계기로 정책시행 성과, 집행 투명성, 정책 효율성 등에 대한 유럽의회와 납세자들의 요구증가로 정책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체계가 도입되게 되었다.
- 2000년대 공동농업정책은 기존에 시행해오던 여러 관련 정책들을 “농촌개발정책”으로 통합하고 정책기금도 기존의 EAGGF (농업지도보장기금)을 EAGF (지도기금)과 EAFRD(농촌개발기금)으로 분리하였다.
- 2000~06년 기간 동안의 “농촌개발정책”은 22개의 정책수단(Policy Measures)과 3개 목표를 설정하고, 각 회원국별로 정책수행방법, 정책수단별 지원재정의 배정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 EU의 지속적인 회원국확대와 정책수단들의 다양화로 인해 EU 공동농업정책을 위한 행정과 정책관리체계는 더욱 복잡해지고 관료화되었으며, 일부 방식들은 회원국과 지자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 이에 농촌개발정책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주체들의 참여와 책임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회원국과 지자체들에 대한 정책수행의 자율성 부여를 대폭 확대하였다.
 - 또한 이와 병행하여 분명한 기준과 엄격한 감독 및 평가체계를 갖춘 분권화된 정책 모델을 도입하였다.

— < 종전의 농촌개발정책 평가체계의 문제점 > —

- ▶ 2000~06년 기간 동안 시행된 “농촌개발정책”에 대한 회원국별 평가는, 정책의 기본구조가 22개에 달하는 정책수단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고, 각 회원국들은 이러한 수단들을 회원국별 농촌개발 및 관련정책별로 구성된 시책들로 재편성하는 등 복잡성의 문제가 계속 드러났다.
- ▶ 분권 및 자율성과 이에 따른 정책수행 및 결과에 대한 평가를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복잡성과 정책수단 중심의 체계로 인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못하고, 정책시행 결과를 중심으로 취합하는 평가수준과 22개 정책수단들에 대한 회원국별 평가의 복잡성으로 인해 회원국간의 비교와 시행초기와 시행 후의 비교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였다.
-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EU 는 공동정책의 혁신을 위해 2003년 리스본 전략회의와 2005년 브뤼셀 정상회담에서 전례적인 차원에서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이러한 전략목표에 따라 회원국별로 하위목표와 정책수단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도입 2007~13년 기간 동안에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나. 현행(2007~13년) EU 농촌개발정책 평가체계의 시사점 및 적용가능성

— < 현행(2007~13년) EU 농촌개발정책 평가체계의 시사점 > —

- EU는 농촌개발정책 추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론으로 모든 부문을 수평적으로 망라하는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중장기적인 과제들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적인 정책추진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책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도 종합적이고 수평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보다는 핵심전략목표의 성취수준에 집중되어 있다.
- EU의 농촌개발정책 프로그램은 회원국과 지자체가 지역여건의 특성과 정책수행의 자율성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해 중앙정부격인 EU 집행위원회는 과거의 정책수단중심의 체계를 전략목표 중심의 체계로 전환하고, 회원국별로 또는 광역지자체별로 수립된 전략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있다.
 - 핵심전략목표, 하위 목표, 정책수단이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정책수단의 채택을 위한 지역별 여건의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평가체계도 개별정책수단 시행의 얻어진 산출 및 결과, 그리고 전략목표의 성취수준을 평가하는 종합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도출할 수 있도록 논리적이면서도 단순화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다.
- 평가체계는 정책수행결과는 물론 정책프로그램 수립, 시행, 평가 및 피드백 등 정책프로그램의 수행 체계 및 관리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수립된 정책프로그램의 사전평가, 중간평가, 사후평가 체계와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다.
- 중간평가는 그 결과를 토대로 다음 기간의 정책프로그램은 수립하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평가결과를 피드백하는 효과를 강화한 것이다.
- 회원국들의 평가역량을 강화, 경험의 축적 및 공유를 위하여 플랫폼을 구축하여 유럽농촌개발 네트워크의 지원과 농촌개발정책 주제연구 및 종합평가를 추구하고 있다.

< EU의 성과관리모델의 한국에의 적용가능성 >

- 명확한 목표체계를 갖춘 성과관리모델

한국의 농업·농촌정책 사업의 하나인 신활력사업 만 보더라도 철저한 중앙정부 중심의 목표관리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가 명확한 정책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사업계획 수립 시, 이러한 정책목표를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에 설정하도록 일임하고 있다. 이로 인해 평가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평가를 하기 위한 성과지표로 활용되는 고용창출율, 매출액 등도 매우 자의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이에 대한 검증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왜 이와 같은 목표를 갖게 되었는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EU처럼 확실한 정책목표와 더욱 세분화한 하위목표의 개념을 가지고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목표관리체계를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역할의 구분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사업 평가제도 아래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즉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정책실행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단순히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순위메기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진정한 의미의 성과관리

모형 속에서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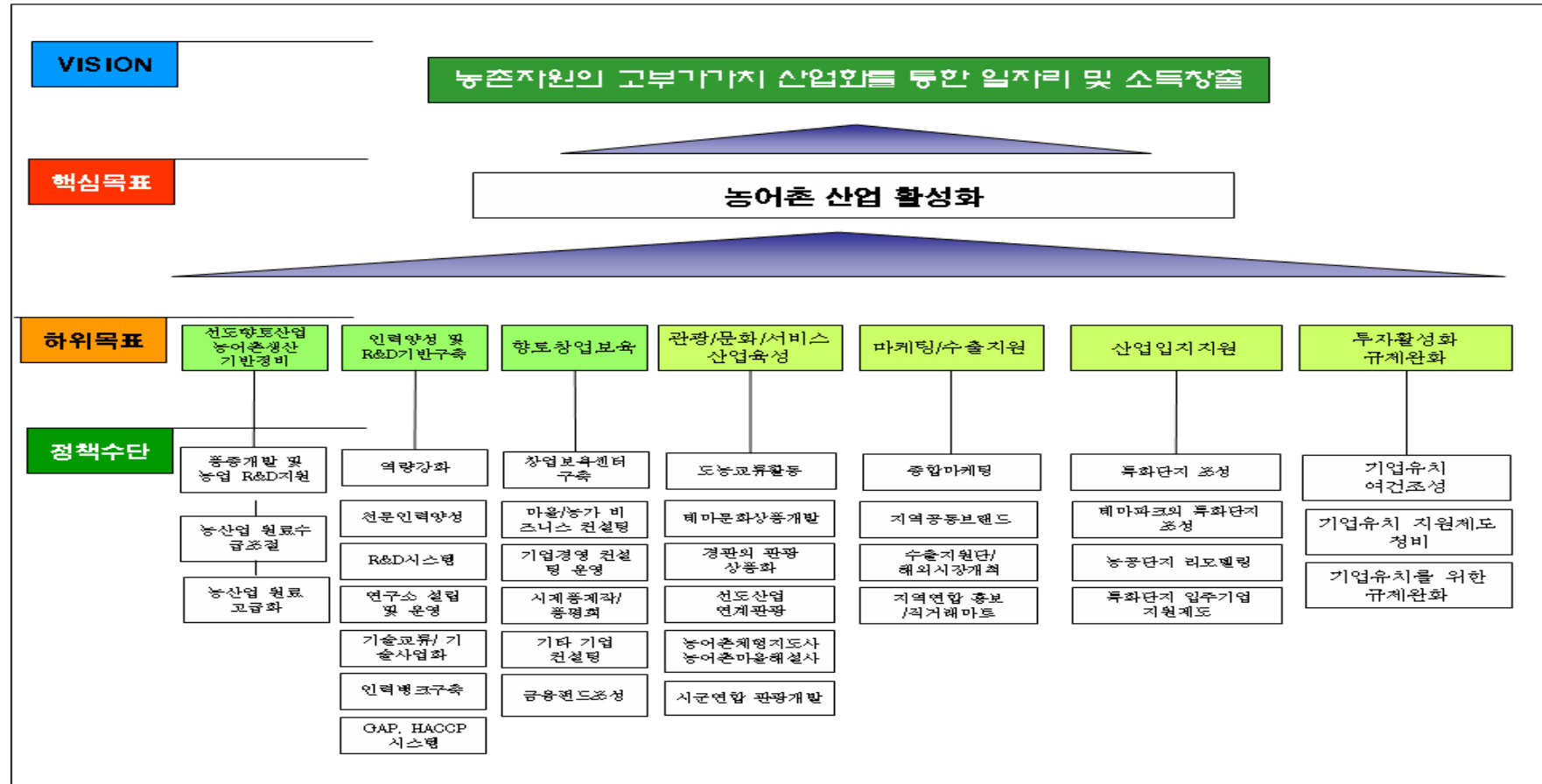
EU의 사례를 보면 이 부분이 명확하다. 중앙정부의 역할은 첫째, 명확한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하위목표체계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지역에서는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수단을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를 결정하기만 하면 된다.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농촌정책사업의 대부분은 상향식 사업방식으로서 지역 스스로가 사업의 계획수립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대한 심사·평가는 중앙정부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역량 등을 고려해 볼때, 아직까지는 사업계획의 상위목표인 정책목표 및 하위목표까지는 중앙정부에서 설정해 주고 이에 맞추어 각 지자체에서 정책수단 및 활동들을 취사선택할 수 있는 성과관리모델을 개발하여 사업을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최종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계획평가의 중시

EU의 경우를 보면 기존 계획이 끝나기 2년 전부터 계획수립에 대한 확실한 평가에 진입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계획의 부분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상위목표체계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수단을 확보하는데 있어 중앙과 지방이 밀접하게 협조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성과관리의 모델부분도 우리의 정책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모델도 의미 있는 모델이기는 하나 평가중심의 모델로 구성되어 있어, 향후 포괄보조금등으로 농촌정책의 변화를 감안해 볼 때, EU의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림Ⅶ-1> 농어촌사업의 정책목표 모형



핵심목표	하위목표	정책수단
농어촌 산업 활성화	A. 선도향토산업 농어촌생산기반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종개발 및 농업 R&D 지원 • 농산업 원료수급조절 • 농산업 원료고급화
	B. 인력양성 및 R&D기반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량강화 • 전문인력양성 • R&D 시스템 구축 • 연구소설립 및 운영 • 기술교류/기술사업화 • 인력뱅크 구축 • GAP, HACCP 시스템구축
	C. 향토창업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보육센터 구축 • 마을/농가 비즈니스 컨설팅 체계구축 • 기업경영컨설팅 체계구축 • 시제품 제작/홍보체계구축 • 기타 기업컨설팅 체계구축 • 금융펀드 조성/지원확대
	D. 관광/문화/서비스 산업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농교류 체계구축 • 테마문화상품개발 • 경관의 관광상품화 • 선도산업과 관광연계 강화 •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해설사 등 양성 • 시군간 관광개발 연계강화
	E. 마케팅/수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마케팅 체계구축 • 지역공동브랜드 운영 • 해외시장개척 지원 • 지역연합홍보/직거래장터운영
	F. 산업입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화단지조성 • 테마파크의 특화지원 • 농공단지 리모델링 지원 • 특화단지 입주기업 지원
	G. 투자활성화 규제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유치 여건조성 • 기업유치 지원제도 정비 • 기업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3. 농어촌사업의 성과관리 방향

3.1 정책목표 서열

정책은 필요에 정책목표 및 정책수단을 상위에서 하위 방향으로 핵심목표 (Principal Objectives), 각 핵심목표의 하위목표(Sub-Objectives), 정책수단 목표(Measures Objectives), 정책수단활동(Measure Activity) 으로 서열화하여 정의

핵심정책 목표(또는 전략적 목표) 등 정책목표 및 정책수단들은 정책프로그램의 시행출발시점에서의 목표 및 여건을 토대로 SWOT 분석을 통해서 얻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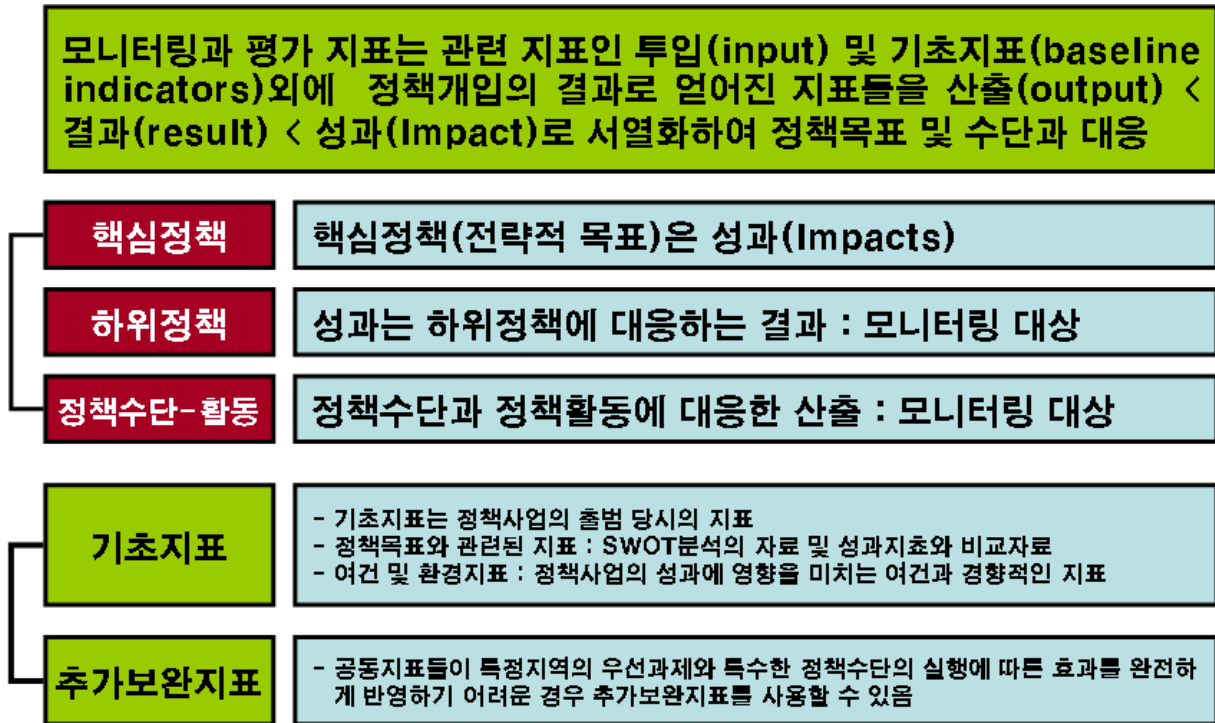
정책목표의 서열은 정책프로그램의 목표들을 분석하고 각 지역단위의 정책개입이 글로벌 정책목표의 달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수단임

서열화된 정책목표는 EU 정상회의에서 설정된 사항을 종합 (경쟁력, 환경, 농촌경제)하여 지침에 명기된 사항이며 각 세부정책 사항들도 이를 근거로 작성

- 정책은 필요에 정책목표 및 정책수단을 상위에서 하위 방향으로 핵심목표 (Principal Objectives), 각 핵심목표의 하위목표(Sub-Objectives), 정책수단 목표(Measures Objectives), 정책수단활동(Measure Activity) 으로 서열화하여 정의
- 핵심정책 목표(또는 전략적 목표) 등 정책목표 및 정책수단들은 정책프로그램의 시행출발시점에서의 목표 및 여건을 토대로 SWOT 분석을 통해서 얻어짐
- 정책목표의 서열은 정책프로그램의 목표들을 분석하고 각 지역단위의 정책개입이 글로벌 정책목표의 달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수단임
- 서열화된 정책목표는 EU 정상회의에서 설정된 사항을 종합 (경쟁력, 환경,

농촌경제)하여 지침에 명기된 사항이며 각 세부정책 사항들도 이를 근거로 작성

3.2 지표의 서열화



○ 모니터링과 평가 지표는 관련 지표인 투입(input) 및 기초지표(baseline indicators)외에 정책개입의 결과로 얻어진 지표들을 산출(output) < 결과(result) < 성과(Impact)로 서열화하여 정책목표 및 수단과 대응

- 핵심정책(전략적 목표)은 성과(Impact) : 평가대상
- 이러한 성과(Impacts)는 하위정책에 대응하는 결과(results) : 모니터링 대상
- 정책수단과 정책활동에 대응한 산출(outputs)의 총합 :모니터링 대상

○ 중앙정부에서는 EU에서 처럼 “공동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에서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동지표(common indicators)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 투입지표 : 사업계획에 기초한 예산집행 또는 자원의 배분지표
- 산출지표 : 정책활동을 시행하기 위해 투입된 자원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실현된 결과 (예 : 교육에 참여한 농업인수, 투자자금을 지원받은 농민수 및 집행된 투자규모 등)
- 결과지표 : 정책개입을 통해서 얻어지는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효과, 수익자의 행동, 역량, 성과에 대한 변화된 지표정보가 제공됨 (물리적 지표 또는 화폐로 표시가능, 예 : 신규로 창출된 고용, 교육훈련의 결과)
- 성과지표 : 정책개입을 통해 직접적으로 얻어진 영향 차원을 넘어서, 정책사업 프로그램 전체가 미치는 성과로 핵심정책목표(또는 전략적 정책목표)와 대응됨 (예 : 농촌지역의 고용증진, 농업부문의 생산성 향상, 재생에너지 생산증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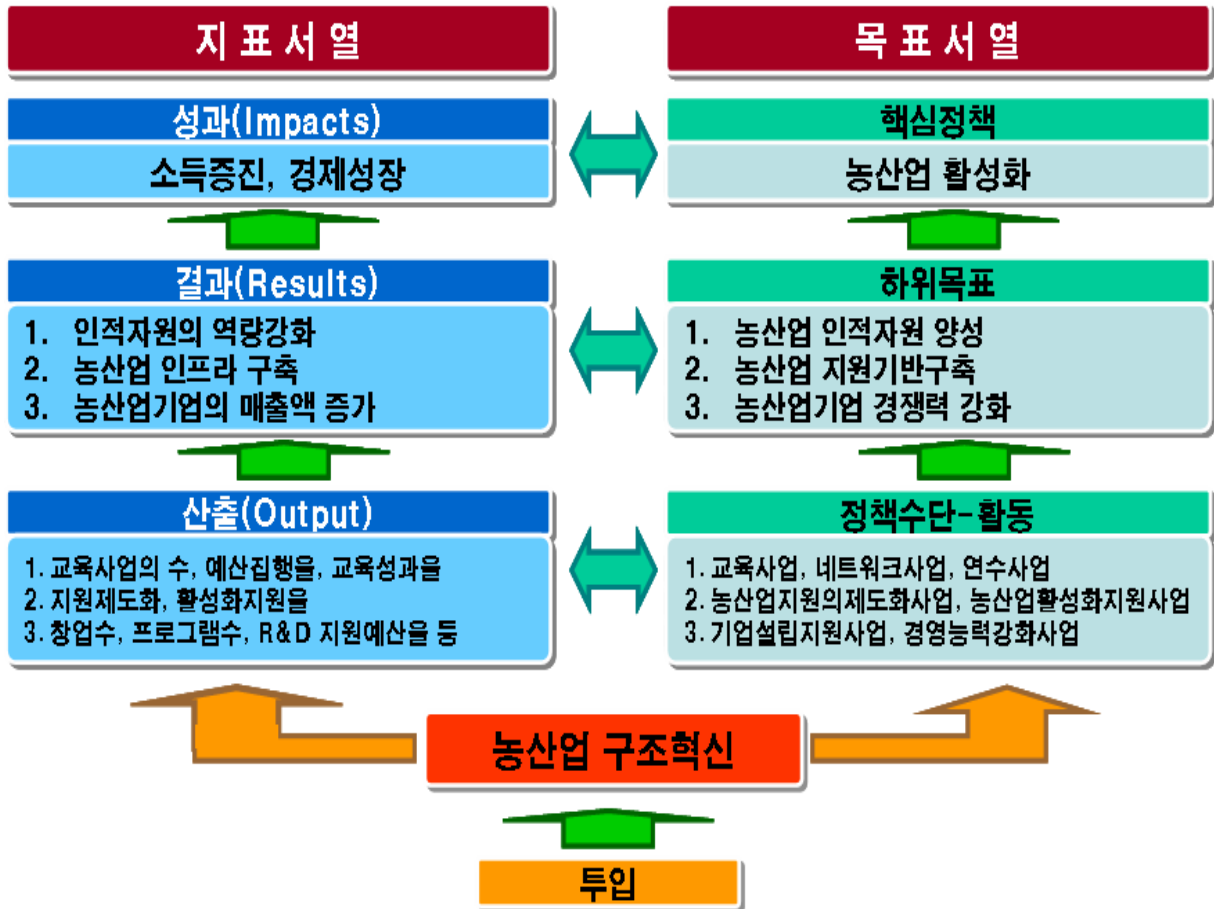
※ 기초지표(baseline indicators)

- 기초지표는 정책사업의 출범 당시의 지표
- 정책목표와 관련된 지표 : SWOT 분석의 자료 및 성과지표와 비교자료
- 여건 및 환경 지표 : 정책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여건과 경향적인 지표들, SWOT 분석 자료 및 성과지표 평가에 대한 영향평가 자료로 활용

※ 추가보완지표 (Additional Indicators)

- 공동지표들이 특정 지역의 우선과제와 특수한 정책수단의 실행에 따른 효과를 완전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 추가보완지표를 사용할 수 있음

3.3 농어촌정책의 적용



- 핵심목표 (Principal Objectives)1(Axis 1) : 구조조정, 개발, 혁신에 기초한 농업 및 임업 경쟁력 강화
- 하위목표 (Sub-Objectives)
 - 1.1. 농산업 인적자원 양성
 - 1.2. 농산업 지원기반 구축
 - 1.3. 농산업기업 경쟁력 강화
- 정책수단 (Measures Objectives ; 1.1.에 대한 사례)
 - 1.1.1. 교육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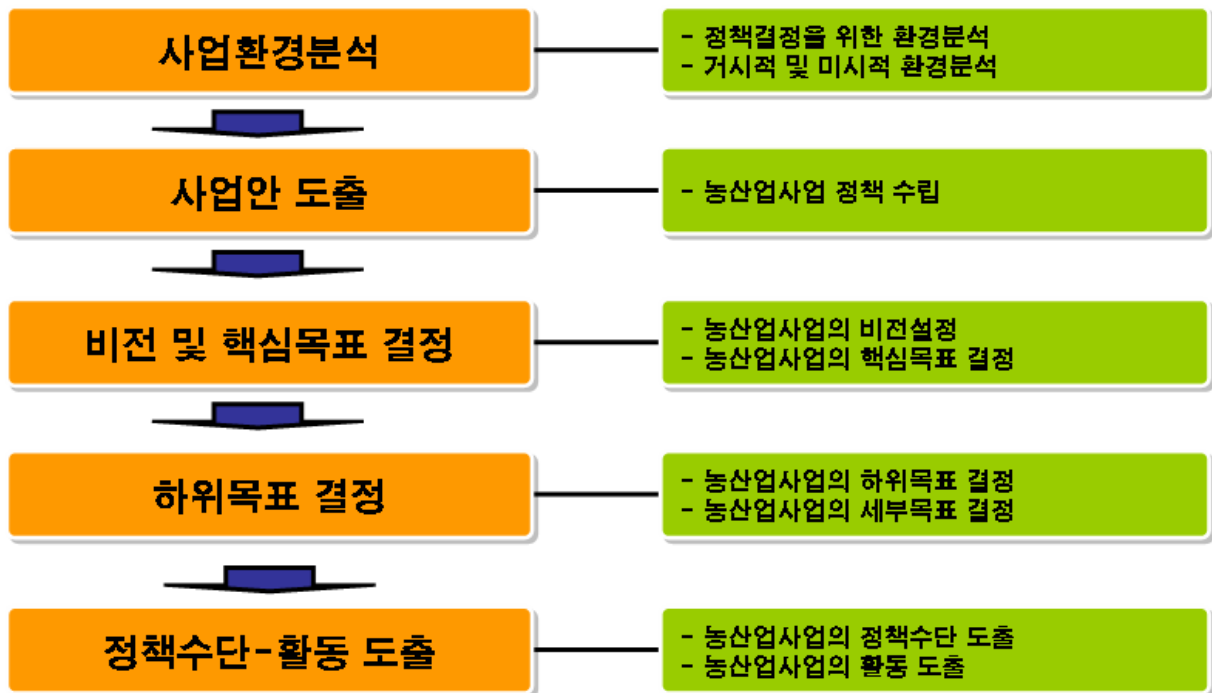
1.1.2. 네트워크사업

1.1.3. 연수사업

- 정책활동(Measure Activity) : 농식품임업무분의 종사자들에 대한 직업훈련, 정보화활동, 지식 및 정보보급 등

4. 농어촌산업의 성과관리 PROCESS

4.1 목표체계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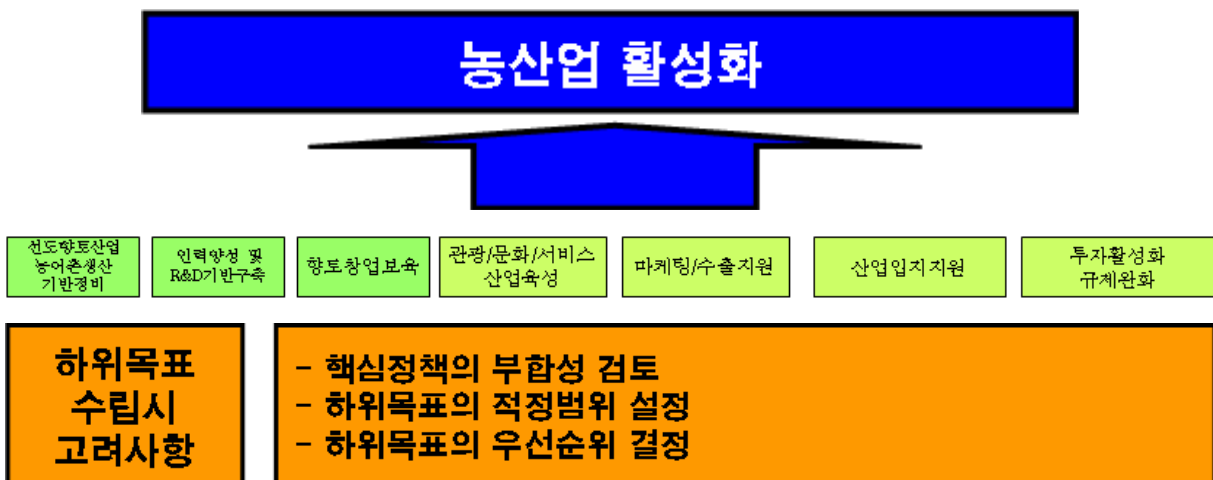
가. 비전 및 핵심정책 도출

- 비전은 중장기적으로 이루어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의미하며, 농산업 정책의 여건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하며, 핵심정책 목표는 정책프로그램 시행출발시점에서 목표 및 여건을 토대로 SWOT분석을 통해 얻어내야 함.

비 전	농촌자원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한 일자리 및 소득창출
	비전은 중장기적으로 이루어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의미하며, 농산업 정책의 여건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함
핵심정책	농어산업 활성화
	핵심정책 목표는 정책프로그램의 시행출발시점에서 목표 및 여건을 토대로 SWOT분석을 통해 얻어냄
핵심정책 수립시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내부 환경분석 - 농촌외부 환경분석 - 주요 정부정책 패러다임 분석 - 정부부처의 정책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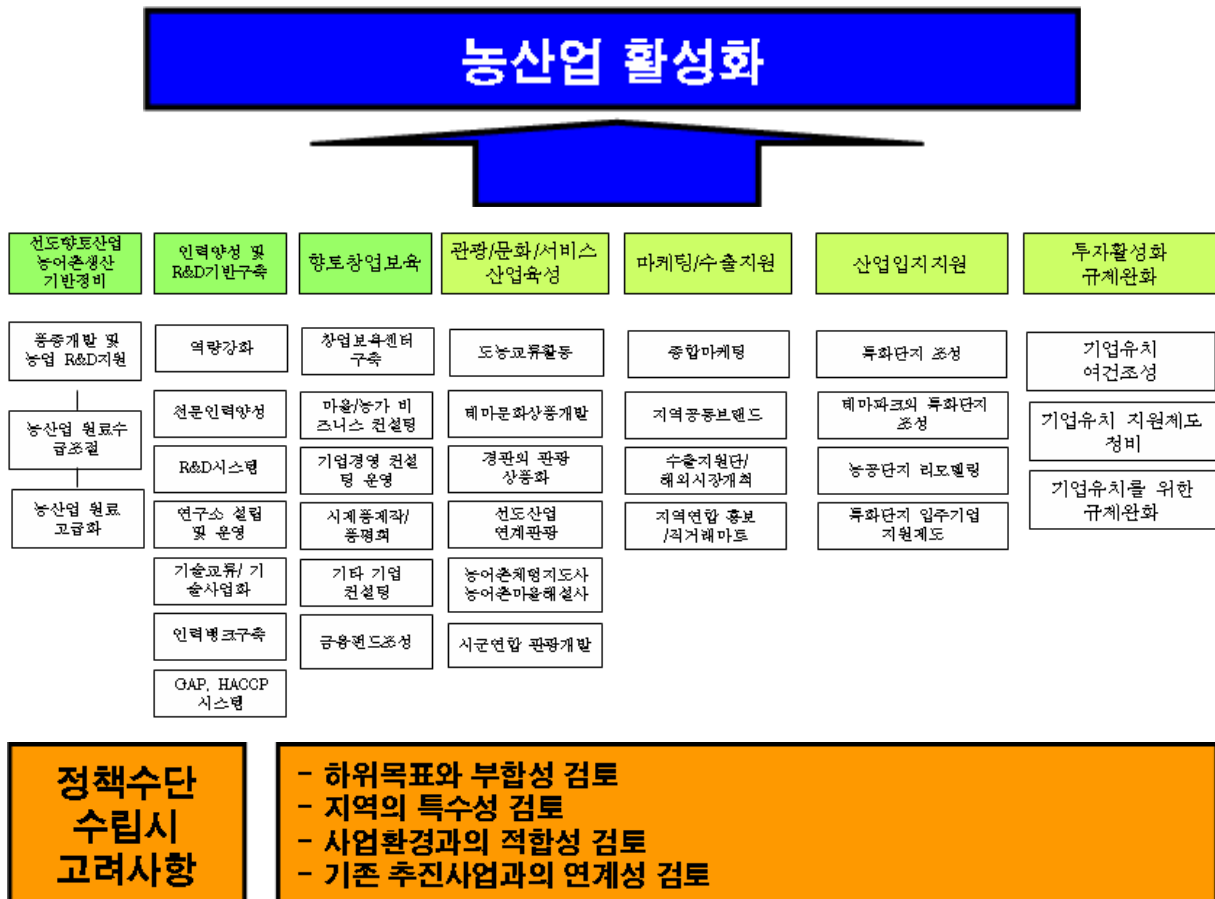
나. 하위목표 도출

- 하위목표 도출은 핵심목표와의 부합성을 검토하고 하위목표의 적정범위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함. 선도향토산업 농어촌생산기반정비, 인력양성 및 R&D기반구축, 향토창업보육, 관광·문화·서비스 산업육성, 마케팅·수출 지원, 산업입지지원, 투자활성화 및 규제완화로 하위목표 도출.



다. 정책수단-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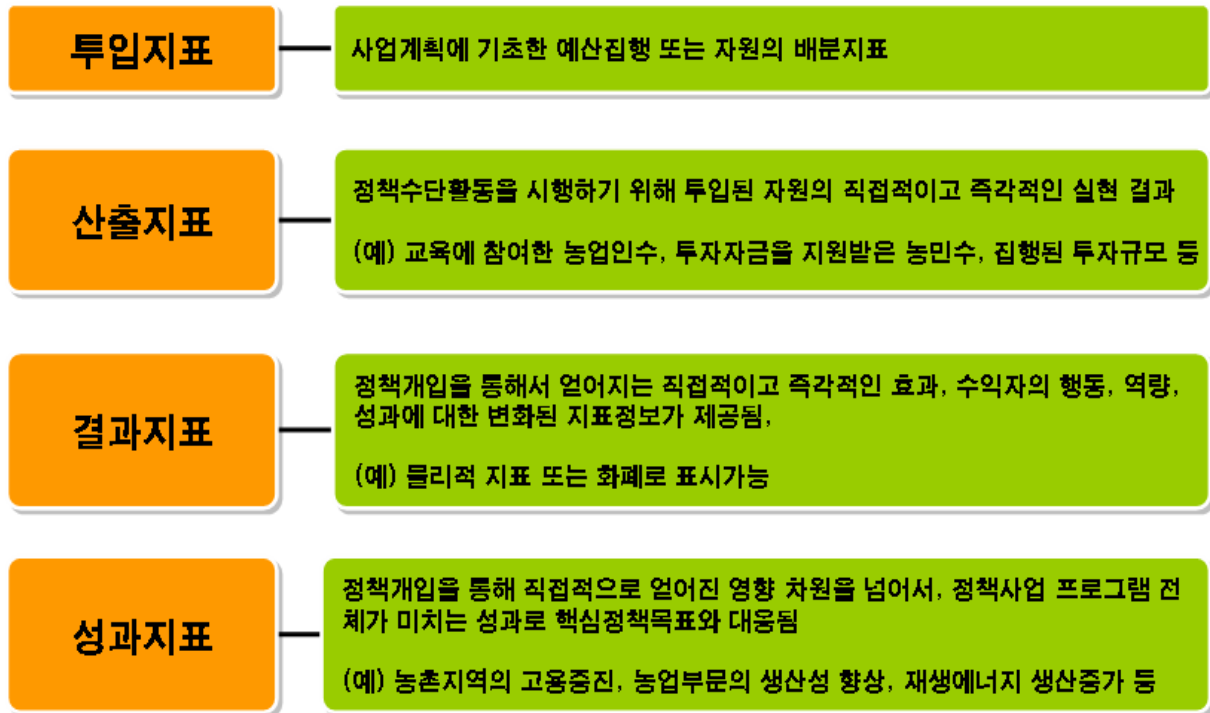
- 정책수단 및 활동은 하위목표와 부합성을 검토하여 지역의 특성성, 사업환경과의 적합성 검토, 기존 추진사업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정책수단을 결정하여야 함.
- 농산업사업의 정책수단은 품종개발 및 농업 R&D지원, 역량강화, 창업보육센터구축, 도농교류활동, 종합마케팅, 특화단지조성, 기업유치여건조성 등으로 구성됨.



4.2 성과지표 개발

- 농산업사업의 성과지표개발은 투입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 성과지표를 통

해 사업의 성과관리 지표를 개발



4.3 모니터링과 지속평가

□ 모니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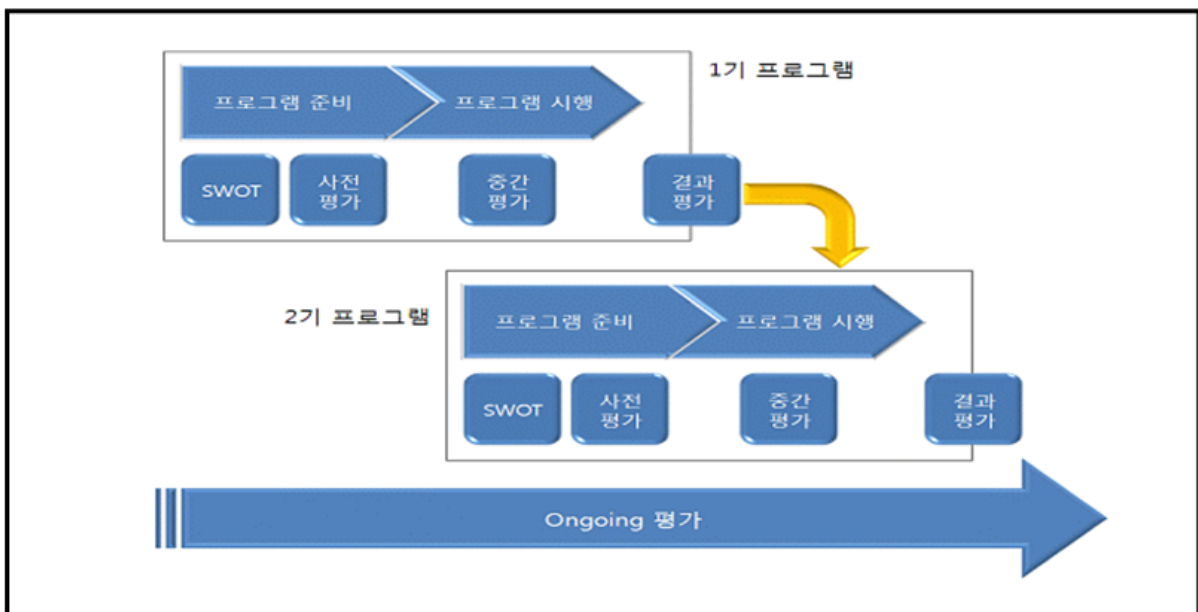
- 자금투입(input), 산출(output), 결과(Result)지표(indicators)들을 토대로 정책프로그램의 진전 상황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여 연차보고서 또는 전략보고서의 형태로 모니터링 위원회에 제출 (전략모니터링은 2010년에 실시하며 매 2년마다 제출)

□ 지속(Ongoing)평가

- 평가시기는 정책사업프로그램의 시작되는 단계서의 사전평가(Ex-ante), 중간평가(Mi-term), 사후평가(ex-post)로 구성하여 지속성을 가짐 (EU 농촌개발프로그램은 7년 단위로 시행되므로 중간평가의 필요성)

- 1기 프로그램의 중간평가 시기에 다음 기간인 2기의 정책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사전평가를 실시하며, 따라서 1기의 모니터링 및 중간평가 결과는 2기 정책 프로그램의 사전평가에 피드백 요소를 가지게 됨
- 사전평가는 정책프로그램의 목표, 핵심전략, 기초지표 등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통해 향후 중간 평가와 사후평가의 기초를 마련하는 작업

모니터링은 자금투입, 산출, 결과, 지표들을 토대로 정책프로그램의 진전 상황에서 정보를 취합하여 모니터링 실시



4.4 평가작업 절차

가. 평가시스템 구축

□ 행정작업

- 평가기관은 정책의 집행, 관리, 자금 등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독립적인 기관이어야 하며, 평가능력을 충분히 갖추어야 함
 - 위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공공기관 (public institutions)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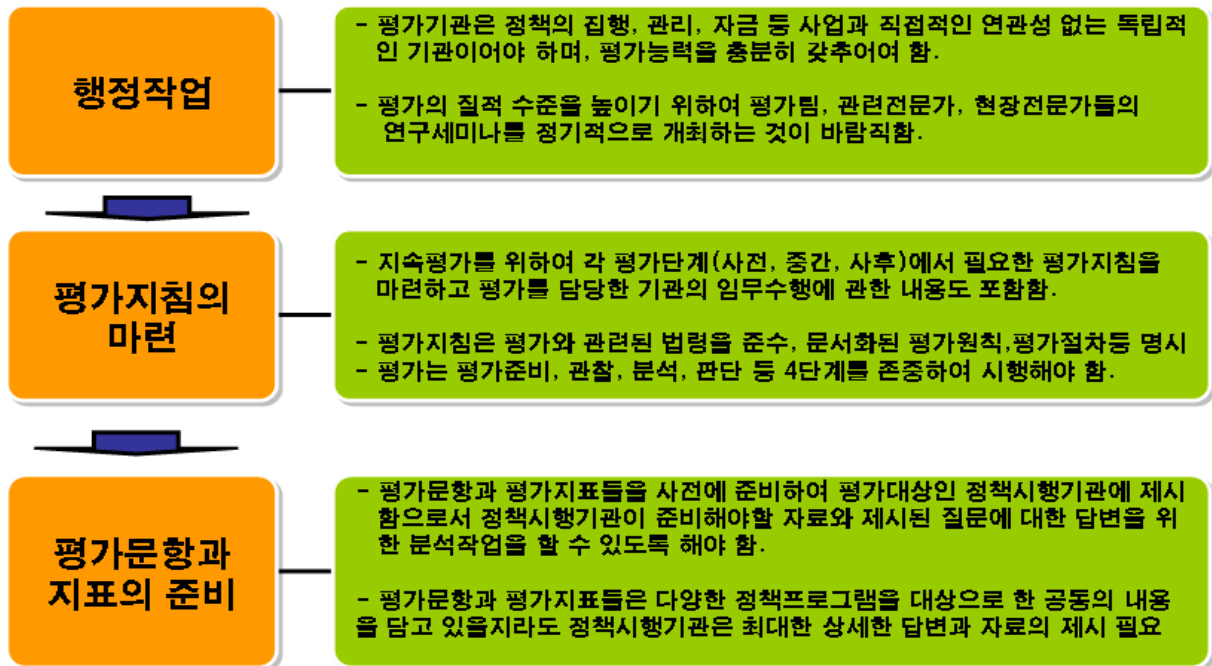
- 평가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팀, 관련전문가, 현장전문가 등의 연구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평가지침의 마련

- 지속평가(Ongoing)를 위하여 각 평가단계(사전, 중간, 사후)에서 필요한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평가를 담당한 기관의 임무수행에 관한 내용도 포함함
- 평가지침은 평가와 관련된 법령을 준수, 문서화된 평가원칙, 평가절차 등을 명시
- 평가지침의 핵심부분은 평가주제들과 수립된 평가지표들을 반영하는 공동 및 프로그램별 특성에 따른 평가질문 리스트를 구성하는 것임
- 평가는 다음 4 단계를 존중하여 시행해야 함
 - 평가 준비, 관찰, 분석, 판단
 - 각 단계의 결과물들은 반드시 평가팀의 토론을 거쳐 리포트 형태로 작성하고, 최종 평가보고서에 반영될 내용들을 정리해야 함

□ 평가문항과 지표의 준비

- 평가문항과 평가지표들을 사전에 준비하여 평가대상인 정책시행기관에 제시함으로써 정책시행기관이 준비해야할 자료와 제시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한 분석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평가문항과 평가지표들은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공동의 내용을 담고 있을 지라도, 정책시행기관은 최대한 상세한 답변과 자료의 제시가 필요함



나. 평가업무

□ 준비작업 (Structuring)

- 준비단계에서는 평가업무의 명확한 이해와 정보자료 수집을 위한 준비 및 평가질문에 대한 대답을 분석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는 작업
 - 평가 대상이 되는 다양한 정책수단들의 정책개입의 논리 파악 및 이해
 - 평가를 위한 질문(evaluation questions)의 핵심내용의 정의, 각 평가질문의 대 답에 대한 판단의 기준 마련 등
 - 평가를 위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 방법론의 수립
 - 지표의 설정 : 정책수단 또는 프로그램의 효과, 효율성,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정보와 데이터와 관련된 지표들의 설정

□ 관찰 (Observing)

- 관찰단계에서는 사용할 수 있고 적합한 정보를 구별해내는 작업을 수행하 고, 특히 정량적 및 정성적 데이터의 사용해야 함

- 관찰단계에서 평가자가 수행해야하는 임무 :
 - 정량적 및 정성적 분석에 필요한 수단개발 : 인터뷰가이드, 질문, 데이터베이스, 지도, 연구가이드라인, 기타 데이터 수집의 수단 등
 - 평가질문에 대한 대답에 필요한 데이터 및 정성적 정보의 수집 : 데이터베이스, 연구자료, 인터뷰 대상자, 적합한 사례연구 등
 - 프로그램 시행과정, 프로그램의 구성, 우선정책, 예산 등에 대한 묘사

□ 분석 (Analys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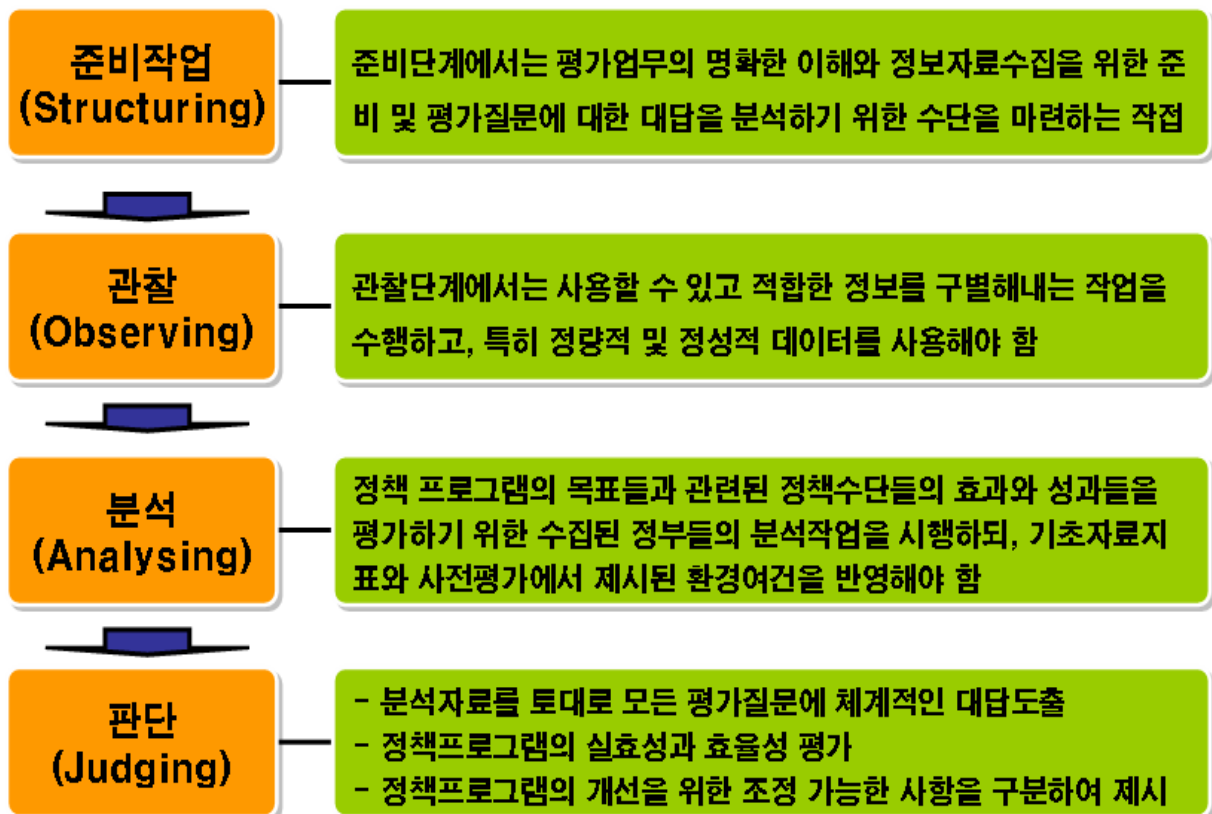
- 정책 프로그램의 목표들과 관련한 정책수단들의 효과와 성과들을 평가하기 위한 수집된 정부들의 분석작업을 시행하되, 기초지표(baselines indicators) 과, 사전평가에서 제시된 환경여건들을 반영해야함
- 특히 성과(Impact)분석은 정책프로그램의 목표달성을 위해 사용되어진 개별 정책수단의 직접적인 기여도를 구별해낼 수 있어야함
 - 실증분석의 복잡성을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정책수단들과 수익자들을 적합한 방법으로 유형화 하여 분석
 - 사용가능한 정보와 데이터들을 종합하고, 필요한 경우 모델링이나 통계적 조작(extrapolation)을 통해 데이터의 오차(gap)를 조정

□ 판단 (Judging)

- 평가단계에서 평가자는 준비단계에서 전의된 판단의 기준에 따른 분석결과를 토대로 모든 평가질문에 대답하고 결론을 도출해야함
- 결론과 정책권고는 개별 정책수단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정책프로그램의 영향과 성과를 담아야 하며, 반드시 정량적 및 정성적 자료에 근거해야 하며, 이러한 판단의 제약적 요소들도 비평적으로 반영되어야 함
- 각 평가질문에 대한 대답은 공동지표(common indicators)와 추가보조지표를 모두 반영해야하며, 필요한 경우 정책수단의 상과와 관련한 다른 적합한 정보들도 고려해야, 모든 경우에 있어서 평가질문에 대한 대답은 제시된 근거들에 대한 비평적 토론을 담아야함

○ 또한 평가는 정책수단이 시행된 환경여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하되, 만일 어떤 정책수단이 기대했던 결과나 성과를 얻어내지 못했다면, 이러한 예상치 못한 영향에 대한 이유를 분석해서 제시해야함

- 분석자료를 토대로 모든 평가질문에 체계적인 대답 도출
- 정책프로그램의 실효성 및 효율성 평가
- 정책프로그램이 유럽연합 및 회원국가 전략차원에서 정책목표의 달성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판단
- 정책 프로그램의 성공과 실패에 기여한 요소들의 구분
- 조사된 자료들을 토대로 결론 및 권고사항 도출
- 정책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한 조정 가능한 사항을 구분하여 제시



다. 평가보고서 작성

- 평가보고서는 정책수단과 정책프로그램이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포함할 것이며, 특히 중간평가 보고서는 기존에 시행중인 정책프로그램의 조장과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 토대가 될 수 있음

- 정책수단과 프로그램의 완전한 평가는 2010년의 중간평가와 2015년의 최종평가에서 이뤄지며, 두 단계의 평가 모두 정책수단과 정책프로그램의 효과, 효율성, 적합성의 평가로부터 얻어진 모든 공동평가질문과 특수한 여건을 반영하는 보충적 평가질문에 대한 대답을 담게 될 것임

- 또한 보고서는 정책수단과 정책프로그램이 회원국과 유럽연합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포함할 것이며, 특히 중간평가 보고서는 기존에 시행중인 정책프로그램의 조장과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 토대가 될 수 있음

1. 요약

- 평가의 주요사항
- 결론과 권고사항

2. 개요

- 보고서의 목적
- 보고서의 구성

3. 평가배경

- 정책사업의 배경 : 국가정책, 사회경제적 필요, 수익자 및 주요 대상계층 등
- 평가작업에 대한 간략한 묘사 : 평가목적, 평가범주 등
- 정책사업과 관련한 예비평가에 대한 간략한 언급

4. 접근방법론

- 평가의 구성과 방법에 대한 설명
- 평가를 위한 질문, 판단기준, 목표수준 등에 대한 핵심사항 들의 묘사
- 데이터의 수집 및 방법, 지표의 설정 및 특성 등
-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론
- 방법론적인 한계

5. 정책프로그램, 수단, 예산

- 프로그램 시행 : 사업주체, 제도적 배경
- 프로그램의 구성
- 정책개입논리
- 예산운영계획

6. 평가질문에 대한 대답

- 판단을 위한 평가질문에 대한 판단, 관련 지표들을 활용한 토론 및 분석
- 정량적, 정성적 정보, 통계, 조사자료 등에 대한 분석

7. 종합결론 및 권고

- 정책수단과 정책목표 간의 일관성
- 정책목표와 국가목표 간의 일관성과 보완성
- 평가를 통해서 얻어진 판단과 분석을 토대로 발전을 위한 권고

5. 농어촌산업정책 성과관리모델

5.1 핵심목표 및 하위목표

A. 선도향토산업 관련 농어촌 생산기반 정비

핵심목표	하위목표	정책수단	정책활동
농어촌 산업활성화	A. 선도향토산업 농어촌 생산기반 정비	A-1. 품종개량 등 농업 R&D 지원	A-1-1. 품종개량
			A-1-2. 신품종개발
			A-1-3. 종자관리지원
			A-1-4. 기타 시군 특성화 사업
		A-2. 농산업 원료수급조절	A-2-1. 참여농가 영농지원계획
			A-2-2. 참여농가 시설지원계획
		A-3. 농산업 원료고급화	A-3-1. 작목반 교육 등 운영계획
			A-3-2. 작목반 품질 평가계획
			A-3-3. 기타 시군 특성화 사업

B. 인력양성 및 R&D 기반구축

핵심목표	하위목표	정책수단	정책활동
농어촌 산업활성화	B. 인력양성 및 R&D기반구축	B-1. 역량강화	B-1-1. 문제해결형 스터디그룹
			B-1-2. 선도향토산업 CEO 과정
			B-1-3.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B-1-4.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
			B-1-5. 선도향토산업 포럼
			B-1-6. 선도향토산업 연구회 운영계획
			B-1-7. 기타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B-2. 전문인력양성	B-2-1. 지역대학내 관련 학과 개설 공동운영
			B-2-2. 관산학 인턴십 모델 개발
			B-2-3. 최고지도자 과정 운영계획
			B-2-4. 기타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B-3. R&D 시스템 구축	B-3-1. R&D 센터 설립계획
			B-3-2. R&D 네트워크 구축계획
			B-3-3 R&D FD 제도 운영계획
			B-3-4 R&D 사업화 프로그램
			B-3-5 기타 지역특화 R&D 프로그램
		B-4. 연구소 설립 및 운영	B-4-1 연구소 설립 및 운영계획
			B-4-2 기업연합연구소 설립 및 운영계획
			B-4-3 장비공동활용센터 설립 및 운영계획
			B-4-4 관련 기업인 기술포럼 운영계획
B-4-5 기타 지역특화 연구소 설립계획			

핵심목표	하위목표	정책수단	정책활동
농어촌 산업활성화	B. 인력양성 및 R&D기반구축	B-5 기술교류/기술사업화	B-5-1 대덕특구활용계획
			B-5-2 국책연구원 활용계획
			B-5-3 권역내 TP 활용계획
			B-5-4 특허 등 지적재산권 사업화 계획
			B-5-5 기타특화기술이전/ 기술사업화 계획
		B-6. 인력뱅크구축	B-6-1 선도산업 인력 DB 구축계획
			B-6-2 인력 DB 활용계획
			B-6-3 산업인력 네트워크 구축 계획
			B-6-4 인력 네트워크 활용계획
			B-6-5 지역기업 고용장려금 도입계획
			B-6-6 기타 지역특화 인력뱅크 운영계획
		B-7. GAP, HACCP 시스템 구축	B-7-1 우수농산물관리제(GAP)도입/운영계획
			B-7-2 HACCP 지원계획
			B-7-3 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관리계획
			B-7-4 기타 지역특화 인증제 도입계획

C. 향토창업보육

핵심목표	하위목표	정책수단	정책활동
농어촌 산업활성화	C. 향토창업보육	C-1. 창업보육센터 구축	C-1-1 농업기술센터내 창업보육기능 확대
			C-1-2 역내 공공기관 활용 창업보육기능 강화
			C-1-3 권역내 창업보육센터 활용계획
			C-1-4 창업보육센터 설립 및 운영계획
			C-1-5 기타 지역특화 창업보육계획
		C-2. 마을, 농가 비즈니스 컨설팅 체계구축	C-2-1 체험마을 비즈니스형 컨설팅계획
			C-2-2 농가레스토랑 경영 컨설팅 계획
			C-2-3 마을축제 경영컨설팅 계획
			C-2-3 농장축제 경영컨설팅 계획
			C-2-4 기타 지역특화 경영컨설팅 계획
		C-3. 기업경영 컨설팅 체계구축	C-3-1 타부처 공공기업컨설팅 활용계획
			C-3-2 권역내 공공기업 컨설팅 활용계획
			C-3-3 전문컨설팅기업 활용계획
			C-3-4 기타 지역특화 기업컨설팅 운영계획
		C-4. 시제품 제작 및 홍보체계 구축	C-4-1 창업기업 시제품 제작지원계획
			C-4-2 창업기업 제품설명회 홍보지원계획
			C-4-3 기업 신제품 시제품 제작지원
C-4-4 기업 신제품 품평회, 홍보지원계획			
C-4-5 기타 시제품, 신제품 지원계획			

핵심목표	하위목표	정책수단	정책활동
농어촌 산업활성화	C. 향토창업보육	C-5. 기타 기업컨설팅 체계구축	C-5-1 마케팅 컨설팅계획
			C-5-2 기술컨설팅 계획
			C-5-3 디자인 컨설팅 계획
			C-5-4 인력운영컨설팅 계획
			C-5-5 장비운영 컨설팅 계획
			C-5-6 제품홍보 컨설팅 계획
			C-5-7 기타 기업컨설팅 계획
		C-6. 금융펀드 조성 및 지원확대	C-6-1 기업투자펀드 종합안내책자 발간계획
			C-6-2 기업투자펀드 활용지원방안
			C-6-3 선도산업 기업투자펀드 조성계획
			C-6-4 기타 투자펀드 활성화 방안

D. 관광·문화·서비스 산업육성

핵심목표	하위목표	정책수단	정책활동
농어촌 산업활성화	D. 관광, 문화, 서비스 산업육성	D-1. 도농교류 체계구축	D-1-1 선도산업 관련 특성화마을 지원계획
			D-1-2 선도산업관련 농촌체험마을 조성계획
			D-1-3 선도산업 관련 지역축제 운영계획
			D-1-4 선도산업 관련 마을축제 운영계획
			D-1-5 선도산업 관련 농장형축제 운영계획
			D-1-6 농촌체류형 프로그램 운영계획
			D-1-7 직거래장터 운영계획
			D-1-8 기타 도농교류 프로그램
		D-2. 테마문화상품개발	D-2-1 선도산업 관련 문화상품개발 계획
			D-2-2 지역특화 문화상품개발계획
			D-2-3 지역특화 스토리텔링개발 계획
			D-2-4 기타 테마문화상품 개발계획
		D-3. 경관의 관광상품화	D-3-1 농업경관 활용 관광 활성화 계획
			D-3-2 농업경관 활용 축제 계획
			D-3-3 경관작물 활용 2차 산업화 계획
			D-3-4 기타 경관 활용 사업화 계획

핵심목표	하위목표	정책수단	정책활동
농어촌 산업활성화	D. 관광, 문화, 서비스 산업육성	D-4. 선도산업과 관광 연계강화	D-4-1 선도산업 특상품화 관광연계
			D-4-2 지역산업체 시찰 및 관광연계 계획
			D-4-3 선도산업 경관 연계 관광 운영계획
			D-4-4 특산물 전자상거래망 구축계획
			D-4-5 기타 산업연계 관광개발 계획
		D-5. 농어촌체험지도사, 농어촌 마을해설가 등 양성	D-5-1 농어촌체험마을지도사 양성계획
			D-5-2 농어촌 마을 해설가 양성계획
			D-5-3 지역특화 관광해설사 양성계획
			D-5-4 기타 지역특화 관광인력 양성계획
		D-6. 시군간 관광개발 연계강화	D-6-1 인접시군 연합 축제공동개최 계획
			D-6-2 인접시군 연합 관광벨트 개발계획
			D-6-3 인접시군 문화컨텐츠 공공개발계획
			D-6-4 기타 인접시군 연계 프로그램

E. 마케팅 및 수출지원

핵심목표	하위목표	정책수단	정책활동
농어촌 산업활성화	E. 마케팅 및 수출지원	E-1. 종합마케팅 체계구축	E-1-1 1시군1유통회사 설립 및 운영계획
			E-1-2 선도산업 농산물 명품화 마케팅 계획
			E-1-3 선도산업 제품마케팅 지원계획
			E-1-4 기타 마케팅 지원계획
		E-2. 지역공동브랜드 운영	E-2-1 선도산업 농산물 지역브랜드 운영
			E-2-2 지역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 운영
			E-2-3 지역공동브랜드 지원계획
			E-2-4 광역차원품목별 공동브랜드 활용계획
			E-2-5 기타 지역공동브랜드 활용계획
		E-3. 해외시장개척 지원	E-3-1 ONE-STOP 수출지원단 운영
			E-3-2 수출자문단 수출 FD 운영
			E-3-3 해외박람회 참여 지원계획
			E-3-4 세계 한상 네트워크 활용계획
			E-3-5 국내개최 국제박람회 참여지원
			E-3-6 해외바이어초청 운영계획
			E-3-7 해외시장개척단 운영계획
			E-3-8 기타 수출 해외시장개척 프로그램
		E-4. 지역연합 홍보 및 직거래 운영	E-4-1 동일품목 지역연합 홍보계획
			E-4-2 지역연합 공동다큐 제작 계획
			E-4-3 지역연합 공동TV프로그램 제작계획
			E-4-4 지역연합 직거래마트 운영계획
			E-4-5 지역제품 홍보전 운영계획
			E-4-6 지역연합 국제홍보활동 운영계획
			E-4-7 기타 지역연합 홍보계획

F. 산업입지지원

핵심목표	하위목표	정책수단	정책활동
농어촌 산업활성화	F. 산업입지지원	F-1. 특화단지 조성	F-1-1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계획
			F-1-2 특화단지 전문성 강화계획
			F-1-3 특화단지 입지조성 규제완화 계획
			F-1-4 특화단지 입주기업 지원계획
			F-1-5 기타 특화단지 조성 관련 계획
		F-2. 테마파크의 특화지원	F-2-1 기존 테마파크의 복합단지화
			F-2-2 1,2,3차 융복합형 테마파크 조성
			F-2-3 기타 테마파크의 특화단지화 계획
		F-3. 농공단지 리모델링 지원	F-2-1 농공단지 리모델링 계획
			F-2-2 기존 농공단지의 특화단지화 계획
			F-2-3 기존 농공단지의 운영계획
			F-2-4 기타 기존 농공단지 리모델링 계획
		F-4. 특화단지 입주기업 지원	F-3-1 금리지원 제도
			F-3-2 세제감면 제도
			F-3-3 인력지원 제도
			F-3-4 수의계획 구매지원제도
F-3-5 기타 입주업체 지원제도			

G. 투자활성화 및 규제완화

핵심목표	하위목표	정책수단	정책활동
농어촌 산업활성화	G. 투자활성화 및 규제완화	G-1. 기업유치 여건조성	G-1-1 선도산업 관련 대도시 기업유치계획
			G-1-2 기업유치단 운영계획
			G-1-3 기타 지역특화 기업유치계획
		G-2. 기업유치 지원제도 정비	G-2-1 기업유치 인센티브제 도입계획
			G-2-2 기업유치 공용지원제도 정비계획
			G-2-3 기업유치 R&D 지원제도 정비계획
			G-2-4 기타 기업유치 지원제도 정비계획
		G-3. 기업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G-3-1 기업, 공장이전, 설립조건 완화 계획
			G-3-2 기업, 공장이전, 설립 입지완화 계획
			G-3-3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 운영계획
			G-3-4 기타 기업유치를 위한 규제완화계획

5.2 산출지표(Output Indicators)

가. 역량강화 프로그램(B-1)

CODE	정책활동	산출지표
B-1-1	문제해결형 스터디그룹	<input type="checkbox"/> 스터디그룹 수 <input type="checkbox"/> 스터디그룹 진행 수
B-1-2	선도향토산업 CEO 과정	<input type="checkbox"/> CEO양성 교육프로그램수 <input type="checkbox"/> CEO교육훈련 받은 일수
B-1-3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input type="checkbox"/>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수 <input type="checkbox"/> 코디네이터 교육프로그램수 <input type="checkbox"/> 코디네이터 교육인원수
B-1-4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	<input type="checkbox"/>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수 <input type="checkbox"/> 교육받은 인원수
B-1-5	선도향토산업 포럼	<input type="checkbox"/> 선도향토산업 포럼개최수 <input type="checkbox"/> 포럼참여 인원수
B-1-6	선도향토산업 연구회 운영계획	<input type="checkbox"/> 연구회 운영수 <input type="checkbox"/> 연구회 참여인원수
B-1-7	기타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수 <input type="checkbox"/> 특성화를 참여인원수

나. 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B-2)

CODE	정책활동	산출지표
B-2-1	지역대학내 관련 학과 개설공동운영	<input type="checkbox"/> 지역대학의 수 <input type="checkbox"/> 향토산업 관련학과수 <input type="checkbox"/> 교과목 개설수
B-2-2	관산학 인턴십모델개발	<input type="checkbox"/> 인턴십 참여 학생수 <input type="checkbox"/> 관산학 인턴십 모델 수
B-2-3	최고지도자과정 운영계획	<input type="checkbox"/> 최고경영자 과정 수 <input type="checkbox"/> 최고경영자 참여 수
B-2-4	기타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특성화 프로그램 수 <input type="checkbox"/> 특성화 교육 참여 수

5.3 결과지표(Results Indicators)

B과정/목표	지 표
역량강화프로그램	(1)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참여자 수 (2)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의 수 (3) 역량강화를 교과과정 개설 수 (4) 역량강화 교육을 받은 교육생 수 (5) 역량강화를 통한 교육성과
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	(1)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참여자 수 (2)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수 (3) 전문인력 양성 교과과정 개설 수 (4)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받은 교육생 수 (5) 전문인력을 통한 교육성과

5.4 성과/영향지표(Impact Indicators)

지표	측정내역
1. 의식교육	역량강화를 통한 참여자의 의식수준
2. 교육프로그램	역량강화를 통한 교육프로그램의 다양성
3. 분야별 전문성	역량강화를 분야별 전문성
4. 전문인력 네트워크	역량강화를 통한 전문인력의 네트워킹
5. 문제해결능력	역량강화를 통한 문제 해결능력의 기여도
6. 노동의 질적 향상	역량강화를 통한 분야별 노동생산성 향상
7. 교육의 성과	역량강화를 통한 교육의 성과도

5.5 목표와 관련된 기초지표(Base Lines Indicators)

핵심축			지표	측정내역
B-1 역량강화 사업	*	1	교육프로그램 이수자수	교육참여자의 성공적 이수현황
	*	2	교육프로그램의 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수
	*	3	교육과정 개발 수	교육과정의 개발 수
	*	4	교육참여자 수	교육프로그램의 참여인원
		5	분야별 전문성	분야별 전문인력 네트워킹
	*	6	참여자의 의식수준	교육참여자의 의식수준
	*	7	문제해결 능력	교육을 통한 문제해결능력
		8	포럼 개최수	포럼 개최 현황
	*	9	인력양성 질적 수준	인적자원의 질적 수준

5.6 여건과 관련된 기초지표(BaseLines Indicators)

핵심축			지표	측정내역
B-1 역량강화 사업		1	고용창출	교육을 통한 고용인원
		2	실업현황	실업율을 감소
		3	교육성취도	교육을 통한 교육성취도
		4	교육인프라	교육 인프라 현황
		5	교육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수
		6	교과과정	교과과정 개발 수
		7	전문성	분야별 전문성

5.7 정책수단별 코드화된 목록사례(Measures Fiches)

정책수단	농어촌산업정책의 인력양성교육을 통한 참여자의 의식수준 향상 및 문제해결능력 향상
정책수단코드	B-1 역량강화
정책의 논리적 근거	성공적인 농어촌산업 정책의 핵심요인 중의 하나는 인력양성을 통한 의식교육 및 전문성을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통한 전문분야별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사업의 주체로서 활동
정책내용	<p>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전문교육프로그램 운영 - 세미나 및 포럼 - 연구회 - CEO 교육 - 맞춤형 전문 교육프로그램 - 코디네이터 교육프로그램 - 퍼실리테이터 교육프로그램 -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목표그룹	사업참여자 전원
목표범위	정하지 않음
공동지표	<p>Baseline(기초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부문의 교육과 훈련 - 임업부문의 노동생산성 - 농업부문의 노동생산성 <p>Input (투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된 공공지출 총액(EAFRD) <p>Output (산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참가자 수 (연령, 성별, 직업별, 참여자 유형별) - 교육시행일 수 <p>Result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수료자 수 (수료자의 연령별, 성별, 직업별, 유형별) <p>Impact(성과) - 노동생산성</p>

VIII. 맺음말

- 본 연구는 신활력사업의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농촌산업정책사업의 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새로운 성과관리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정책사업의 주요성과평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주요 연구내용에는 신활력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 및 문제점, 우수 및 부진시군의 추진체계, 성과 및 문제점 비교분석, 신활력사업의 정책의 차별화 및 차등지원 방안모색, 주요 핵심연구내용은 신활력사업 및 농촌산업정책사업의 성과관리체계 모형 구축을 하는 것이다.
- 신활력사업의 성과관리체계 로드맵은 모듈별로 구분하여 첫째, 목표체계수립단계, 둘째, 성과지표개발단계 셋째, 성과관리운영계획 수립단계로 구분하여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우선, 목표체계수립단계에서는 사업환경을 분석하여 사업안 도출한 후, 정책사업의 비전 및 정책목표, 전략목표, 성과목표, 사업과제를 도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 그리고, 성과지표개발단계에서는 사업비전 및 목표를 확인한 후 정책목표 및 전략목표에 대한 성과지표 개발, 성과목표에 대한 결과지표 개발, 사업과제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단계를 거쳤다.
- 또한 성과지표개발에서는 PDCA 모형에 따라 계획(Plan), 실행(Do), 종료(Check), 조치(Action) 단계를 거쳐 사업계획 평가지표 개발, 사업실행평가표 개발, 사업종료 평가지표개발을 위한 지표정의서를 작성하여 각 단계별 성과지표 및 평가지표를 개발
- 성과관리운영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사업계획, 사업실행, 사업종료, 조치 등

PDCA사이클에 따른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사업제안서 심사, 모니터링 및 점검, 환류 시스템으로 성과관리체계를 완성하였다.

- 그러나 신활력사업의 다양한 사업의 유형으로 인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은 사업에 따른 다양한 변수들로 인해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곤란한 면이 있다.
- 본 연구에서는 농촌산업정책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체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보다 정밀하고 체계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특히, 농산업정책의 범위와 방향이 확립되지 않은 가운데, 관련연구의 진행 상황 속에서 파악하여 나름대로의 사업범위와 분류를 통해 각 부문별 성과관리 모형을 정립하고자 노력하였다.
-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농촌산업정책사업의 성과관리 모형은 앞서 밝힌 정책적 한계와 시간적 한계로 인해 세부사업의 정책수단별 세부항목 전반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를 제시하지 못하고 각 세부사업별 주요 핵심사업에 국한하여 코드화하여 목록화하여 제시하였다. 따라서 계속해서 농산업정책 전반에 대한 성과관리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접근과 보다 세부적인 프로세스 개발이 요망된다.
- 향후 성과관리의 BPR, ISP전략차원에서 종합적인 모델 개발 필요성이 있고, 또한 정책방향이 확정될 경우, 정책목표 선정에서부터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 제시한 프로세스를 리모델링하여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참고-1】 2008년도 성과관리계획 수립지침

I. 성과관리전략계획 작성방법

1.1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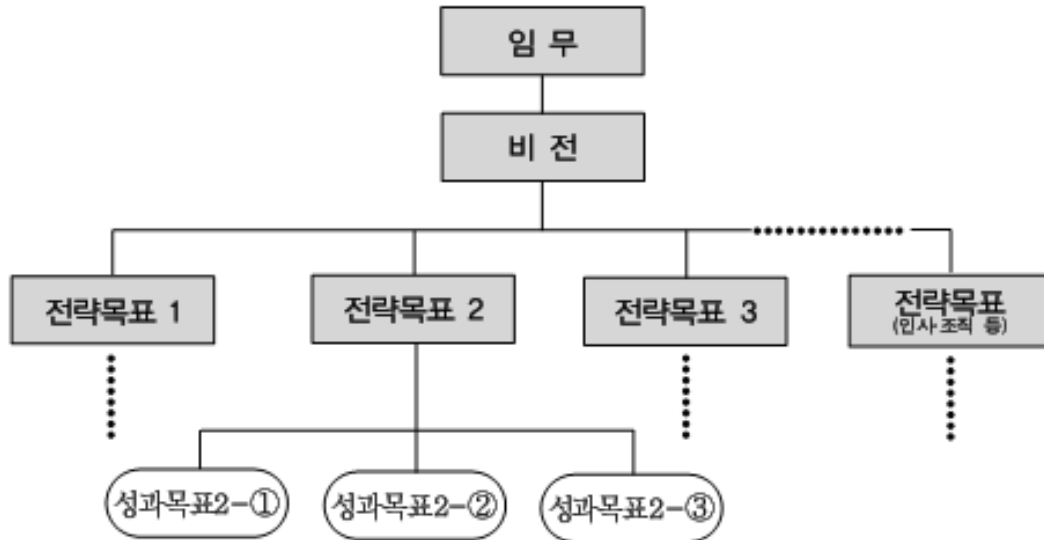
- 기관의 임무와 전략목표의 명확한 제시
- 계획수립 과정에서 타 기관 및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
- 환경적 요인에 대한 충분한 사전분석
-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혁신 실천계획 수립

- 성과관리전략계획 수립과정은 조직 구성원 간 목표를 공유하고 사업추진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며, 조직활동의 목표와 기본방향을 상시 점검하는 연속 과정임을 인식
- 조직원에게 일방적으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과 이해 관계자 간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하는 포괄적 과정으로 추진
- 성과관리전략계획의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전체적인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임무와 전략목표간의 연계를 고려
- 성과관리계획의 중장기적 전만의 구체화를 위해 기관의 임무와 장기목표 및 외부환경요인에 대해 충분히 분석하고 임무와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중장기적 혁신 실천계획 등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

1.2 목표 수립체계 및 방법

- 해당 기관이 임무달성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전략목표와 중장기 성과목표를 제시하며 각각의 요소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조화되

도록 목표수립



※ 인산 및 조직 분야 등 기관 전반의 역량강화와 관련된 성과목표와 과제는 전략목표를 구성하여 사업중심의 전략목표와 구분하도록 함.

※ 전략계획에서는 성과지표를 제시하지 않음

가. 임무와 비전

○ 임무는 해당기관의 존재이유(목적)와 주요기능을 의미

- 해당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규정, 관계법령에 구체적으로 제시된 역할 등에 근거하여 가급적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지향적인 내용으로 설정
- 설정된 임무는 기관의 모든 업무를 포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타 기관과의 불필요한 중복소지가 없도록 해야 함.
- 표현은 구체적이어야 하며, 목표 지향적이어야 함.

○ 비전은 장기적인 목표와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조직의 정책추진 방향 설정과 구성원에 대한 동기부여 기능을 수행

- 비전설정은 조직의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여 이해하기 쉽고 종합적이며 고무적인 표현으로 함.

나. 전략목표

- 전략목표는 국정목표, 기관의 임무와 비전 등을 감안하여 해당기관의 최대 중심을 두고 지향하거나 추진해야 할 내용으로 제시
 - 전략목표는 기관의 임무와 논리적 연계성을 가져야 하며, 전략계획에 이러한 연계성을 명확히 기술하여야 함.

- 전략목표는 전략계획의 계획기간(향후 5년간) 동안 성과의 개선수준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 됨.
 - 전략목표는 일반적이거나 추상적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표현방식은 정책이 국민의 이해관계에 부합할 수 있도록 표어 형태로 작성

- 전략목표 수립시 국가 장기계획 또는 이와 관련이 있는 다른 법령에 의한 중장기계획 내용을 포함(법 제5조 제1항)
 - ‘함께가는 희망한국 Vision 2030’계획의 주요내용을 활용
 -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해당기관이 소관분야별로 수립한 중장기계획의 주요내용을 활용

- 특히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수립시 ‘국가재정법’제7조에 의한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인 ‘국가재정운영계획’의 관련 내용을 반영(법 제5조 제3항)
 - 국가재정운영계획 내용 중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과 분야별 주요성과목표의 내용 등을 반영하여 수립.

- 전략목표는 기관내의 실, 국, 본부 등 조직체계에 따라 설정할 필요는 없으며 2개 이상의 부서에 의해 수행되더라도 공통된 목적을 가지는 유사정책은 동일한 목표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략목표의 수는 기관 전체의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업무전반을 포함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설정.

다. 성과목표

- 성과목표는 전략목표를 구체화하는 하위목표로서 전략목표 실현을 위해 계획기간내 달성하고자 하는 내용을 설정
 - 전략목표별로 설정하는 성과목표의 수는 제한이 없으며,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전반적인 업무를 고려하여 설정.
 - 다만, 특정 전략목표 하나에 지나치게 많은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목표체계가 균형을 상실하지 않도록 주의

- 성과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계획연도와 목표수준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 정책방향 파악이 용이하도록 할 것

- 성과목표로 전략목표와 동일하게 계획기간(향후 5년) 동안 성과의 개선수준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 함.
 - 일반적이거나 추상적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며 표현방식은 표어 형태로 작성

【참고-2】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7호]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가"라 함은 일정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부업무평가"라 함은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정책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보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

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라. 공공기관

3. "자체평가"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특정평가"라 함은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재평가"라 함은 이미 실시된 평가의 결과·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그 평가를 실시한 기관 외의 기관이 다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성과관리"라 함은 정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말

한다.

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나.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산하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단

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

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

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제3조 (통합적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구축)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평가대상기관의 정책등에 대하여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이 경우 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무의 특성·평가지기 등으로 인하여 평가의 통합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미리 협의하여 별도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성과관리의 원칙)

- ①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 ② 성과관리는 정부업무의 성과·정책품질 및 국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제5조 (성과관리전략계획)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을 포함한 당해 기관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이하 "성과관리전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이와 관련이 있는 다른 법령에 의한 중·장기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당해 기관의 임무·전략목표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최소한 3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국가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기초하여 성과관리전략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성과관리시행계획)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기초하여 당해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성과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성과관리시행계획에는 당해 기관의 임무·전략목표, 당해연도의 성과목표·성과지표 및 재정부문에 관한 과거 3년간의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정량적(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⑤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 실태 및 그 결과가 자체평가 및 특정평가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기초하여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 2장 정부업무평가제도

제7조 (정부업무평가의 원칙)

- ① 정부업무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② 정부업무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③ 정부업무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정책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하여야 한다.

제8조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의 수립)

- ① 국무총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업무의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한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이하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최소한 3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정부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3. 정부업무평가와 관련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각종 평가제도와 평가방법 등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사항
 5. 평가관련 인력의 전문성·독립성 확보에 관한 사항
 6.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통합평가체계(이하 "전자통합평가체계"라 한다)의 구축·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평가관련 예산·조직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업무의 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
- ③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전년도 평가결과를 고려하고 평가대상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3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정부업무평가지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의 정책등에 대한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의 기본방향
 2. 당해연도의 정책등에 대한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3. 당해연도의 정책등에 대한 특정평가에 관한 사항
 4. 당해연도의 정책등에 대한 공공기관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당해연도의 정책등에 관한 정부업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④ 국무총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및 정부업무평가지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임무)

- ① 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국가 차원의 중장기 평가기반의 구축·운영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및 정부업무평가지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정부업무평가의 기획·조정·총괄에 관한 사항
 4. 정부업무평가제도와 관련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 정부업무평가결과의 활용 및 평가제도간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
 6. 정부업무평가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7. 평가관련 기관 간 협조 및 평가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8. 특정평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자체평가제도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10. 자체평가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11. 자체평가결과의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12.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재평가에 관한 사항
13. 평가제도 운영실태의 점검에 관한 사항
14. 새로운 평가제도의 도입에 관한 사항
15.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
16. 그 밖에 위원장이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2호의 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1.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총리실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 가. 평가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나.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 다. 그 밖에 평가 또는 행정에 관하여 가목 또는 나목의 자와 동등한 정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무총리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위원은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 ⑧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⑨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자체평가 및 특정평가에 관한 안건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⑩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평가총괄관련기관)

- ①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의 부문별 총괄 관련 중앙행정기관(이하 "평가총괄관련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문별 자체평가결과의 확인·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총괄관련기관의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확인·점검에 민간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③ 평가총괄관련기관은 소관 부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1. 평가제도의 운영·개선, 평가지침 및 평가지표의 작성
 - 2. 자체평가결과의 확인·점검, 재평가의 실시 여부
 - 3. 그 밖에 자체평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평가대상기관과의 협조)

국무총리는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및 정부업무평가지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전자통합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

- ①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통합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 및 단체가 이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전자통합평가체계는 평가과정, 평가결과 및 환류과정의 통합적인 정보관리 및 평가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국무총리는 전자통합평가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④ 전자통합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3장 정부업무평가의 종류 및 절차

제14조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계획의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지행계획에 기초하여 당해 정책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1.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 2. 당해연도 주요 정책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 3. 자체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4.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5. 자체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6.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자체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제16조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의 절차)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의 주요 정책등에 대한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4월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에 자체평가계획의 보완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정책등의 추진실적을 기준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3월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재평가)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결과를 확인·점검 후 평가의 객관성·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지행계획에 기초하여 소관 정책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1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기반의 구축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19조 (특정평가에 관한 사항)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지행계획에 특정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1. 당해연도 특정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당해연도 특정평가의 대상에 관한 사항
- 3. 특정평가의 방법에 관한 사항
- 4. 특정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특정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제20조 (특정평가의 절차)

- ① 국무총리는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시책, 혁신관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부문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② 국무총리는 특정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평가방법·평가기준·평가지표 등을 마련하여 특정평가의 대상기관에 통지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③ 국무총리는 특정평가를 위하여 특정평가의 대상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평가업무 수행자로 하여금 특정평가 대상기관을 방문하여 평가에 관한 자료를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 ④ 국무총리는 특정평가결과에 대하여 위원회가 의결한 때에는 이를 특정평가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특정평가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국가위임사무등에 대한 평가)

- 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시책 등(이하 이 조에서 "국가위임사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이하 "합동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

다. <개정 2008.2.29>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를 합동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 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에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위임사무등에 대하여 업무의 특성·평가시기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평가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국가위임사무등의 평가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 ①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이하 "공공기관평가"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특수성·전문성을 고려하고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외부의 기관이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공공기관평가로 본다.
 -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 2.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 3. 「기금관리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 4.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 5.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 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 8.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은 미리 그 평가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⑥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평가를 실시한 기관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장 정부업무평가기반 구축의 지원

제23조 (정부업무평가기반 구축의 지원)

- ① 정부는 평가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예산 등을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의 제도적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평가방법과 평가지표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평가와 관련된 기관에 대한 지원방안 및 평가에 관한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 (평가예산)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등의 평가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포함하여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정책등의 평가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평가비용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5조 (평가제도 운영실태의 확인·점검)

국무총리는 평가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방안의 강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5장 평가결과의 활용

제26조 (평가결과의 공개)

국무총리·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전자통합평가체계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7조 (평가결과의 보고)

- ① 국무총리는 매년 각종 평가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거나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정책등에 대한 자체평가결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을 말한다)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 (평가결과의 예산·인사 등에의 연계·반영)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반영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시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평가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9조 (평가결과에 따른 자체 시정조치 및 감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정책등에 문제점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정책등의 집행중단·축소 등 자체 시정조치를 하거나 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사례로 인정되는 소속 부서·기관 또는 공무원에게 포상, 성과급 지급,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정부업무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 6장 보칙

제31조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대한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 중 규모 및 업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성과관리 및 평가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소속기관에 대하여는 스스로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 (그 밖의 행정기관의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평가대상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의 예에 따라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① 국무총리는 특정평가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국무총리·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업무의 일부를 평가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0조제3항·제10항, 제11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3항 또는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관련 위원회의 위원과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확인·점검에 참여하는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및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는 그 평가업무에 관하여는 「형법」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7928호, 2006.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은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8>생략

<49>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예산회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국가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 한다.

<50>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48> 까지 생략

<749>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국무총리실장

제10조제4항 중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한다.

제18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및 제28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75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가공무원법) <제8857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총리실장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참고-3】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7.3 대통령령 제20907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보좌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대통령 소속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2. 국무총리 소속기관 :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제3조 (공공기관에 속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법 제2조제7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라 함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동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동법 별표 제1호 및 제8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제외한다) 중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 (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

법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라 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3>

1.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 성과의 평가
2.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8조에 따른 교육인적자원개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3.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5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교육훈련에 대한 평가
4. 「전자정부법」 제46조에 따른 전자정부사업의 종합평가
5. 「정보화촉진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정보화촉진시책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6. 「지식정보자원 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지식정보자원관리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7. 「행정규제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규제개혁실태 등에 대한 평가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

9.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른 개방형직위의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평가
10.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의2에 따른 정부행정조직의 운영에 대한 분석·평가
- 10의2. 「국가재정법」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정사업 자율평가
11. 그 밖에 위원회가 평가의 통합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평가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평가

제5조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의 평가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법 제8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업무의 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부업무평가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평가의 연차적 통합 또는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
2. 정부업무평가결과와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 등과의 연계 방안에 관한 사항

제6조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 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평가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력 등 업무에 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8.7.3>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08.7.3>

제7조 삭제 <2008.7.3>

제8조 (평가총괄관련기관)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의 부문별 총괄 관련 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7.3>

1. 주요정책부문 : 국무총리실
2. 재정사업부문 : 기획재정부
3. 기관역량부문 : 행정안전부
4. 삭제 <2008.7.3>
5. 삭제 <2008.7.3>

제9조 (전자통합평가체계 관리·운영의 위탁에 따른 지원)

국무총리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전자통합평가체계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을 기초로 하여 자체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사업·업무 등(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을 스스로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정책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그 기관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필수적 정책등
 2. 그 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등
 3. 자체평가결과와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 등과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등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하나의 정책등이 여러 부문에 중첩되는 경우에는 평가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느 하나의 부문으로 분류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1조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자체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자체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 ③ 자체평가위원회의 위원은 평가 또는 소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한 것 외에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2조 (자체평가의 절차 등)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능한 한 계량화된 평가지표에 의한 측정을 통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자체평가의 효율적 운영과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공통되는 평가방법·평가기준 및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제시할 수 있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공통의 평가방법·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외에 그 기관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등에 대하여 다른 평가 주관기관에 의한 평가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자체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 (재평가의 실시)

국무총리는 법 제17조에 따른 재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를 요구하거나 평가업무 수행자로 하여금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에 관한 자료를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특정평가의 대상부문)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부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부문을 말한다.

1. 각 중앙행정기관이 공통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시책으로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문
2.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국가의 주요사업으로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부문
3. 기관 또는 정책등의 추진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부문
4. 그 밖에 특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부문

제15조 (특정평가의 절차 등)

- ① 국무총리는 특정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금 연구·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② 국무총리는 특정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전문가,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위원회가 특정평가에 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관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제16조 (국가의 주요시책 등)

법 제21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시책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

1. 국가적인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시책
2.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시책

제17조 (합동평가의 실시 등)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가위임사무등에 대하여 합동평가(이하 "합동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이하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합동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합동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평가실시 3월 이전에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 제1항에 따른 합동평가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합동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에 관한 사항
 2. 합동평가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3. 합동평가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합동평가대상의 선정 및 평가지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5. 합동평가결과의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6. 관계중앙행정기관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합동평가와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의견 등

제18조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①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의 민간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 ③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1. 행정안전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또는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
 2. 합동평가에 참여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또는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추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
- ④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위원(공무원인 위원을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9조 (중앙행정기관의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소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 (수당 등)

평가 관련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그 밖에 이해관계인·참고인 및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 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① 국무총리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의 혁신관리에 대한 특정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 ② 제1항에 따라 혁신관리에 대한 특정평가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혁신관리에 대한 평가대상·평가방법·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등(이하 이 조에서 "평가지표등"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혁신관리에 대한 평가지표등이 다른 특정평가 부문의 평가지표등과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평가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해당전문연구기관의 운영 및 연구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9437호, 2006.3.31>

- ①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폐지법령)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9>생략

<190>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중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191>내지 <241>생략

부칙(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4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통령 소속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2. 국무총리 소속기관 :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무조정실 차장"을 "국무총리실 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정보통신부 및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2항·제3항제1호 및 제2호·제5항, 제21조제1항·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④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 <제20907호,2008.7.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문헌

- 한부영, 성과관리시스템의 이해와 활용, 오피니언
- 박주홍, 성과평가시스템에 관한 연구, 인제농업, 2001.2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평가·성과측정을 위한 지표개발 및 향토 산업육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방안·평가지표 개발, 2007.12.
-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성과관리체계, 2007.5.11.
- 農林水産省, 農林水産省政策評價結果の概要, 平成 20年 7月.
-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 평가지표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1996.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평가모델 정립에 관한 연구, 1998
-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 R&D 지원에 대한 평가지표 개발, 2006.
-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백서, 2007.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신활력사업 정책교본, 2007.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신활력사업 추진지침, 2004.
- 농림부, 향토산업육성기본계획, 2005, 2006.
- 농림부, 지역특화사업지침, 2007.
- 손상락, 낙후지역발전을 위한 신활력지역 정책에 관한 고찰, 경남발전연구원, 2005.
- 행정자치부, 신활력사업 추진지침, 2004.
- 행정자치부, 낙후지역 선정지표 개발, 2004.
- 행정자치부, 2005년도 신활력사업 추진실적 평가결과, 2006.
- 경기개발연구원, 광역자치단체 주요시책사업의 성과평가기법 개발, 2002.
- 박재희, 기관평가재도의 효과적 운영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02.
- 한국정책연구원, 해양경찰청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개발(BSC), 2003.
- 한국정책연구원, 경찰청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개발(BSC), 2004.
- 한국정책연구원, 국가보훈처 재정사업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개발, 2004.
- 김경화, 재정지원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평가체계 및 운영방안 연구, 2005.
- 최용선, 결과중심의 예산사업 성과관리, 2006.
- 황용수외, 정부 R&D 성과평가시스템의 진단 및 발전방향, 2004.
- 박봉규, 미국의 연구개발 프로그램 평가방법 및 체계분석, 2006.